

2019

정책연구 2019-02

전라북도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진 이주연 · 조경옥 · 최지훈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19-02

전라북도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진

연구책임 이주연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조경욱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최지훈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자문위원 장화정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센터장
 전미란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

연구관리 코드 : 18JU2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연구요약

I. 연구개요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부모의 이혼·가출·실직·수감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와 부모의 학대(유기, 방임 등) 및 질병·사망 등으로 친가정에서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요보호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부모에 의한 친가정 내 아동양육 및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거에는 시설보호가 주요 보호법이었지만, UN아동권리위원회의 반복적 권고와 시설보호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된 이후 가정보호를 시설보호에 우선해서 실시하고자 노력함
- 정부는 요보호아동 보호조치로 시설보호 보다 가정보호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2017년 시설보호(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비율은 58.7%인 반면, 가정보호(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입양, 입양전위탁) 비율은 41.3%로 여전히 가정보호가 시설보호 보다 저조함. 이에 가정보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함
- 특히, 가정보호 중에서도 요보호아동을 적합한 위탁가정 내에서 일정기간 보호·양육하는 동시에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함
- 하지만, 가정위탁보호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2003년 이래 15년 동안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성과는 그리 많지 않았음. 오히려 가정위탁보호사업 실천 현장에서는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현실과 거리가 먼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해 많은 사람이 모르는 상황이며, 유기적이지 못한 네트워크와 엇갈리는 서비스체계 및 친부모 지원에 대한 서비스 배제로 친가정 복귀율이 매우 저조함. 그리고 친가정 복귀를 못해 가정위탁보호 기간이 장기화된 위탁아동 증가, 위탁부모의 제한적인 권한,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부족과 상당량의 사례수 등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와 주요 현안들이 있음

- 무엇보다 가정위탁보호의 유형(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중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에 의한 일반가정위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일반가정위탁 비율은 2003년 7.5%에서 2017년 7.8%로 13년 동안 비율 차이가 거의 없고, 2017년 7.8%는 2016년 대비 소폭(0.3%p) 증가한 것에 그치고 있음(2017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전북의 경우 가정위탁보호의 유형 중 일반가정위탁이 대리 및 친인척가정위탁보다 월등히 낮음. 즉 일반가정위탁 비율이 2017년 7.1%로 전국 평균보다 0.7%p 낮고, 2018년 6월 말 기준은 6.4%로 보다 낮아짐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의 요보호아동이 가정환경 내에서 일정기간 보호·양육되고 친부모와 재결합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가정위탁보호의 현황과 양육·보호 실태 및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여 가정위탁보호의 지원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또한, 가정위탁보호 유형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일반가정위탁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과 전북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 및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함

나. 연구방법

- 문헌 및 행정자료 검토
 - 관련법과 지원정책 등 동향분석, 국내·외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사례분석

- 통계자료 검토
 - 2017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2017 요보호아동 현황 자료 분석 등
- 위탁부모 대상 심층면접조사
 - (조사대상) 지역(시군), 위탁보호유형(대리양육, 친인척양육, 일반가정양육), 위탁 아동 연령(영유아기, 초등기, 중고등기, 보호 연장기) 등으로 세분화된 총 27명의 위탁부모
 - (조사내용)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일반적 특성, 가정위탁보호 관련사항, 가정위탁보호 지원 사업평가 및 정책욕구 등
- 위탁아동 대상 심층면접조사
 - (조사대상) 전북지역 가정위탁 연장보호 아동 및 종결 아동 총 4명
 - (조사내용) 일반적 특성, 가정위탁보호 관련 사항, 사업평가 및 정책욕구 등
- 현장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
 - (조사대상) 현장전문가(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7명, 시군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5명) 총 12명
 - (조사내용)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생활 및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기존사업의 문제점·개선사항, 필요 지원정책 욕구 등 파악
 - 시·군 및 읍·면·동 사업 담당 공무원 : 가정위탁보호 관련 이해정도, 배치기준 및 배치과정에서의 문제점, 가정위탁보호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등
- 담당부서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전북도의 담당부서 의견수렴 : 연구의 방향, 내용, 범위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의 방법, 내용 구성 및 정책제언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자문 등

다.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시행 된지 15년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가정위탁 보호 관련 법 개정 및 보완, 제도 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요구 분석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지역차원에서 유형별 위탁부모와 연장보호·종결 아동 및 현장전문가 대상 면접조사와 FGI를 통해 위탁부모, 위탁아동 및 현장전문가 입장에서 가정위탁보호의 실태와 문제점, 센터 운영 방향, 개선사항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북지역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정위탁보호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 한편,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인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전반(위탁가정 575세대, 위탁아동 743명, 2018.6.30. 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음. 가정위탁보호 지원 방안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전반에 대한 욕구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나 실태조사를 위해 찾아가는 것조차 가정위탁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된다고 조사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 등이 많아 전반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이와 같은 한계는 가정위탁보호 관련 국내외 문헌 고찰과 비교 분석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음. 또한, 조사에 동의한 한정적인 대상자를 최대한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아동 연령별, 지역별로 세분화 하였고, 센터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가정위탁보호의 주요현안과 쟁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센터장과 종사자,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등 현장전문가들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지원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음

II. 전북 가정위탁보호 현황 및 실태분석

1. 전북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현황

□ 전북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현황

- 전북 요보호아동 발생은 2008년 451명에서 2015년 241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278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가 2017년 233명으로 나타남. 전북 아동인구 1,000명 당 0.77%이며, 이는 전년(0.88%)보다 0.11%p 감소하였으나 전국평균 보다 0.28%p 높음. 시도별로는 서울 1,10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664명), 전남(312명), 전북(233명), 경북(219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요보호아동 발생사유는 전북의 경우 '학대'가 5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혼(20.2%), 부모사망(10.7%), 미혼모·부(6.0%) 아동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학대로 인한 사례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연도별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모의 '이혼'에 의한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3년부터는 '학대'로 인한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 현재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전북 가정위탁보호 현황

- 전북의 경우 전국 시도와 비교해서, 대리양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친인척 양육 및 일반양육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일반위탁'은 2008년 98가구에서 2017년 44가구로 절반 가까이 크게 감소하였고, 전체 위탁가정 중 일반위탁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2.5%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는 6.3%까지 감소했다가 2017년 7.3%를 나타냄
- 전북 위탁아동의 위탁사유를 살펴보면, 이혼 42.8%(318명), 부모의 별거·가출 22.7%(169명), 부/모 사망 19.9%(148명) 등이 주된 사유로 나타남

2. 전북 가정위탁보호의 실태분석

□ 유형별 위탁부모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

- (일반적 특성) 총 27명의 위탁부모 중 대리 9명, 친인척 6명, 일반 12명이 면접조사에 참여하였고 평균연령은 61.3세로 나타남. 평균위탁기간은 5.87년, 위탁아동의 위탁사유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사유가 가장 많았음. 유형별 위탁부모 대상 면접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가정위탁 보호 실태 및 어려운 점	정보 취득 과정	(대리/ 친인척)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정보부족, 처음부터 지원받지 못함 일반위탁가정 저조한 원인 :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식저조, 위탁아동의 부족, 잘못된 편견 (대리) 열악한 주거환경과 취약한 정보접근성
	양육 보호 과정	(대리) 위탁아동의 학습과 교육 및 진로 지원에 대한 관리·지도 부재 위탁부모의 권리행사에 대한 한계 (친인척) 어쩔 수 없이 위탁아동을 받아들여짐에 따라 가족갈등 발생 친가정으로의 복귀 어려움 : 친부모의 행방불명·연락두절로 위탁보호 장기화
	행정 처리 과정	(일반) 기초생활수급 비용에 대한 영수 증빙 처리의 불편함 (대리) 연장보호아동의 경우 아르바이트는 필수,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의 두려움
	필요 지원 정책 요구	(대리) 위탁아동의 학습지원과 진로와 고민 상담을 위한 멘토 지원 (친인척) 위탁아동의 심리치료 지속 지원 (일반) 일관된 양육을 위해 위탁부모와 친부모간의 부모역할 협의·조정 지원 (일반)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관심과 지원 필요 (일반) 일반위탁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상급학년 진학에 따른 경제적 지원 현실화 사춘기 진입 및 사춘기 위탁아동에 대한 대처방법(교육과 상담) 지원 위탁아동 관련 서류준비 시 행정기관의 적극적 도움 지원

□ 유형별 위탁보호 연장 및 종결아동 대상 면접조사 결과

- (일반적 특성) 총 4명 중 2명은 연장보호 위탁아동, 나머지 2명은 종결아

동임. 위탁유형별로 대리위탁아동 2명, 친인척위탁아동 2명이었음

- 면접조사의 주요 결과 내용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이 가정위탁보호 아동이란 것을 친구들과 학교에 알리지 않으려고 애 쓰고 있었음.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학원비 지원과 신발·의류지원 및 진로와 취업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 지원을 원했었고, 연장보호 아동과 종결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지속적인 연계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음

□ 현장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

- (일반적 특성)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근무경력은 약 2년이었고, 평균 연령은 30.7세로 나타남. 시군 및 읍면동 가정위탁보호사업 담당공무원들은 평균 8개월 정도 이 사업을 담당·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 총 근무경력은 평균 3.7년으로 짧게는 8개월 길게는 6년으로 나타남.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현장전문가 관점에서 본 위탁유형별 가정 환경 실태	(대리)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차이로 인한 대화단절, 학습·진로에 대한 지도감독 부재
	(친인척)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부담, 상급학년 진학에 따른 학습비·의류비 등 경제적 부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담당업무 과중 및 인력 부족
	짧은 업무경력으로 센터 종사자의 업무경험 및 전문역량 부족
	찾은 인사이동으로 담당공무원의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전문성 부족
	가정위탁지원센터와 담당공무원간의 상호연계성 부족
	요보호아동의 일반가정위탁보호 배치 시 신속성 부족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사항 및 지원방안	가정위탁보호사업 홍보 강화 및 인식개선
	가정위탁보호사업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및 간담회와 사례회의 강화
	일반가정위탁부모 인력 풀 구축 및 정보공유

Ⅲ. 전북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지원방안

1. 가정위탁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

-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크게 ① 가정위탁보호 지원의 현실화, ②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지원 특화, ③ 가정위탁보호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④ 가정위탁지원센터 역량 강화 및 역할제고 등 4개로 구분·제안함. 4개의 정책방향을 근거로 총 1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정책방향	세부사업	우선 순위	추진기관
가정위탁보호 지원 현실화	양육보조금 단계적 현실화 및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	8	전라북도
	학원비 지원카드 마련	9	전라북도, 시·군
	전북 도내 대학진학 시 학비 지원	10	전라북도, 시·군
가정위탁 보호 유형별 지원 특화	(대리) 초등학교 이상 위탁아동 대상 멘토 지원서비스	11	가정위탁지원센터
	(친인척) 초기 가족적응을 위한 가족상담 실시 의무화	12	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 위탁 종결된 부모 대상 심리정서 치료	13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 보호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최우선과제)	시군과 읍면동 공무원 가정위탁보호사업 이해증진 교육 및 간담회 확대	1	전라북도, 시군 가정위탁지원센터
	은행·학교·버스정류장 및 종교기관 집중 홍보	3	가정위탁지원센터
	일시가정위탁 사업 시범운영	4	전라북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부모 인력 풀 구축 및 공무원과 정보공유	5	전라북도,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6	전라북도, 시군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역량 강화 및 역할 제고	홍보·자립지원 담당 인력 증원	2	전라북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소진 예방	15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준비 아동 대상 자립지원 사업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가정위탁지원센터
	전북지역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14	가정위탁지원센터

■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3
가.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나. 연구내용	6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7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11
제2장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및 사례분석	15
제1절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15
가.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15
나. 가정위탁보호의 지원정책	18
제2절 국내외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사례분석	43
가. 국외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사례	43
나. 국내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사례	49
다. 시사점	51
제3장 전북 요보호아동 및 가정위탁보호 현황	55
제1절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55
가.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	55
나.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현황	62
제2절 가정위탁보호 현황	70

가. 가정위탁보호 아동관련 현황	70
나. 가정위탁 가구 관련 현황	75
다.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 현황	81
라. 가정위탁 위탁기간 및 종결사유	84
마. 신규 일반가정위탁 관련 현황	86
제3절 가정위탁보호 지원내용 및 지원센터 운영 현황	90
가. 가정위탁보호 지원내용	90
나.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업무량	98
제4절 소결	103
제4장 전북 가정위탁보호 실태 및 정책적 욕구	109
제1절 위탁유형별 부모 및 종결아동 대상 면접조사	109
가. 위탁유형별 부모대상 면접조사	109
나. 위탁유형별 위탁보호 연장 및 종료 아동 대상 면접조사	126
제2절 현장전문가 대상 초점집단접조사(FGI)	132
가. 조사개요	132
나. 결과분석	134
제3절 소결	143
제5장 전북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지원방안	151
제1절 정책적 합의	151
제2절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158
참고문헌	187

표목차 | Contents

〈표 1-1〉 전북 시군별 가정위탁 아동 및 세대 수 현황	8
〈표 2-1〉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19
〈표 2-2〉 가정위탁보호 경제적 지원정책 내용(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9
〈표 2-3〉 전국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2017. 12. 31기준)	37
〈표 3-1〉 전국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사유(2008~2017년)	59
〈표 3-2〉 전북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사유(2008~2017)	61
〈표 3-3〉 전국 연도별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현황(2008~2017)	63
〈표 3-4〉 전북 연도별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현황(2008~2017)	65
〈표 3-5〉 전국 시도별 아동양육시설 현황	67
〈표 3-6〉 전북의 아동양육시설 현황	67
〈표 3-7〉 전북의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현황	67
〈표 3-8〉 전국 시도별 공동생활가정 현황	68
〈표 3-9〉 전북의 공동생활가정의 내 아동현황	69
〈표 3-10〉 전북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69
〈표 3-11〉 전국 시도별 위탁유형별 아동 수 및 비율 현황(2017)	72
〈표 3-12〉 전국 위탁가정유형별 위탁아동의 연령(2017)	73
〈표 3-13〉 전국 가정위탁유형별 아동의 위탁사유(2017)	74
〈표 3-14〉 전국 위탁가정 유형별 위탁부모의 연령(2017)	75
〈표 3-15〉 전국 위탁가정 유형별 위탁부모의 학력(2017)	76
〈표 3-16〉 전국 위탁가정 유형별 위탁부모의 직업(2017)	77
〈표 3-17〉 전국 위탁가정 유형별 위탁부모의 소득수준(2017)	78
〈표 3-18〉 전국 위탁가정 유형별 위탁 부모의 참여 동기(2017)	78
〈표 3-19〉 전국 시도별 및 위탁유형별 위탁가정 가구 수(2017)	79
〈표 3-20〉 전국 시도별 일반가정위탁의 가구 및 아동 수(2017)	80
〈표 3-21〉 전북 연도별 및 유형별 위탁가정 가구 및 아동 수(2008~2017)	81

〈표 3-22〉 전북 위탁아동의 연령 및 성별 현황	83
〈표 3-23〉 전북 위탁아동의 위탁사유	83
〈표 3-24〉 전북 시군별 일반 위탁가정 가구(39가구) 및 아동 수 현황	83
〈표 3-25〉 전국 종결아동의 가정위탁유형별 위탁기간(2017)	84
〈표 3-26〉 전국 종결위탁가정의 종결사유(2017)	85
〈표 3-27〉 전국 시도별 신규 위탁가정 수(2017)	86
〈표 3-28〉 전국 시도별 및 연도별 신규 일반위탁가정 발생 현황(2010~2017)	87
〈표 3-29〉 전국 신규 위탁가정 부모의 소득수준(2017)	88
〈표 3-30〉 전국 신규 위탁가정의 종교(2017)	89
〈표 3-31〉 전국 신규 위탁가정의 참여 동기(2017)	89
〈표 3-32〉 전국 시도별 가정위탁지원센터 예산 현황(2018)	91
〈표 3-33〉 전북 가정위탁 아동 및 위탁부모 대상 예산 현황(2018, 2017)	92
〈표 3-34〉 전국 및 전북의 생계비/전세임대 지원서비스 현황(2017)	93
〈표 3-35〉 전북 위탁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현황(2017)	93
〈표 3-36〉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내용 현황	94
〈표 3-37〉 전국 및 전북의 지원서비스 현황(2017)	95
〈표 3-38〉 전북의 연도별 지원서비스 현황(2015~2017)	96
〈표 3-39〉 전국 및 전북의 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2017)	97
〈표 3-40〉 전국 시도별 센터 지원서비스·교육·홍보 업무량(2017)	100
〈표 3-41〉 전국 시도별 상담원 1인당 업무량(2017)	101
〈표 3-42〉 전국 및 전북 상담원 1인당 업무량(2015~2017)	102
〈표 4-1〉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위탁유형별 부모의 일반적 특성	113
〈표 4-2〉 위탁부모 대상 면접조사에 따른 주요 분석결과	115
〈표 4-3〉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연장보호 및 종결 아동의 일반적 특성	127
〈표 4-4〉 위탁아동(연장보호 및 종결 아동) 대상 면접조사에 따른 주요 분석결과	128
〈표 4-5〉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 참여한 현장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135
〈표 4-6〉 현장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주요결과	136
〈표 4-7〉 조사결과 주요 내용 요약·정리	147
〈표 5-1〉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가정위탁보호의 종사자(위탁부모) 자격기준, 인건비 등	

비교	152
〈표 5-2〉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	159
〈표 5-3〉 전북 가정위탁보호 지원금액과 위탁아동 연령대별 예상 지출 부분	161
〈표 5-4〉 향후 양육보조금 위탁아동 연령대별 차등지원(안)	161
〈표 5-5〉 지역센터별 공무원 교육 현황	171
〈표 5-6〉 전북 14개 시군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현황	177
〈표 5-7〉 지역센터별 홍보 현황	179
〈표 5-8〉 전국과 전북의 상담원 1인당 업무량 비교	179
〈표 5-9〉 자립지원 대상 아동 수	181
〈표 5-10〉 보호종결 아동 현황	181
〈표 5-11〉 2019년 1월 기준 시도별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배치 현황	181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10
〈그림 2-1〉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방법	16
〈그림 2-2〉 보호아동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	17
〈그림 2-3〉 보호아동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	17
〈그림 2-4〉 전문 및 일시 가정위탁 내용	20
〈그림 2-5〉 가정위탁보호의 실천원리	21
〈그림 2-6〉 가정위탁보호 절차	22
〈그림 2-7〉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발달과정	24
〈그림 2-8〉 시군구 및 읍면동 가정위탁보호 역할	32
〈그림 2-9〉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달체계	33
〈그림 2-10〉 가정위탁보호의 업무 흐름도	34
〈그림 2-11〉 미국 Oregon 주의 가정위탁보호 유형	43
〈그림 2-12〉 미국 Oregon 주의 위탁가정 선정과 교육	46
〈그림 2-13〉 영국의 가정위탁보호 유형	47
〈그림 3-1〉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아동인구 및 비율(2008~2018)	55
〈그림 3-2〉 시도별 아동인구 및 비율(2018)	56
〈그림 3-3〉 전북 시·군별 아동인구 및 비율(2018)	56
〈그림 3-4〉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요보호아동 수(2008~2017)	57
〈그림 3-5〉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전체아동인구 대비 요보호아동 비율(2008~2017)	58
〈그림 3-6〉 전국 시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2017)	58
〈그림 3-7〉 전국 시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사유(2017)	60
〈그림 3-8〉 전국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사유(2008~2017)	60
〈그림 3-9〉 전북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사유(2008~2017)	61
〈그림 3-10〉 전국 연도별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결과(2008~2017)	62
〈그림 3-11〉 전국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내용(2017)	63

〈그림 3-12〉 사·도별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결과(2017)	64
〈그림 3-13〉 전북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내용(2017)	65
〈그림 3-14〉 전북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결과 및 내용(2008~2017)	66
〈그림 3-15〉 전국 연도별 가정위탁별 아동 수 현황(2008~2017)	70
〈그림 3-16〉 전국 위탁유형별 아동 수(2008~2017)	71
〈그림 3-17〉 전국 사·도별 위탁아동의 위탁유형별 비율(2017)	72
〈그림 3-18〉 전국 위탁가정유형별 위탁아동의 연령 분포(2017)	73
〈그림 3-19〉 전국 가정위탁유형별 위탁아동 보호사유(2017)	74
〈그림 3-20〉 전국 위탁가정 유형별 위탁부모의 연령 분포(2017)	76
〈그림 3-21〉 전북 위탁가정 유형별 가구 및 아동 수 현황	82
〈그림 3-22〉 전국 종결아동의 가정위탁유형별 위탁기간(2017)	84
〈그림 3-23〉 전국 종결위탁가정의 종결사유(2017)	85
〈그림 3-24〉 전국 신규 위탁가정 부모의 소득분포(2017)	88
〈그림 3-25〉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기본방향	99
〈그림 3-26〉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보호세대 현황	99
〈그림 5-1〉 학원비 지원 연계 방안	163
〈그림 5-2〉 예비일반위탁부모 인력풀 구축 및 연계방안	175
〈그림 5-3〉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 확대 운영(안)	183

1

장

서론

Jeonbuk Institute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내용 및 절차

제 3 절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부모의 이혼·가출·실직·수감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와 부모의 학대(유기, 방임 등) 및 질병·사망 등으로 친가정에서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요보호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요보호아동은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다 감소 추세를 나타내지만 매년 일정 수의 아동은 지속 발생. 2010년 9,960명, 2013년 6,834명, 2017년 4,846명이 발생하였고, 전북의 경우 2010년 496명, 2013년 304명, 2017년 278명이 발생함
 - 아동인구 천 명당 요보호아동 발생비율은 2017년 기준 전국 평균(전체 아동 9,100,191명 중 요보호아동 4,846명) 0.53%였으나, 전북은 0.88% (전체 아동 인구 326,138명 중 요보호아동 287명)로 전년(0.74%)보다 0.14%p 증가하였고, 전국평균 보다 0.35%p 높음
- 부모에 의한 친가정 내 아동양육 및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거에는 시설보호가 주요 보호법 이었지만, UN아동권리위원회의 반복적 권고와 시설보호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된 이후 가정보호를 시설보호에 우선해서 실시하고자 노력함
 -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 아동최선의 이익원칙(요보호 아동 발생 시 아동을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며,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면 친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
- 정부는 요보호아동 보호조치로 시설보호 보다 가정보호를 위해 노력했음

에도 2017년 시설보호(양육시설등,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 가정) 비율은 58.7%인 반면, 가정보호(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입양, 입양 전위탁) 비율은 41.3%로 여전히 가정보호가 시설보호 보다 저조함. 이에 가정보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함

- 무엇보다 전북지역 요보호아동 보호조치는 시설보호 비율 63.5%, 가정보호 비율 36.5%로 가정보호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음(2017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 특히, 가정보호 중에서도 요보호아동을 적합한 위탁가정 내에서 일정기간 보호·양육하는 동시에 친부모와 재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함
- 하지만, 가정위탁보호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2003년 이래 15년 동안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성과는 그리 많지 않았음. 오히려 가정위탁보호사업 실천 현장에서는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현실과 거리가 먼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해 많은 사람이 모르는 상황이며, 유기적이지 못한 네트워크와 엇갈리는 서비스체계 및 친부모 지원에 대한 서비스 배제로 친가정 복귀율이 매우 저조함. 그리고 친가정 복귀를 못해 가정위탁보호 기간이 장기화된 위탁아동 수 증가, 위탁부모의 제한적인 권한,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부족과 상당량의 사례수 등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와 주요 현안들이 있음
- 가정위탁보호 시범사업 실시(1985년),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범 운영(2000년, 강원도) 및 전국 확대(2003년, 17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개소(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2005년)으로 가정위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이후 가정위탁보호 사업 전개됨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족해체 방지 및 요보호아동 위탁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함으로써 최대한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무엇보다 가정위탁보호의 유형(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중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에 의한 일반가정위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일반가정위탁 비율은 2003년 7.5%에서 2017년 7.8%로 13년 동안 비율 차이가 거의 없고, 2017년 7.8%는 2016년 대비 소폭(0.3%p) 증가한 것에 그치고 있음(2017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전북의 경우 가정위탁보호의 유형 중 일반가정위탁이 대리 및 친인척가정위탁보다 월등히 낮음. 즉 일반가정위탁 비율이 2017년 7.1%로 전국 평균보다 0.7%p 낮고, 2018년 6월 말 기준은 6.4%로 보다 낮아짐
- 한편, 혈연에 의한 친족위탁이 미국의 경우 약 30%, 영국의 경우 11% 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대리양육과 친인척 가정위탁비율은 90% 이상으로 가정위탁보호의 대부분을 친족위탁이 차지하고 있고, 일반가정위탁은 절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의 요보호아동이 가정환경 내에서 일정기간 보호·양육되고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가정위탁보호의 현황과 양육·보호 실태 및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여 가정위탁보호의 지원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또한, 가정위탁보호 유형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일반가정위탁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과 전북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 및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전북의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 부모와 아동 대상 전반적인 생활 및 양육 경험에 대한 실태분석과 더불어 필요 지원정책 욕구를 파악하며, 마지막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있는 현장전문가(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및 시군과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 대상 현장에서 경험하는 주요 현안과 문제점, 사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등 문제점을 진단하여 전북지역의 가정위탁보호가 보다 현실화·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의 가정위탁보호의 현황과 양육·보호 실태 및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여 가정위탁보호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더불어 가정위탁보호 유형 중 상대적으로 저조한 일반가정위탁의 활성화 방안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 및 역량 강화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과 절차, 그리고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제시함
- 제2장에서는 요보호아동 및 가정위탁보호 관련 개요(개념, 원인, 유형 등), 관련 법률과 중앙의 지원정책 및 정책적 동향과 더불어 국내외 가정위탁보호 관련 지원정책 사례를 분석함
- 제3장에서는 전북지역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가정위탁보호의 현황과 전북가정위탁보호 지원내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등을 살펴봄
- 제4장에서는 전북지역 가정위탁보호 실태 및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부모 및 연정보호·종결아동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전문가(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 및 시·군과 읍·면·동의 가정위탁보호 담당 공무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함
- 마지막 5장에서는 2장의 중앙의 지원정책 분석과 국내외의 사례분석, 3장의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과 가정위탁보호 현황분석, 4장의 전북 가정위탁보호의 실태 및 정책적 욕구분석 등을 토대로 전라북도 가정위탁보호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 일반가정위탁의 활성화 방안 및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과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함

제2 절 연구방법 및 절차

가. 연구방법

1)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 문헌 및 행정자료 검토

- 요보호아동 관련 개요 및 보호배치 등 동향분석
- 가정위탁보호 관련 개요 및 관련법과 지원정책 등 동향분석
- 국내·외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사례분석

○ 통계자료 검토

- 2017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및 2017 요보호아동 현황 자료 분석
- 전국 및 전북 요보호아동 및 가정위탁보호 관련 통계자료 분석(통계청)

2) 면접조사 계획

○ 유형별 위탁부모 대상 심층면접조사

- (목적) 가정위탁보호의 전반적인 생활 및 양육 실태와 지원정책의 욕구분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역(시군), 가정위탁보호 유형(대리양육, 친인척양육, 일반가정양육),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연령(영유아기, 초등기, 중고등기, 보호연장기) 등으로 세분화 하여 살펴봄. 총 27명이 면접조사에 참여함
- (조사대상) 전북지역 위탁가정의 위탁아동 양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위탁부모
- (조사내용)
 -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일반적 특성 : 위탁아동 특성(성별, 연령, 위탁사유, 위탁기간, 형제 수, 친부모상태 등), 위탁모 특성(연령, 직업, 학력, 평균수입, 동거가족 수, 위탁아동 수, 종교, 총 위탁경력, 거주지역 등)

- 가정위탁 관련 사항 : 가정위탁 참여동기, 가정위탁으로 소요되는 월 비용, 위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 가정위탁에 따른 만족도 등
- 사업평가 및 정책욕구 : 기존사업(위탁가정·아동)평가 및 개선점, 1년간 지원센터 상담원 접촉 횟수, 상담원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지원센터에 대한 불만, 센터 및 시·군·구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요구사항 등 정책욕구 등
- (조사방법) 1:1 개별면접, 약 1시간 30분 정도의 면담

〈표 1-1〉 전북 시군별 가정위탁 아동 및 세대 수 현황

단위 : 명(세대),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합계
일반 위탁	18 (17)	1 (1)	7 (3)	2 (2)	3 (3)	1 (1)	3 (3)	3 (2)	-	-	7 (4)	-	1 (1)	-	46명 (37세대) 6.1%
대위 위탁	96 (80)	17 (12)	25 (17)	70 (54)	51 (34)	28 (18)	42 (31)	20 (12)	25 (18)	19 (17)	22 (18)	12 (10)	52 (39)	71 (55)	550명 (415세대) 73.1%
친인척 위탁	49 (41)	14 (10)	13 (11)	13 (11)	12 (8)	9 (6)	5 (5)	4 (3)	4 (3)	3 (3)	6 (6)	3 (2)	13 (11)	8 (7)	156명 (127세대) 20.7%
전체 유형	163 (138)	32 (23)	45 (31)	85 (67)	66 (45)	38 (25)	50 (39)	27 (17)	29 (21)	22 (20)	35 (28)	15 (12)	66 (51)	79 (62)	752명 (579세대) 100%

자료 : 2018. 12. 31기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내부 자료

○ 위탁아동 대상 심층면접조사

- (목적) 위탁부모와 위탁아동간의 위탁보호 관련 인식과 경험 차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위탁아동 중심의 가정위탁 보호·양육 실태와 자립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더불어 위탁보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필요 지원 정책 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함
- (조사대상) 전북지역 가정위탁 연장보호 아동 및 종결아동 총 4명
- (조사내용)
 - 일반적 특성 : 위탁유형, 성별, 연령, 위탁된 사유, 위탁된 기간, 학력, 직업(근

로여부), 월수입, 친부모 접촉여부 등

- 가정위탁 관련 사항 : 위탁가정에 배치된 과정과 보호·양육 받으면서 겪은 경험실태, 어려움과 힘든점 등
 - 사업평가 및 정책욕구 : 지원받았던 서비스 현황, 센터 종사자와의 접촉빈도 및 서비스 만족도, 문제점과 개선사항, 센터를 통해 지원받고 싶은 사항, 가정위탁 보호과정 및 자립과정에서 도움 받고 싶은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 분석 등
- (조사방법) 1:1 개별면접, 약 1시간 30분 정도의 면담

○ 현장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

- (목적) 전북에서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입장에서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및 지원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조사대상) 현장전문가(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7명, 시군 및 읍면동 가정위탁보호사업 담당 공무원 5명) 총 12명
 - (조사내용)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가정위탁보호(위탁부모와 위탁아동 관점)에 대한 생활 및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기존사업의 문제점·개선사항, 필요 지원정책 욕구 등 파악
 - 시·군 및 읍·면·동 사업 담당 공무원 : 가정위탁보호 관련 이해정도, 배치기준 및 배치과정에서의 문제점, 가정위탁보호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등
- (조사방법) 기관별 집단면접, 약 1시간 정도의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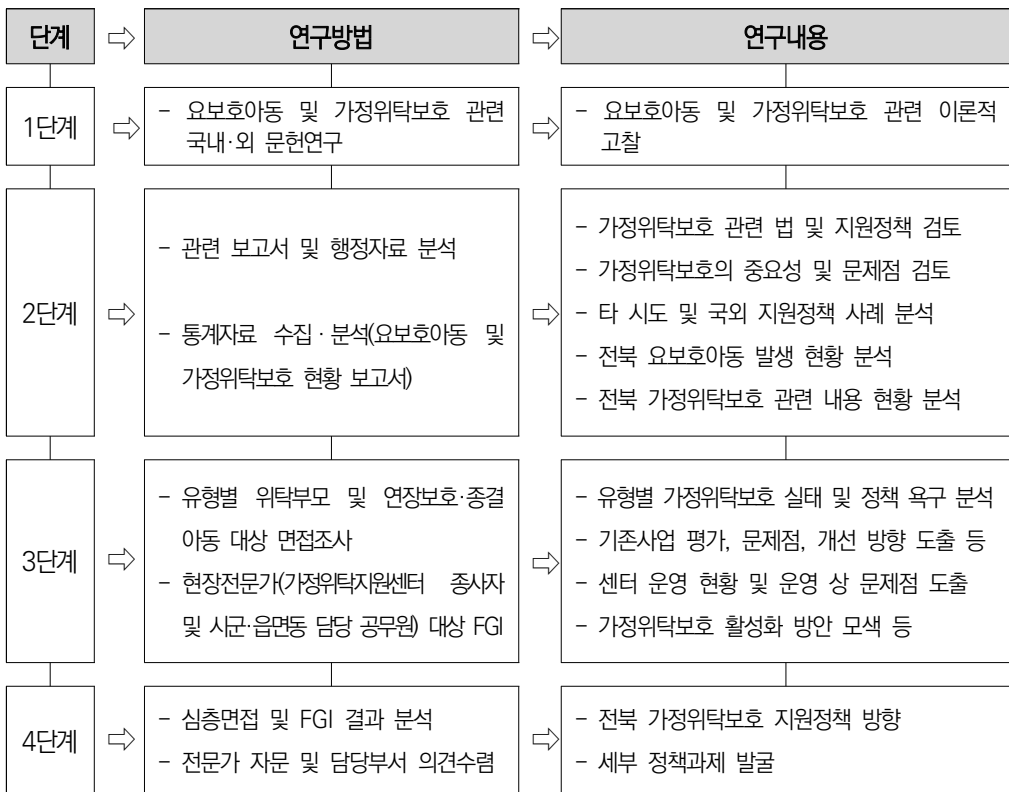
3) 전문가 자문

○ 전문가 자문회의와 담당부서의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의 방향과 방법 및 내용 구성에 대한 심의,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 및 정책적 제언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자문 등
- 담당부서의 의견수렴 : 연구의 방향과 내용,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지원방안과 세부과제 발굴에 대한 의견수렴 등

나. 연구절차

- 이상으로 연구방법과 내용 등에 따라 본 연구의 진행과정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음



<그림1-1> 연구 추진 절차

제3 절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 가정위탁보호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양육이 어려운 경우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시행 된지 15년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가정위탁보호 관련 법 개정 및 보완, 제도 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요구 분석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지역차원에서 유형별 위탁부모와 연장보호·종결 아동 및 현장전문가 대상 면접조사와 FGI를 통해 위탁부모, 위탁아동 및 현장전문가 입장에서의 가정위탁보호의 실태와 문제점, 센터 운영 방향, 개선사항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북지역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정위탁보호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 한편,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인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전반(위탁가정 575 세대, 위탁아동 743명, 2018. 6. 30. 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음. 가정위탁보호 지원 방안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전반에 대한 욕구파악이 전제 되어야 하나 실태조사를 위해 찾아가는 것조차 가정위탁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된다고 조사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 등이 많아 전반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이와 같은 한계는 가정위탁보호 관련 국내외 문헌 고찰과 비교 분석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음. 또한, 조사에 동의한 한정적인 대상자를 최대한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아동 연령별, 지역별로 세분화 하였고, 센터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가정위탁보호의 주요현안과 쟁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센터장과 종사자,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등 현장전문가들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지원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음

2

장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및 사례분석

Jeonbuk Institute

제 1 절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제 2 절 국내외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사례분석

제2장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및 사례분석

제 1 절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가.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1) 요보호아동의 개념

-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제4호에 의거하여 보호자가 없거나, 유기, 학대, 양육자의 양육능력 상실 등으로 발생하는 아동을 말하며, 구체적인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음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보호조치 방법을 결정

〈아동복지법 제15조제4항〉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보호자 가정 복귀,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가정위탁 등에 의한 가정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시설보호 실시

〈아동복지법 제15조5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약물 및 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 발생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

2)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방법

- 요보호아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호조치 방법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친부모에게 보호·양육되는 친가정 복귀이며, 그 다음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조부모, 친인척에 등의 연고자 대상 대리양육 보호조치임. 친가정 혹은 조부모 및 친인척 등에 의한 대리양육 보호 조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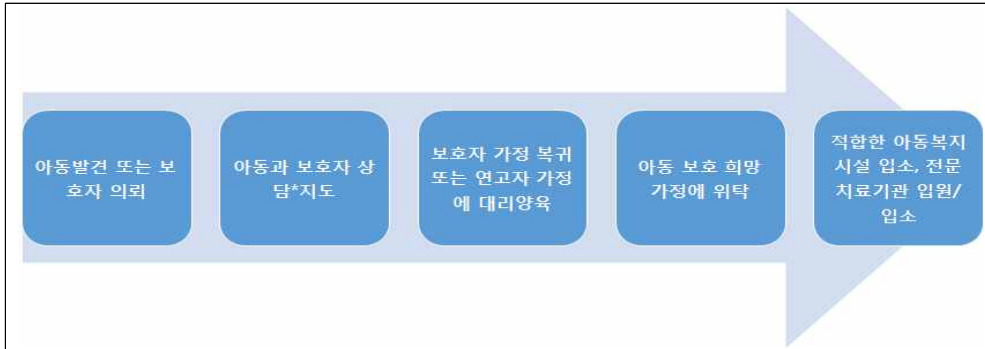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지도 및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라 보호자 및 조부모·친인척 등에 의해 보호 양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일반가정위탁보호임. 요보호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제3자인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임. 요보호아동 특성에 맞는 가정위탁의 부모 발굴 등을 통해 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음. 특히 만 2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은 우선적으로 가정위탁보호를 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음
- 세 번째 방법으로는 요보호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의해 보호조치 되는 방법임. 다수의 집단이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켜 집단으로 양육 및 보호되는 방법임. 아동복지시설로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이 있음
- 요보호아동을 보호조치하는 마지막 방법으로는 입양이 있음. 입양은 입양 특례법에 근거하여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시실하며 국내에서 입양가정을 찾기 어려운 경우 국외입양을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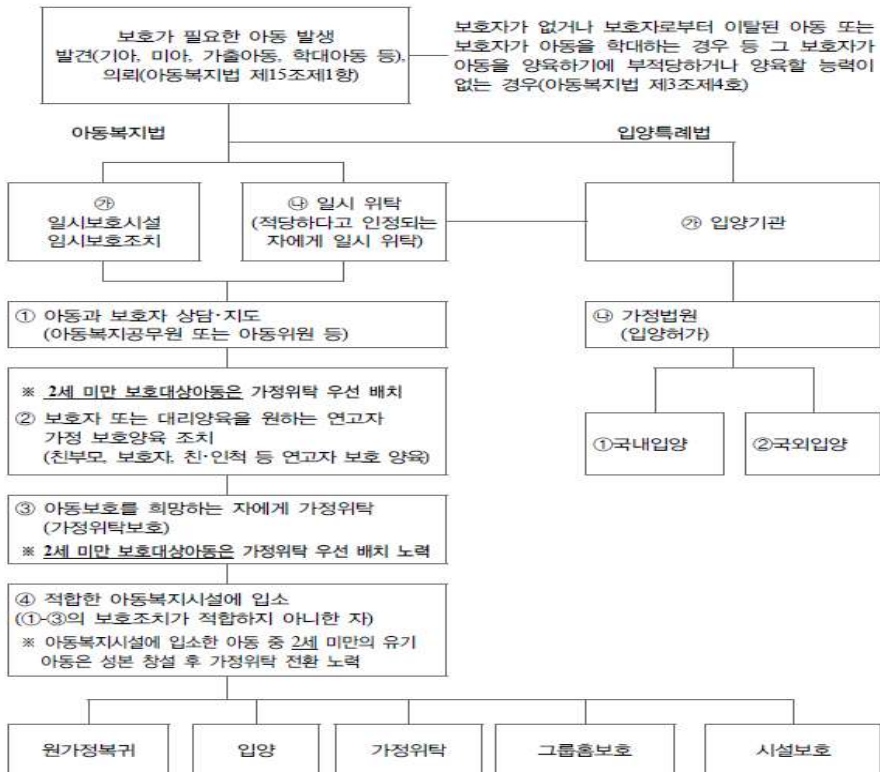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친가정 복귀	정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친가정 복귀 또는 대리양육 조치를 우선으로 권고하며, 이를 위한 지원을 법으로 명시함	
아동 복지 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 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가정위탁보호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입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그림 2-1〉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방법

○ 요보호아동 발생 시 행정 처리 절차는 <그림 2-2>와 같고, 행정영역의 업무처리 흐름은 <그림 2-3>과 같음



<그림 2-2> 보호아동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



자료 : 보건복지부,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그림 2-3> 보호아동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

나.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1) 가정위탁보호의 이해

①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 가정위탁보호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핵심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의 양육과 보호를 통한 건전하고 건강한 지원에 초점 맞추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보호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성범죄, 정신질환, 아동학대 등의 이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의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요보호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임
 - 즉, 부모의 학대·방임, 이혼, 사망, 질병, 유기 등으로 친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정기간 적합한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위탁가정 내에서 건전하게 보호·양육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친가정이 가족의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② 가정위탁보호의 목적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 보호 우선 실시 필요

- 친부모와 가족기능 회복과 강화 : 요보호아동 위탁보호 기간 동안 친부모와 가족이 처한 위기에 대응하면서 친부모 요보호아동의 애착관계를 유지·강화시키기 위해 위탁보호 기간 동안 만남을 지원하며 최종적으로는 친부모와 위탁보호아동의 재결합, 원가족 복귀를 지원함
- 친가정의 보존 : 위기에 처한 부모와 위탁아동의 친가정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간과 지원을 실시함

③ 가정위탁보호 지원 대상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근거)

- 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요보호아동 발생시 2세 미만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표 2-1〉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일반아동	부모의 이혼, 가출, 질병, 실직, 사망, 수감 등으로 인해 가족기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여 일정기간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시설보호 및 일시보호 아동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및 일시보호 중인 아동
학대피해 아동	부모의 학대로 인해 친부모와 분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연장가능 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

- 보호조치 중인 만 18세 이상 아동 중 ① 대학진학 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복학 포함),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동안 연장 가능, ③ 만 20세 미만까지(등록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연장 보호 지원, ④ 만 25세 미만까지(아동의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하는 경우) 연장 가능, ⑤ 지능지수가 71~84 이하인 아동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만 25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 ⑥ 만 18세 도달 시점에 1년 이내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 가능 등

④ 가정위탁보호 4가지 구성요소

- 위탁부모 : 요보호아동을 일정 기간 친부모와 친가정을 대신하여 부모역할을 하는 부모,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최종적으로는 친가정과 친부모에게 복귀하도록 도움
- 위탁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 친부모(가정)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법적인 친권을 가지고는 있으나 친 부모에게 혹은 친가족에게 위기가 발생하여 아동을 정상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워 일정 기간 동안 가정위탁 부모에게 가정위탁보호를 요청한 부모
- 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역(시와 군 등)의 가정위탁보호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및 친부모의 관계 지원과 더불어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기관

⑤ 가정위탁보호의 유형

- 가정위탁보호의 유형은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3가지로 구성됨

가정위탁보호 유형
-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제 3자)에 의한 가정위탁
- 기타(전문 및 일시 가정위탁 운영): '아동분야사업안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추가 유형에 대해 예산 편성하여 운영 가능(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 시행령 제19조)

<p>▶ 전문 가정위탁 운영 : 가정위탁보호신청 아동 중 2세 이하 아동 및 시·군 구청장이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운영 ↓ (전문위탁부모의 자격) 일반위탁부모의 선정요청 총족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과정 이수한 사람으로 가정위탁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인자, 사회복지사·보육교사·교사·의료인·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 (전문위탁부모 양육수당) 매월 40만원 이상 양육수당 지급 권고↓ (종료) 아동의 연령이 2세를 초과하는 경우 및 전문가정위탁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여 보호조치의 변경이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 전문위탁부모 양육수당 지급 종료↓</p> <p>↓</p> <p>▶ 일시가정위탁 운영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로 일시가정위탁 보호조치 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 시행령 제19조)↓ (기간) 일시가정위탁보호 기간은 최대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보호비용 지급) 일시가정위탁보호 결정일로부터 예산범위 내 보호일수 산정하여 위탁부모에게 지급↓</p>

〈그림 2-4〉 전문 및 일시 가정위탁 내용

⑥ 위탁가정의 선정 조건(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아동을 양육하기에 소득수준이 적합한 수준의 가정이어야 함
- 아동에게 종교의 자유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양육이 가능한 가정이어야 함
- 부부 모두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 60세 미만의 나이 격차가 있어야 함
-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이내의 자녀이어야 함(18세 이상 자녀는 제외)
- 아동학대, 성범죄, 가정폭력,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가정 내에 없어야 함
-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기준

⑦ 가정위탁보호의 실천원칙

아동중심의 원칙	아동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최우선적 고려
가족보존의 원칙	친가정의 가족기능을 회복시켜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고, 친가정 유지가 어려울 경우 대리가정을 발굴하여 건강한 위탁가정 유지
친인척 가정 우선 배치의 원칙	친인척가정에 특별한 결석사유가 없는 한 아동의 문화적,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아동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친인척 가정에 우선 배치
연계성의 원칙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친가정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기관과 네트워크 체계 구축하여 맞춤 서비스 제공
적절성의 원칙	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성이 고려된 적합한 위탁가정에 아동 배치하고 사례 개입에 요구되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
전문성의 원칙	위탁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 대처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 향상

자료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fostercare.or.kr/>)

〈그림 2-5〉 가정위탁보호의 실천원리

⑧ 가정위탁보호 절차

구분	읍·면·동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 보호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 가정위탁보호의 신청·접수·상담 - 수급권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위탁 보호의 신청·접수 - 위탁가정범죄경력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위탁 아동 상담 - 위탁부모 발굴 및 교육
가정위탁 보호결정	<p>일반위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대상아동 조사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p>친·인척/대리양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인 가정조사서, 보호대상아동 조사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p>일반위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위탁 보호 결정 -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 가정 연계 의뢰 - 수급자 책정 -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책정 및 통보 <p>친·인척/대리양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위탁 책정 및 통보 - 가정위탁 아동 지원 	<p>일반위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가정을 상담하여 적합한 가정 연계 후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인 가정조사서, 가정위탁 가족동의서, 일반위탁 부모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제출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업무 지원 - 위탁아동, 위탁가정, 친가정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아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 위탁아동, 위탁가정, 친가정 관리 - 위탁 부모 교육 -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상담 지원
가정위탁 보호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종결 - 귀가조치(친가정 복귀 등) - 가정위탁 종결(해지), 가정위탁 지원센터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치 사정 - 아동 귀가 신청서 제출 - 사후 관리

자료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fostercare.or.kr/>)

〈그림 2-6〉 가정위탁보호 절차

2) 가정위탁보호 관련법 및 지원정책 발전과정

① 가정위탁보호 관련법

○ 아동복지법

- 제3조(가정위탁 정의)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
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5조(보호조치) : 시·도지사 혹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내에서 보
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견 및 보호자의 의뢰 받을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
을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함
- 제15조 제1항 3호 :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 위탁하는 것
- 제15조 제2항: 조치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게 할 수 있음
- 제15조 제3항(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업무), 제
59조(비용보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4조제3항(급여의 기준) :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단위로 실시할 수 있음. 제
7조(급여의 종류),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2(급여의 특
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관련 조항
- 의료급여법 : 제3조(수급권자)

②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발전과정

- 1961년 아동복지법 제정 및 1962년 10월 정부 대행기관으로 대한양연회 발족으로 입양과 가정위탁보호 사업이 실시되기 시작함. 정부는 가정위탁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988년 인천과 광주 2곳을 대상으로 가정위탁 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1991년부터는 전국 확대 방침이었으나 1993년 불충분한 예산과 인력, 제도적 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전국 확대가 늦춰짐
- 한편,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가정위탁보호 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한 반면, 중앙정부의 가정위탁보호 사업은 2000년 양육보조금 지원, 2000년~2002년까지 강원도에 가정위탁보호의 상담과 지원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는 정도였음
- 정부 주도의 가정위탁보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3년 이후이며, 국가가 가정위탁보호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UN의 아동 권리협약이행에 대한 권고 때문임
-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3년 1월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계획 공고하고, 2003년 4월부터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함.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가 설치됨. 2004년 7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로 전국 18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그림 2-7〉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발달과정

3)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기준)

□ 위탁아동 대상 지원

-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이상(지방이양) 권고(시도마다 차이 있음)
 - 양육보조금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양육비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재개설 포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지급 가능)
- * 단 전문가정위탁일 경우 매월 40만원 이상 양육보조금 지급(아동연령 만 2세 초과 시, 전문가정위탁보호의 목적 달성으로 보호조치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비(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지원)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는 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 의무자가 존재할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가족관계의 단절로 취급하고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참조) 수급 실시

*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해 보호 조치된 경우(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 등) 실질적 가족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음

- 생계·주거·의료 등의 해당급여를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개인단위로 실시

*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으로서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적용. 특별히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급자와 보장시설 수급자 간에 특례 적용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출처 : 보건복지부(2018년)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참고, 보건복지부 및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8년 10월), 공무원용 가정위탁 업무 안내서 참고

- 특히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 및 기초생활수급을 동시에 책정함

㉠ **상해 보험료 지원** : 보험료 1인당 연 6.5만원 이내

- 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미 위탁부모 1명
-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 문의
- 보험내용 :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위탁부모가 무제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상해에 대한 보험 가입 지원
 -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상해 및 질병에 따른 입원 의료비와 일당·통원 의료비, 치아치료비, 암 치료비, 유괴·납치·인질 위로금, 강력범 위 위로금, 얼굴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및 일상생활 배상 책임 등 지원

㉡ **심리치료비 지원**

- 내용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교통비
- 지원금액 :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방법 : 심리치료비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매월 25일에 진료비 지급(전 월분)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단, 필요 시 12개월에 한해 연장가능,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받아 시·군·구에서 결정)
 - * 단, 상해보험료와 심리치료비 지원은 만 18세 이상(고교 재학중인 아동은 제외)은 지원 대상이 아님

㉔ 디딤씨앗통장

- 지원금액 : 일정 금액을 매월 위탁아동이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 매칭 지원으로 월 4만원까지 동일 금액 적립(17년부터 정부지원금액 확대)
- 지원 대상 : 만 0세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 단, 정부 매칭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계속 저축 가능(기초자산 형성 지원)
- 지원 방법 : 위탁아동 선정 배치 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 가능, 취급 은행 신한은행

㉕ 대학 진학자 대학등록금 지원 : 아동 1인당 5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 * 단, 한국장학재단 장학금과 중복지원 불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

㉖ 자립지원 정착금(지방이양)

-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 종결아동 포함)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500만원 이상 지급
- 지원 방법 : 자립정착금 수령 1개월 전 자립 업무 담당자의 확인(서명)이 포함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
 - * 예산부족 종결 초기에 지원되지 않고 시일이 지난 후에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므로 미리 당해 연도 종결 아동 수를 파악하여 예산 편성
 -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확인 및 자립 업무 담당자에게 입금일자 공지
 - * 시, 군, 구는 위탁아동 또는 위탁부모에게 지원내용 전달 필수

□ 가정위탁 부모 대상 지원

㉠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전세 주택 자금 지원 ; 국토교통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종료 아동
-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지원 대상가정을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세자금 지원 대상 추천

㉡ 위탁아동 양육에 대한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0조 근거)

- 위탁아동 양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인적 공제 가능
- 6개월 이상 과세 기간 동안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을 직접 양육했을 시
- 지원내용 : 기본공제와 특별세액공제 혜택 제공
 -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육비용, 학원비, 교육비, 학교급식비, 유치원비, 체육시설수강료, 교복구입비 등
 - 고등학생 이하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 장애인의 경우 한도 없음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증빙 필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표 2-2〉 가정위탁보호 경제적 지원정책 내용(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구분	지원내용	전북 지원현황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월 200천원 이상(지방이양) 권고	2019년 1월부터 매월 200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개인 단위로 실시	전국 공통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1인당 5,000천원 이상 지급	위탁보호를 종결한 경우, 3,000천원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 권고	아동 1인당 3,000천원 이상 지급 권고	2,000천원(인/1회)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인당 연 65천원 이내	전국 공통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검사비 20만원(1회),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전국 공통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대상 주택: 임차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 대상: 가구당 월 평균이하로 무주택인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대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일반 주택</td> <td>수도권</td> <td>9,000만원</td> </tr> <tr> <td>광역시</td> <td>7,500만원</td> </tr> <tr> <td>그 외 지역</td> <td>6,000만원</td> </tr> <tr> <td>공공 임대주택</td> <td>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 중 월 임대료 전 환금액</td> </tr> </tbody> </table>	구분	대출한도	일반 주택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500만원	그 외 지역	6,000만원	공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 중 월 임대료 전 환금액	전국 공통
구분	대출한도												
일반 주택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500만원											
	그 외 지역	6,000만원											
공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 중 월 임대료 전 환금액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절위로비 (세대/200천원) · 방과후간식비 (인/1,000원) 180일기준 · 현장체험활동비 (인/2회): 초30천원, 중40천원, 고50천원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원내용

㉠ 위탁가정 대상 교육

- 예비위탁부모교육 : 일반위탁부모로 활동하기 희망하는 예비위탁부모 대상 교육 및 친인척·대리양육 가정위탁(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대상 교육, 4시간, 아동 배치 이전 실시
- 위탁부모 보수교육 : 예비위탁부모교육 이수 후 지속적으로 위탁아동을 보호하

고 있는 위탁부모 대상, 연 1회, 4시간

- 친부모 교육 및 상담 : 위탁아동의 친부모 대상, 연 6회 이상 상담과 교육 실시, 아동 위탁 후 약 6개월 이내 실시
- 위탁부모 자조모임 : 위탁부모들이 양육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 자조모임 진행
- 전문가정위탁교육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 제공을 위한 전문가정 위탁 교육
- 공무원 간담회 : 행정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협조체계 구축

㉠ 홍보사업

- 홍보캠페인 : 가정위탁 홍보 및 예비위탁부모 발굴을 위한 캠페인 진행
- 홈페이지 및 SNS홍보 :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 언론홍보 : 신문, TV, 라디오, 전광판 등 언론매체 홍보

㉡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 대외협력: 지역사회 아동복지 관련 핵심 연계기관과 자원연계 관련 업무 회의
- 운영자문위원회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발전방안 모색 및 사례자문과 관련한 회의
-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교육 등 관리 및 가정위탁보호사업

㉢ 문화정서 지원사업





-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 위탁부모 및 아동을 위한 지지체계 제공과 위탁가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 일반위탁 힐링프로그램 : 일반위탁부모 양육스트레스 해소 및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 위탁가정 관계향상 프로그램 : 위탁아동과 대리친인척 위탁가정 및 친가정 관계향상 기회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 대리친인척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 대리친인척 가정 대상 정서적지지 제공 및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4)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의 전달체계와 주요 운영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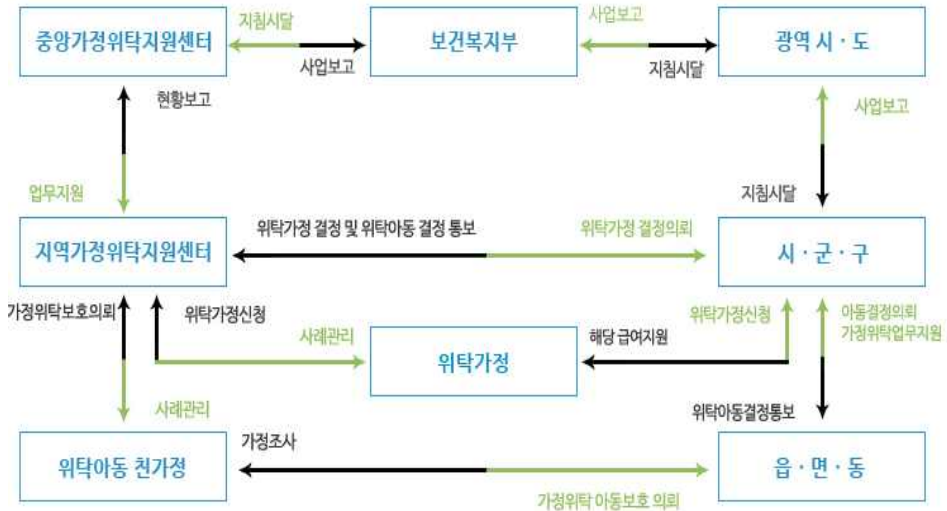
①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의 전달체계 및 기관별 역할

- 중앙정부(보건복지부)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법·제도적 정책개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 보조금 집행 및 평가, 인력 및 자격관리 등을 수행
- 시·도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예산 확보 및 지원(양육보조금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지도관리 및 사례지도 관리, 가정위탁보호 관련 통계관리 등의 업무수행
- 시·군·구 :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결정(가정위탁이 적합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가정위탁보호가 적합한 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조치 결정) → 위탁가정 지정 및 해지 결과와 주소지 이전 사항을 관할 읍면동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역 내 위탁아동 현황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제공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적합한 조치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의뢰 등의 업무 수행
- 읍·면·동 : 위탁 대상아동 신청·접수, 위탁보호 의뢰자와 친·인척 상담 및 가정조사 등 → 시·군·구의 위탁보호 결정 후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신청, 아동 주소지 이전·전학에 관한 업무지원 →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의 연계(위탁아동 배치) 이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부모교육, 위탁가정관리에 관한 업무지원, 업무협조 등 수행

구분	읍·면·동	시·군·구
상담 · 조사 · 사정	 <p><가정위탁보호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양육/친인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상담 : 아동과 위탁보호 희망자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보호대상아동 조사서,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상담 : 의뢰된 아동 - 보호대상아동 조사서,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가족관계부 첨부하여 시·군·구 제출 	<p>시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요청을 받은 즉시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초기상담(초기상담지작성) 실시 ② 아동상황점검표, 친부모상황점검표를 활용하여 대상자 상황 파악 ③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 실시 <p><가정위탁보호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양육/친인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에서 제출한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보호대상아동조사서, 아동카드, 가정위탁 보호동의서를 검토 - 위탁가정 범죄경력조회 및 확인 •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에서 제출한 보호대상아동 조사서, 아동카드, 가정위탁 보호동의서, 가족 관계부 검토 -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 발굴의뢰 -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출한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 가정위탁 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일반위탁부모 추천서, 가정위탁 가족동의서 검토 - 위탁가정 범죄경력조회 및 확인
	 <p>•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p> <p>•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위탁가정소재 시·군·구 (또는 시·도) 통보</p> <p>•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로 관련서류 발송(7일 이내)</p>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호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업무지원 • 위탁아동, 위탁가정, 친가정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 수행 • 아동발생소제지 시·군·구는 아동카드 3부 작성하여 위탁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 발송 • 보호대상 아동별 보호관리계획 수립 • 보호대상 아동별 보호관리계획 확정, 시행 • 위탁아동, 위탁가정, 친가정 상담 •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업무지원 • 위탁부모교육 협조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례관리)	 <p>• 아동귀가신청서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으며 양육 상황 점검표를 활용하여 부모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을 귀가 조치할 수 있음 <p>•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논의</p> <p>• 가정위탁 종결 또는 보호기간 연장</p> <p>•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종결 또는 연장)</p>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조치 종결 후 원가정 복귀 한지 1개월 이내에 1회 실시, 1년 이내에 전체 2회 실시. 단,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험요인 발견 시 사후관리 기간 연장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계획(상담주기) 수립가능 	
사후관리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공무원용 가정위탁업무 안내서

<그림 2-8> 시·군·구 및 읍·면·동 가정위탁보호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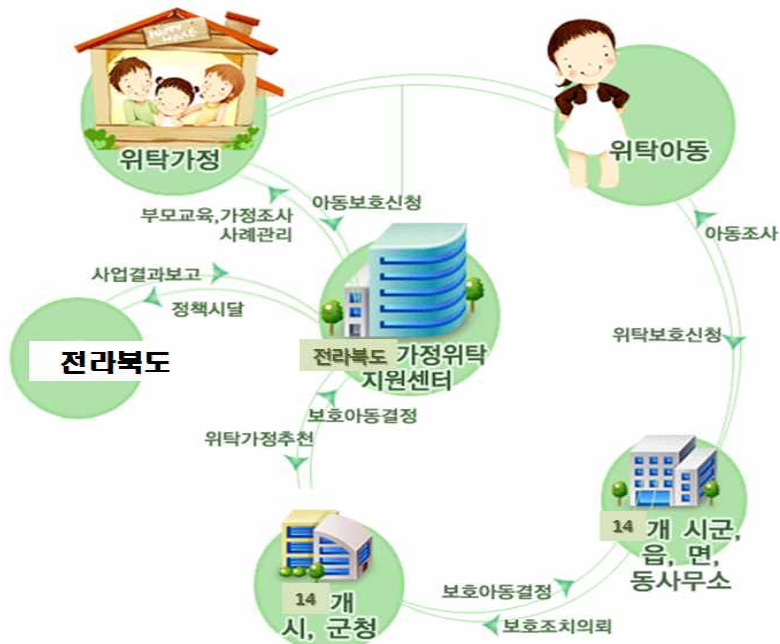
〈그림 2-9〉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달체계

②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선정 및 진행 절차

- 가정위탁보호 신청, 선정 및 진행절차는 친족위탁(대리양육, 친인척위탁)과 일반위탁으로 크게 구분됨
- 친족위탁(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은 아동을 위탁·양육 시 조부모·친인척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제출, 읍면동의 가정위탁보호 사업 담당 공무원은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 조사서, 보호대상아동조사서, 아동카드에 조부모 및 친인척 가정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위탁보호 결정 후 지원센터에 통보
- 일반가정위탁은 읍면동에서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이 아동과 가정을 조사하여 대리양육과 친인척 양육이 도저히 불가할 경우, 보호대상아동조사서, 아동카드, 가족관계부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일반가정위탁 의뢰. 시군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 관련 서류 첨부하여 위탁가정 발굴 의뢰. 이 기간 동안 읍면동 공무원은 요보호아동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조사 책정. 위탁부모와 연계되면 지원센터에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작성 제

출하고 읍면동에도 신청서 제출

- 가정위탁보호는 요보호아동이 다시 친가정으로의 복귀되는 경우와 만 18세 이상이 됨과 동시에 위탁이 종결됨. 친가정복귀는 요보호아동의 친부모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시켜 양육·보호하는 경우이며, 아동학대로 인한 가정위탁보호일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견서를 송부 받아야만 친가정으로 복귀 가능함. 위탁종결은 요보호아동이 만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가정위탁보호가 종료하게 됨. 한편, 요보호아동이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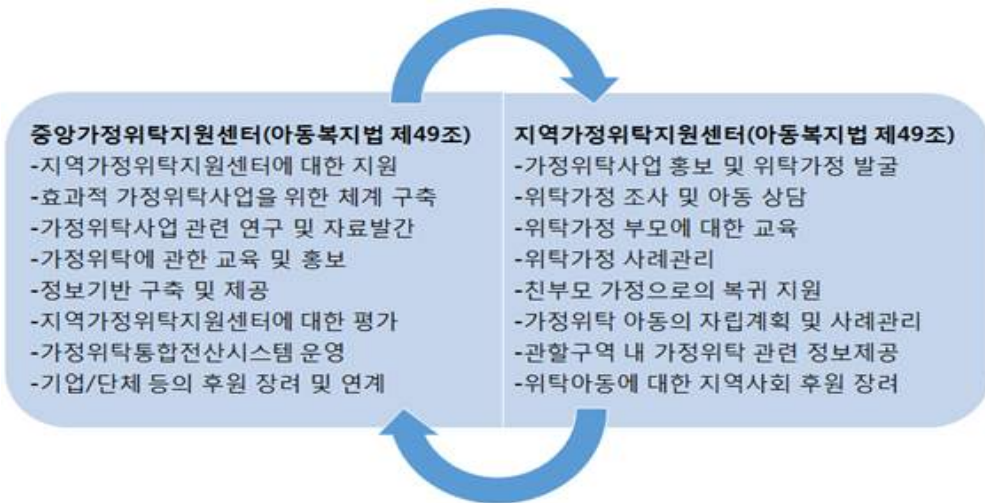
자료 :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oster-gangwon.or.kr/index.asp>)

〈그림 2-10〉 가정위탁보호의 업무 흐름도

③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주요 운영기관 : 중앙과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 중앙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49조

- 아동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위탁보호와 관련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 센터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연계체계 구축 연구 및 자료 발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을 지원함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의 가정위탁보호업무를 지원하고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도모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 (역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 지원,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상담원에 대한 교육 및 가정위탁에 대한 홍보,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평가 등을 실시
- (인력지원)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은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배치
 - 배치기준: 센터장 1명, 상담원 8명 이상,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사무원 1명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 기준은 3년 경과규정 적용되어 2015년 8월 6일까지 배치해야 함

- 인건비 :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사자의 인건비 예산 확보 및 지원 필요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방이양사업)

- (역할)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가정위탁사업 홍보 및 위탁가정 발굴, 원하는 가정위탁 조사 및 위탁아동 상담 등 시·군·구의 가정위탁보호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 도모
- 전국 시·도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17개소(2017) 설치, 각 시·도 1개, 경기 2개
- (인력지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7조(18.3.23 시행)에 따라 배치
- 센터의 직원 배치기준 : 센터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사무원 1명 이상,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사무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 * 상담원은 위탁아동 400명 초과 시 200명당 상담원 1인 추가 배치하고, 아동복지법 제 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 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해야 함(자립지원전담요원 추가 배치는 '18.3.23부터 적용)
- 인건비 지원 : '20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예산 확보 및 지원 필요
 - *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기준)종사자에 준하여 종사자 수당 지급 권고
- (운영비 지원) 시·도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가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자체사업 운영 시 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가능

〈표 2-3〉 전국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2017. 12. 31.기준)

구분	운영법인	종사자 수 (관장 포함)	가정위탁보호 발생 (2017년)	서비스 대상
계		168	990	11,975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0	72	1,066
부산	세이브더칠드런	10	58	654
대구	세이브더칠드런	10	17	284
인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0	53	582
광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0	26	346
대전	(수)한국수영부모협회 대전지부	7	30	242
울산	굿네이버스	7	33	247
경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0	158	1,415
경기북부	대한사회복지회	9		746
강원	춘천 YMCA	10	69	1,109
충북	세이브더칠드런	10	30	527
충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1	57	633
전북	세이브더칠드런	10	67	791
전남	공생복지재단	12	99	1,177
경북	(사)한국아동복지협회	10	113	937
경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1	81	955
제주	(사)제주상담센터	11	27	264

자료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7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2018. 8 기준)

5) 가정위탁보호의 중요성 및 주요쟁점

① 기존 요보호아동 보호에 따른 문제점

-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보호조치 방법으로 크게 시설보호와 가정보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됨. 최근까지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요보호아동의 60% 가까이 시설보호로 보호조치 되고 있음. 시설보호에 따른 요보호아동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수 제기되면서 가정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음
- 인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 중 가정은 출생 시 부터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이는 어떠한 환경요인보다도 아동의 성장발달에 가정이 중요함을 의미함. 이에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아동에게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중요함
- 그러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시설보호될 경우,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하는 기관 종사자의 적은 임금과 낮은 사회적 지위 및 업무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30~40%의 높은 이직률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요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저하됨. 또한, 집단생활로 인해 또래그룹 내에 이상한 하위체계를 형성하여 비공식적 혹은 시설 내에서 만의 공식적이고 사무적인 체계 사이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비전문적인 시설직원으로 인해 요보호아동의 문제를 민감하게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있어서 매우 제한적임. 무엇보다 요보호아동 대상 학대 및 방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음. 이상으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보호에 있는 요보호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타인의 주요 정서와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낮고, 정서조망능력도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집단 시설보호의 많은 문제점의 해결과 요보호아동의 안전, 권리, 인권이 존중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집단적 시설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보호로,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 및 지역사회 내 가정보호가 우선시 하도록 하는 지원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음

- 이에 가정위탁보호는 요보호아동의 권리 존중 및 친가정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원정책으로 그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

② 가정위탁보호의 유형별 특성

-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로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가 우선시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최근 가정위탁보호(2016년 기준)는 대리양육가정위탁 66.6%, 친인척가정위탁 25.9%, 일반가정위탁 7.5%로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의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즉,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는 친족위탁(대리양육, 친인척)에 거의 의존하고 있음
-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인 친족위탁은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아동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동일한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위탁가정 보다 아동에게 더 큰 장점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친족위탁의 위탁부모는 일반가정위탁부모에 비해 인구학적 배경(연령, 학력, 소득수준, 주택 등)이나 주위 환경에 있어 열악함. 특히 대리양육가정위탁의 조부모 연령은 70~79세가 45%로 일반가정위탁부모(50~59세가 44%로 가장 많음)보다 연로하며, 학력수준도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이 34% 이상이나 되는 대리양육가정위탁의 조부모 보다 일반가정의 위탁부모는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졸업이 77%를 넘어서고 있음.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50만원 미만이 6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리양육위탁 보다 일반가정위탁이 상대적으로 높음
- 무엇보다 친족위탁 부모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특히 조부모인 대리양육위탁부모가 정보의 부족이나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양육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강현아, 정중익, 양경해, 2015). 연령이 높은 대리위탁부모와 그 손자녀 아동의 세대차이로 인해 서로 유대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며, 아동이 성장할수록 아동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강현아 외, 2015). 또한,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가정위탁의 경우 아동권리나 현대적 아동양육 방식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노화로 육체적으로 힘들며 고령인 자신에게 버거운 짐을 지게 하는 성인자녀나 며느리에 대한 반감으로 정서적·신체적 학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함(최은희, 윤혜미, 2014)

- 반면, 일반가정위탁보호는 친족위탁보호와 비교 시 위탁가정에 배치될 당시 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 측면 모두의 상황이 친족위탁아동에 비해 열악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됨. 특히 일반가정위탁 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양육태도를 친족위탁아동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위탁가정으로 배치된 이후에 학대에 대한 피해 수준 또한 급격히 낮아지는 변화를 보임. 이는 일반가정위탁이 친족위탁에 비해 양육환경이 우수하며, 아동의 발달측면에 있어서도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정중익, 강현아, 김주현, 2017). 무엇보다 가정위탁보호의 목적인 요보호아동의 친부모와의 만남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허남순, 2004)
- 이에 혈연관계로 형성되어지는 친족가정위탁보호보다 제3자인 일반인에 의한 일반가정위탁보호가 보다 활성화되어질 필요가 있음. 그 이유는 일반가정위탁의 경우는 위탁부모에 대한 엄격한 선정기준, 위탁부모에 대한 철저한 부모교육 및 다양한 교육과정 이수와 전문가에 의한 훈련 및 위탁아동의 정서적 문제와 건전한 성장을 직접적 지원까지 해주기 때문임

③ 유형별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주요 쟁점

- 먼저, 가정위탁보호의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부모 이혼이 42.8%로 가장 높고, 부모 가출·별거 22.7%, 부나 모의 사망 19.9%로 나타남. 이처럼 친부모의 방임으로 인한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는 위탁아동과 친부모 간의 애착관계 및 교류를 방해하고, 가정위탁보호의 주된 목적과 실천 이념인

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 도모는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가정위탁보호의 주된 사유(이혼, 가출·별거, 부/모의 사망 등)로 인해 위탁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 평균 위탁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결아동의 대부분이 만 18세 이상으로 연령 도래에 따른 종결이 되고 있는 상황

- 다음으로, 아동에 대한 위탁가정 배치 시 지속성과 안정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즉 위탁아동은 친가정으로부터 학대나 부모로부터의 방임 등 매우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준비나 치료적 개입 없이 바로 낯선 위탁가정 환경에 배치되거나 부적응으로 다른 위탁가정으로 재배치되며 혹은 친가족에게 돌아가게 되는 환경의 급변화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가정위탁보호라도 아동중심의 아동 입장에서 정서적 안정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특히 심각한 문제 행동 및 심리·정서적 문제 혹은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아동중심의 아동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가정위탁보호 유형 중 일반가정위탁보호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위탁(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그 이유는 첫째, 혈연관계 중심의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일반가정 위탁보호에 대해 인지도가 매우 저조하고, 향후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 위탁가구에 대한 수요 파악도 힘든 상황임. 무엇보다 신규 일반위탁가정 발굴이 매우 어려움. 누군가의 자녀를 일정한 기간 동안 도맡아서 애정으로 양육·보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온전히 선의와 이타심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는 이유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도 물론 아님
 - 둘째, 일반가정위탁보호에 대한 홍보를 홍보물(리플렛, 포스터, 전단지, 소식지 등)과 언론매체(TV방송, 라디오 방송, 신문, 잡지,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웹진), 행사(캠페인, 기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

속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여건과 인식 자체가 매우 저조한 상황임

- 셋째, 일반가정위탁보호에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육구 파악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여전히 불충분한 상태임
- 넷째, 친족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위탁아동에 비해 일반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위탁아동들의 특성상, 양육환경과 발달 측면 모두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음. 즉 친족위탁양육의 경우는 정서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문제가 덜 심각하고, 발달적 측면에 있어서도 건강한 아동들이 보호배치 될 경향이 높음. 반면, 심각한 상태의 심리·사회 적응에 대한 여러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 친족이 양육부담으로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일반가정위탁보호로 배치될 확률이 높음. 이에 일반위탁가정보호와 친족위탁가정보호 유형 간에 아동 발달이나 문제행동 측면에서 이미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일반가정위탁보호의 위탁부모들의 어려움은 많은 반면 필요 지원 육구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힘든 상황임

○ 마지막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 및 공무원의 인력구조가 매우 열악함.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업무량은 과중함. 특히 광역시 및 도에 단 1개씩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물리적인 거리에 따른 업무량과 더불어 담당 사례수를 고려할 때 종사자의 업무량은 절대적으로 과중함. 사례관리에 대한 업무, 종결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자립지원서비스 수행, 부가적인 행정업무 등 그 업무량은 막중함. 이에 가정위탁보호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친가정 및 친부모 지원을 통한 가정 복귀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

제2절 국내외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사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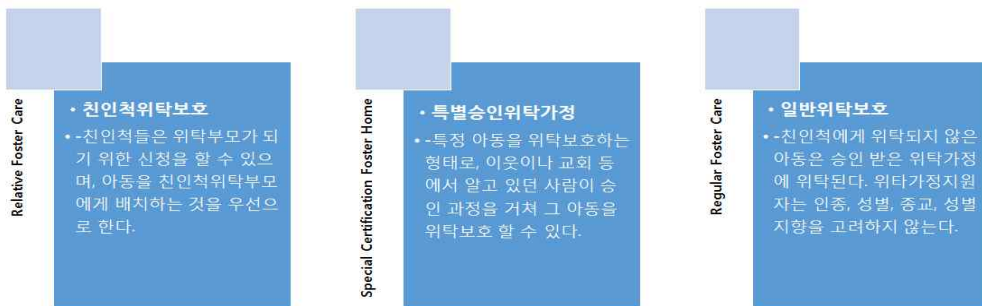
- 본 절에서는 먼저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하여 우리나라보다 선진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영국·호주의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사례를 가정위탁보호 유형, 지원내용, 주요 운영기관 및 위탁부모 선정기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했음
- 다음으로 국내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 중 일반가정위탁보호를 중점으로 지원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 센터의 지원내용을 살펴봄

가. 국외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사례*

1) 미국(State of Oregon)

① 가정위탁 보호 유형

- 미국은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에 기초하여 아동보호체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대규모 시설보호의 단점을 발견하고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최우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아동보호의 원칙을 가정위탁보호에 초점을 두었음



〈그림 2-11〉 미국 Oregon 주의 가정위탁보호 유형

* 본 내용은 박복순 외(2015), 「위탁가정 유형의 다양화 및 지원방안 연구」와 김희연·박은미·이주현(2006), 「보호필요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확대방안 연구」를 참고하여 기술함

② 가정위탁 지원내용

○ [경제적 지원] 오레곤주 정부는 위탁가정에게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탁보호지원금, 쉼터보호지원금, 확대쉼터보호지원금, 개인돌봄서비스지원금, 교통비 등이 있음

- Base Rate Payment(위탁보호지원금): 요보호아동에게 위탁보호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제반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식비, 의류비, 주거비, 개인적 부대비용, 교통비 등을 포함함. 단, 쉼터보호지원금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온 뒤 21일 후부터 지원됨. 지원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함(연령이 높을수록 금액이 높아짐)
- Shelter Care Payment(쉼터보호지원금): Department of Human Service(이하 DHS)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에게 대체 보호를 제공하는 가정에게 첫 20일 동안 지원함. 아동이 DHS의 보호에서 위탁가정에 이동할 때 한 번만 지급되며, 마찬가지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됨
- Enhanced Shelter Payment(쉼터보호지원금 연장): 쉼터보호지원금의 확장된 형태로서, 위탁아동이 친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시설에 머문 뒤 가정 위탁되는 경우에 20일간 지급함. 마찬가지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됨
- Child and Adolescent Needs and Strengths(CANS) Level of Care: 기본지원금 외에 추가적으로 별도의 스크리닝 절차에 의해 특별관리가 필요할 경우 지급하며, 기본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 가능함
- Personal Care Services(개인돌봄서비스 지원금): 아동에게 별도의 간호나 돌봄이 요구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경증도에 따라 차등 지급함
- 그 밖에 추가적으로 교통비 지원이 요구될 경우 교통비를 지급함

- 아동이 위탁배치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 다니기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
- 가족방문비용이 서비스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족방문비용 지원
- 오레곤 주 내 항공비용이 차량이용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항공비 지원

- [프로그램 지원] 위탁아동의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음. 여가 및 스포츠를 비롯하여 동아리, 자조모임, 멘토링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위탁부모를 위한 자조모임 등이 있음
 - The Rowell Foster Children's Positive Plan: 위탁아동에게 음악, 미술, 스포츠, 진로체험 등의 제공을 통해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지원을 돕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음
 - Foster Club(위탁동아리): 위탁아동들을 위한 인터넷(웹사이트) 공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 사이트를 통해 궁금한 것들에 대해 정보를 얻으며, 선배 위탁아동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여 정책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위탁부모 자조모임: 위탁부모들은 자조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어려운 점에 대해 스스로 토의하고 해결하는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함
 - 멘토링: 위탁아동 뿐만 아니라, 위탁부모를 위한 멘토링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위탁아동과 부모의 적응을 돕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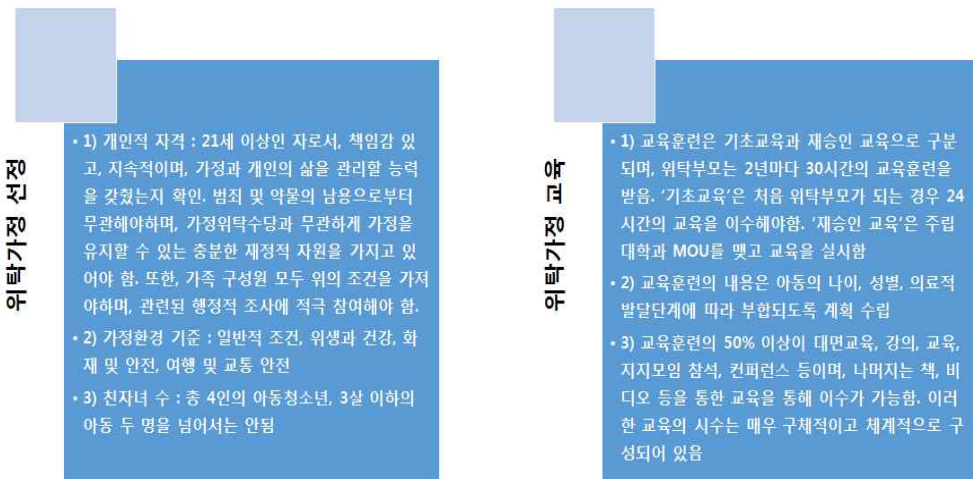
③ 주요 운영기관 및 위탁부모의 선정과 교육

- [주요 운영기관] 미국은 가정위탁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법과 규정, 절차 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각 주마다 차이가 있음. 각각의 주 안에서 위탁보호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자격을 인증 받아 운영되고 있음
 - 오레곤 주의 가정위탁업무는 DHS(Department of Human Service)에서 담당하며, 각 카운티에서는 복지 관련 부서가 행정서비스를 지원함. 또한, 주 정부와 카운티의 원활한 업무 연계를 위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협의체 같은 'Local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주 정부에서는 위탁보호와 관련하여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Foster Care Ombudsman(위탁보호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여 위탁아동의 인권,

민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이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아동이 언제든지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음

- 오레곤 주 내에는 다양한 위탁 관련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교육, 옹호사업, 법률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리고 각 카운티별로도 위탁가정을 위한 서비스(교육훈련, 자조모임, 긴급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력구성은 case worker, Child-welfare program manager, Child Protect Services, Social Services Assistant, Child-welfare district manager, Community manager 등으로 구성함

- [위탁부모 선정과 교육] 미국의 위탁부모 선정은 매우 까다로우며, 교육은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우선 위탁부모의 선정 절차는 위탁부모의 개인적 자격을 확인하고, 가정환경 기준 여부, 가정 내 친자녀 수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위탁교육과 관련해서는 위탁부모는 선정과정과 재승인을 위해서 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 교육훈련은 무료이며, 원하는 지역에서 수료가 가능함. 위탁부모는 2년마다 30시간의 교육훈련을 받아야하며, 기초교육과 재승인 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음



〈그림 2-12〉 미국 Oregon 주의 위탁가정 선정과 교육

2) 영국

① 가정위탁 보호의 유형

- 영국은 아동복지법(1948년)이 제정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였으며, 시설보호 보다는 지역사회 내에 가정과 유사한 가정위탁보호가 아동의 발달에 바람직하다는 것에 기초함. 한편, 가정위탁보호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 위탁기간에 따라 일시 및 단기, 영구 위탁, 입양 전 위탁, 친인척 위탁, 장애위탁 등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임

- **Short-term Foster Care(단기위탁)**: 18세 이하의 아동을 가정으로 부터 분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탁처분이 결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짐(일시위탁과 의미가 비슷한 형태임)

- **Permanent Foster Care(영구위탁)**: 위탁보호를 받다가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입양도 어려운 경우 이루어지는 위탁유형임

- **Fostering for Adoption(입양 전 위탁)**: 위탁부모가 입양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가정위탁 방식임

- **Kingship Fostering(친인척위탁)**: 아동의 친인척의 가정에서 위탁되는 방식임

- **Babies and under Two(2세이하 위탁)**: 2세 이하의 아동은 친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입양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짐

- **Emergency Placement(긴급위탁)**: 수일 내의 긴급한 보호를 요하는 아동을 위탁하는 유형

- **Respite Placement(일시위탁)**: 친가정이 위탁가정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1~2주 정도 다른 가정에서 위탁하는 방식임

- **Remand Placement(소년범 가정위탁)**: 법원에 의해 공공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단기위탁하는 경우

- **Placements for Sanctuary Seeking Children & Young People(난민아동 위탁)**: 18세 미만으로 난민의 자격을 받은 아동을 위탁하며, 별도의 위탁부모교육을 받고 진행됨

- **Placements for Disabled Children(장애아 위탁)**: 신체장애, 학습장애, 청각장애, 기타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탁하는 경우

〈그림 2-13〉 영국의 가정위탁보호 유형

② 가정위탁 지원내용

- [경제적 지원] 영국에서는 위탁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 비용은 지역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됨. 지원금액은 아동의 나이가 높을수록 지원금이 높아짐. 그리고 위탁부모에게 사례금을 지원하는데 위탁부모의 능력, 위탁기간(경험), 양육기술 등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위탁부모에게 국민연금 크레딧을 제공하고, 세제혜택을 지원하

며, 이 부분 역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11세를 전후하여) 세제혜택 범위가 커지는 형태를 취함.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요되는 양육비용이 높음에 대한 반영이라 할 수 있음

③ 주요 운영기관 및 위탁부모의 선정과 교육

- [주요 운영기관] 영국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제로 카운티가 기본 행정 단위임. 지방정부, 민간영역, 자원봉사영역, 보건당국으로 구분되며, 이중 가정위탁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가 담당하고 있음. 한편, 가정위탁 전달체계에 있어서 민간위탁기관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위탁기관은 위탁부모를 선정 및 관리·유지하고, 위탁부모와 친부모 사이를 중재함. 즉, 가정위탁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위탁기관의 역할과 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Foster Care Associates(민간위탁협회)가 결성되어 있어서 정부와 위탁수당 협상을 하는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위탁부모 선정과 교육] 위탁가정이 되기 위한 사정절차는 매우 까다로움. 우선, 희망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정방문을 통해 1차적인 기본적 평가를 받게 되며 이후 본격적인 2차 심사가 진행됨. 2차 사정평가는 사회복지사에 의해 진행되는데 보통 6~8회 정도의 가정방문을 통해 위탁부모 및 가족구성원 모두에 대한 사정이 체계화된 검증 프로세스(범죄기록, 건강상태, 재정상태 등)에 따라 평가됨. 또한, 이 과정에서 위탁교육을 받아야 하며, 본 절차가 끝나면 가정위탁 사정 위원회에 결과보고서가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패널 전문가들이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함. 위탁교육과 관련해서는 위탁가정으로 승인되기 이전에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는데, 위탁가정으로 지정받은 후에도 위탁 교육과 훈련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며, 매년 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과정은 가정위탁지원, 아동보호, 애착에 대한 이해, 안전한 보호, 위탁 아동의 기록관리 등으로 위탁부모는 1년에 5회 이상 과정에 참여해야함

나. 국내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 사례

1) 경기 및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2015년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 예비일반가정위탁 교육을 이수하고 위탁아동 양육경험이 있는 위탁부모대상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장애아동 및 학대피해아동, 문제행동 아동 등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효율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함
- 전문가정위탁보호 지원 실시(2015년부터 경기도와 함께 신규 추진)
 - 부모동지드림(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전문가정위탁보호 사업)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이고 우수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 위탁부모를 지지하고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주요 지원내용으로 영유아 풀 패키지 지원, 초기정착금, 양육지원금 등 지급, 영유아 및 장애아동 위탁부모 기본과 보수교육, 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일시위탁이 진행·실시되고 있음
 - 경기북부 전문가정위탁보호사업 : 영유아기, 장애아동, 학대피해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위탁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가정위탁으로 일반위탁부모 및 예비위탁부모 대상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자가 실행할 수 있음

2) 부산 가정위탁지원센터(단기위탁제도 및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예정)

- 부산은 2019년부터 일시가정위탁제도와 더불어 2세 이하 영유아 또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요보호 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 예정임
- '일시가정위탁'이란 단기적 혹은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돌보는 단기위탁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 예정임
 - 보다 구체적으로 '일시가정위탁'이란 친부모의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을 때, 다른 가정에 15일 이내로 위탁해 양육하는 제도.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대 등으로 긴급 보

호 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일반가정에 위탁한 뒤 부산시가 보호비용과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 ‘전문가정위탁제도’는 만 2세 이하 영유아이나 심리·정서적 장애로 인해 보다 세밀하고 민감한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및 아동에 관한 전반적인 부모교육 과정을 이수한 전문위탁부모에게 가정위탁하는 제도. 부산시는 매달 전문위탁부모 양육수당과 심리치료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예정임

3) 기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활발히 추진하는 사업 모음

-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 일반가정위탁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센터. 2004년 일반가정위탁 자조모임을 시작으로 일반가정위탁 가정에 대한 보수교육 및 집단상담, 전문위탁가정 양성교육 등을 수행함
-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 2003년 개소 이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2011년부터는 SNS(트위터, 페이스북) 운영과 영어캠프 및 두근두근 별쓰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자립대상 아동에게 경제교육 여행, 제방 기능사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위탁아동 생일케이크 지원, 위탁아동 해외 탐방, 문화버스 사업, 푸드트럭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다. 시사점

- 미국(오레곤 주)은 전체적으로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가정위탁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됨. 특기할 만 한 점은 위탁부모의 선정과 관리가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위탁부모 희망 시, 추천서, 범죄경력, 나이, 경제수준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이후에도 정기적(2년마다)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집체교육을 비롯해 온라인 교육,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상당히 폭 넓게 적용하고 있음. 위탁아동과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유형의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상황에 맞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인 점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 하여 연령별 발달단계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임. 예를 들어, 5세이하, 6세~12세이하, 13세~20세로 연령을 구분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지원금이 높게 지원되고 있음. 또한, 장애나 아동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여 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는 점도 의미가 있음
- 다음으로 위탁보호에 관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행정처리 절차상의 민원이나, 위탁아동과 가정의 각종 욕구들을 취합하여 대응하고 하였음. 옴부즈만은 독립적인 성격의 기관으로 위탁아동 및 부모가 쉽게 언제 어느 때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두어 운영하고 있음. 물론 민원의 조사와 처리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 영국의 가정위탁의 특징은 위탁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위탁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임.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위탁가정의 선정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신에 이에 상응한 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그리고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원금이 높아지는 형태를 취함

로써 아동의 성장에 따른 욕구 증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가정 역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증가하는 위탁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였다는 점임

- 아동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증가하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국민연금 크레딧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혜택의 규모가 증가함
- 국내 가정위탁보호 관련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업현황들을 살펴보면, 위탁유형을 다양화시키려는 노력이 가장 크게 나타남. 경기와 부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문가정위탁과 단기위탁제도를 시행하거나 시행준비를 하고 있었음. 그 외 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친가정과의 연계 및 친가정 복귀를 증진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위탁아동 대상 자립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았었음. 또한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와 민·관 협력 강화로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 시키려는 모습들이 두드러짐

3

장

전북 요보호아동 및 가정위탁보호 현황

Jeonbuk Institute

제 1 절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제 2 절 가정위탁보호 현황

제 3 절 가정위탁보호 지원내용 및 지원센터 운영현황

제 4 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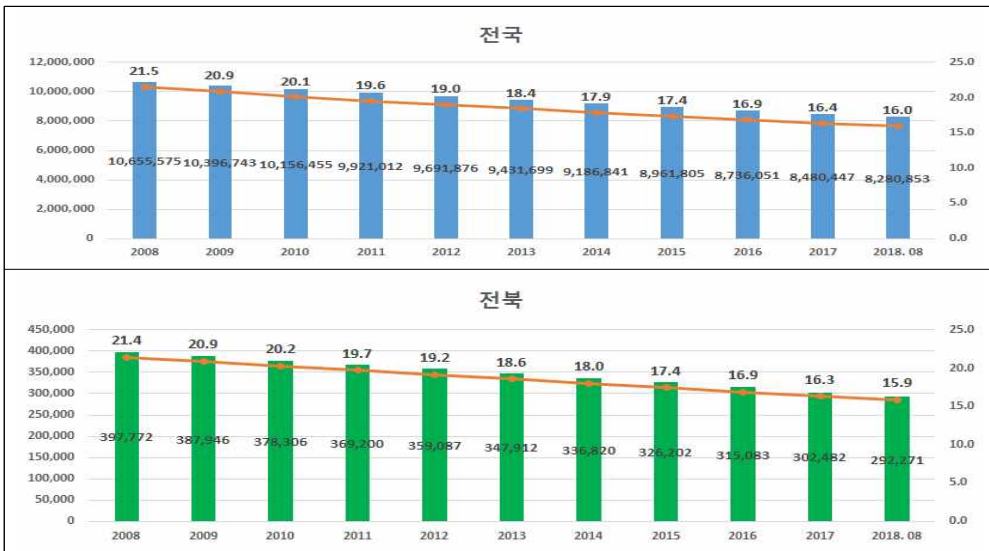
제3장 전북 요보호아동 및 가정위탁보호 현황

제 1 절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가. 요보호아동 발생현황

1) 전북 아동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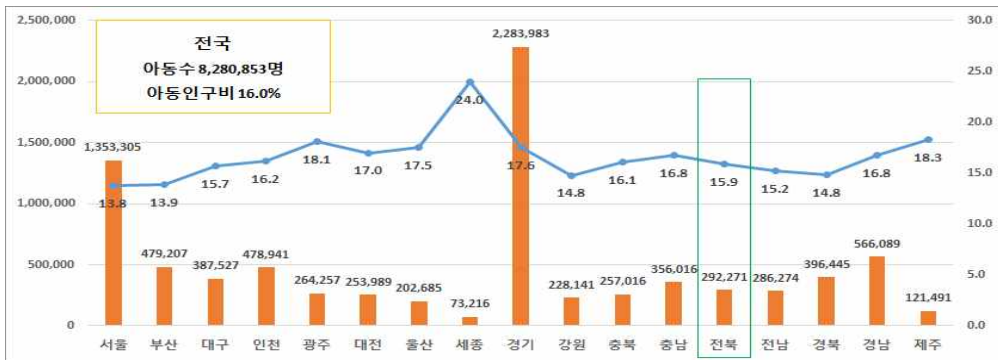
- 2008년~2018년까지의 전국 및 전북의 아동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음. 2008년 전국 아동인구는 10,655,575명으로 전체 인구의 21.5%였으나, 2018년 현재 8,280,853명으로 전체 인구의 16.0%로 10년 사이에 5.5%p가 감소함
- 전북의 경우 2008년 397,772명으로 전체의 21.4%를 차지하였으나, 2018년 현재 292,271명으로 전체 인구의 15.9%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아동인구 및 비율(2008~2018)

* 주: 아동인구(0~17세)/전체인구*1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년 8월 기준)」.

- 2018년 전국 시·도별 아동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283,9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353,305명), 경남(566,089명), 부산(479,207명) 등의 순으로 많았음
- 한편, 전체인구 대비 아동인구 비율로 살펴보면, 세종시가 24.0%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18.3%), 광주(18.1%), 경기(17.6%), 울산(17.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전북(15.9%)의 경우 하위 7번째로 나타남



〈그림 3-2〉 시도별 아동인구 및 비율(2018)

- 2018년 전북의 아동인구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주(116,714명)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익산(46,867명), 군산(46,709명), 정읍(15,695명), 완주(15,551명) 등의 순으로 많았음. 한편, 전체인구 대비 아동인구 비율로 살펴보면, 전주가 1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군산(17.1%), 완주(16.4%), 익산(15.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3〉 전북 시·군별 아동인구 및 비율(2018)

2) 전북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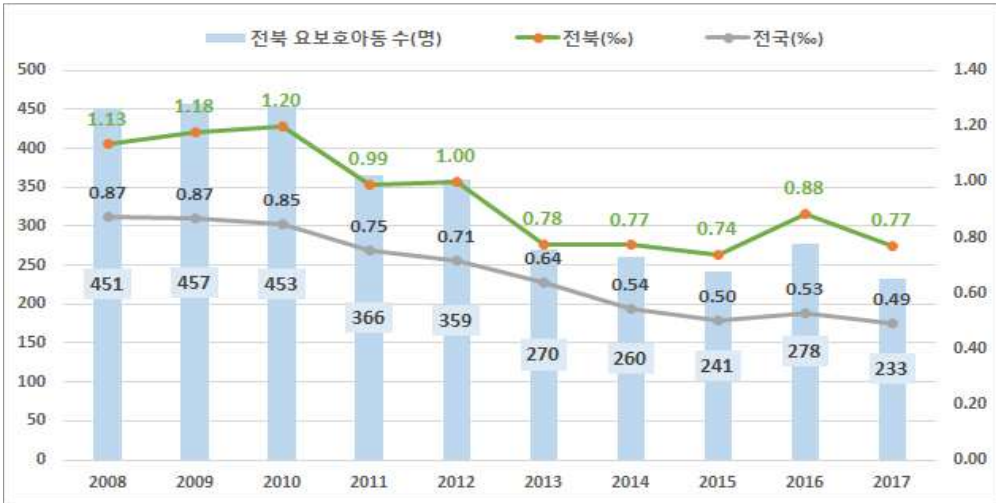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및 전북의 요보호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2008년 9,284명에서 2017년 기준 4,121명의 아동이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2008년 451명에서 2015년 24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6년 278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가 2017년 233명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요보호아동 수(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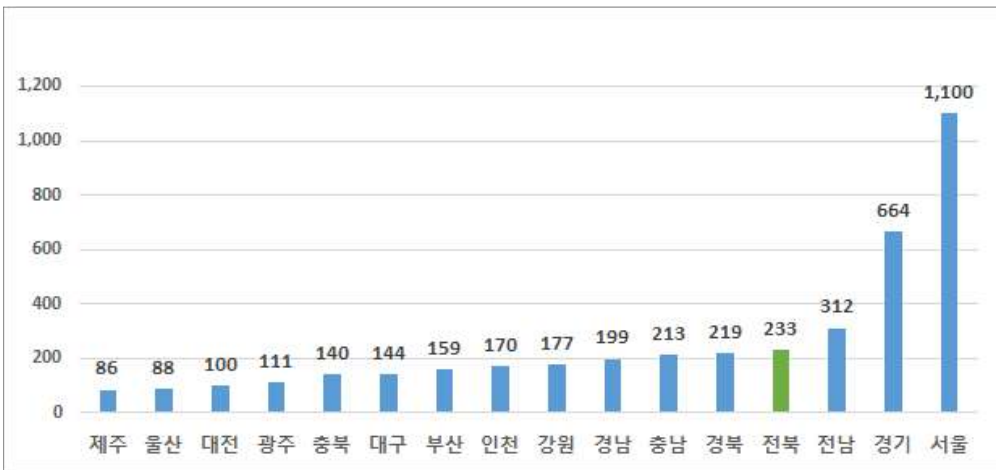
- 아동인구 천 명당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국의 경우, 8,480,447명의 아동 중 요보호아동은 4,121명으로 아동인구 1,000명 당 0.49%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302,482명의 아동 중 요보호아동은 233명으로 아동인구 1,000명 당 0.77%로 나타남. 이는 전년(0.88%)보다 0.11%p 감소하였으나, 전국평균 보다 0.28%p 높았음

* 자료: 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8), 「2017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그림 3-5〉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전체아동인구 대비 요보호아동 비율(2008~2017)

- 2017년 전국 시·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121명 중 서울이 1,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664명), 전남(312명), 전북(233명), 경북(219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6〉 전국 시·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2017)

3) 전북 요보호아동 발생 원인별 현황*

- 연도별 전국 요보호아동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2008년에 4번째로 높았던 아동학대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7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34.9%).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사유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꾸준히 상위권에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8.3%)

〈표 3-1〉 전국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사유(2008~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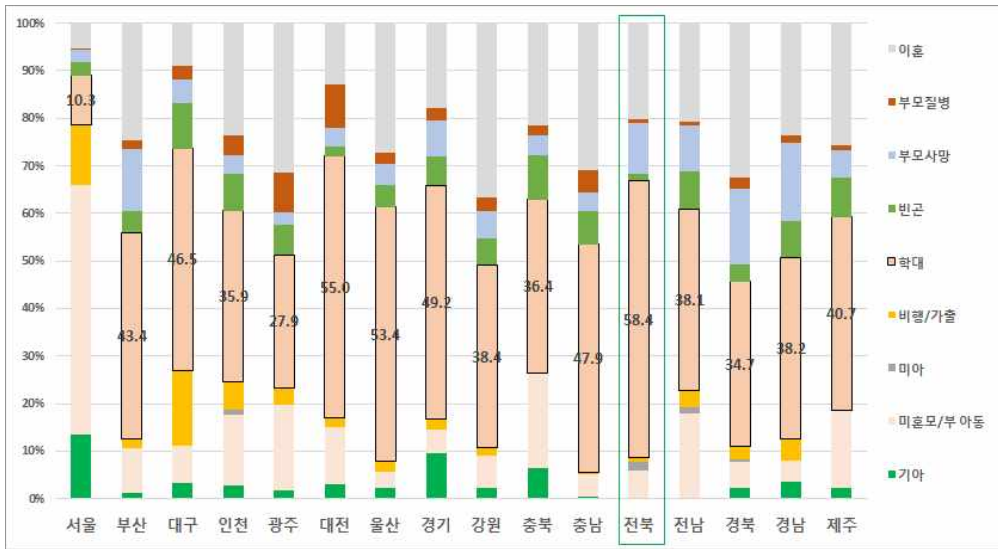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계	기아	미혼 모부 아동	미아	비행· 가출· 부랑아	부모의 빈곤·사망·학대 등					
						계	학대	빈곤	사망	질병	이혼
2017	4,121 100.0	261 6.3	850 20.6	12 0.3	229 5.6	2,769 67.2	1,437 34.9	216 5.2	276 6.7	86 2.1	754 18.3
2016	4,592 100.0	264 5.7	856 18.7	10 0.2	314 6.8	3,148 68.6	1,540 33.6	290 6.3	286 6.2	126 2.8	906 19.7
2015	4,503 100.0	321 7.1	930 20.7	26 0.6	360 8.0	2,866 63.6	1,094 24.3	279 6.2	301 6.7	122 2.7	1,070 23.7
2014	4,994 100.0	282 5.6	1,226 24.5	13 0.3	508 10.2	2,965 59.4	1,105 22.1	308 6.2	450 9.0	65 1.3	1,037 20.8
2013	6,020 100.0	285 4.7	1,534 25.5	21 0.4	512 8.5	3,668 60.9	1,117 18.6	338 5.6	545 9.0	133 2.2	1,535 25.5
2012	6,926 100.0	235 3.4	1,989 28.7	50 0.7	708 10.2	3,944 57.0	1,122 16.2	448 6.5	533 7.7	166 2.4	1,675 24.2
2011	7,483 100.0	218 2.9	2,515 33.6	81 1.1	741 9.9	3,928 52.5	1,125 15.0	418 5.6	536 7.2	154 2.1	1,695 22.6
2010	8,590 100.0	191 2.2	2,804 32.6	210 2.5	772 9.0	4,613 53.7	1,037 12.1	586 6.8	772 9.0	203 2.4	2,015 23.4
2009	9,028 100.0	222 2.5	3,070 34.0	35 0.4	707 7.8	4,994 55.3	1,051 11.6	710 7.9	763 8.5	230 2.5	2,240 24.8
2008	9,284 100.0	202 2.2	2,349 25.3	151 1.6	706 7.6	5,876 63.3	891 9.6	1,036 11.2	732 7.9	274 2.9	2,943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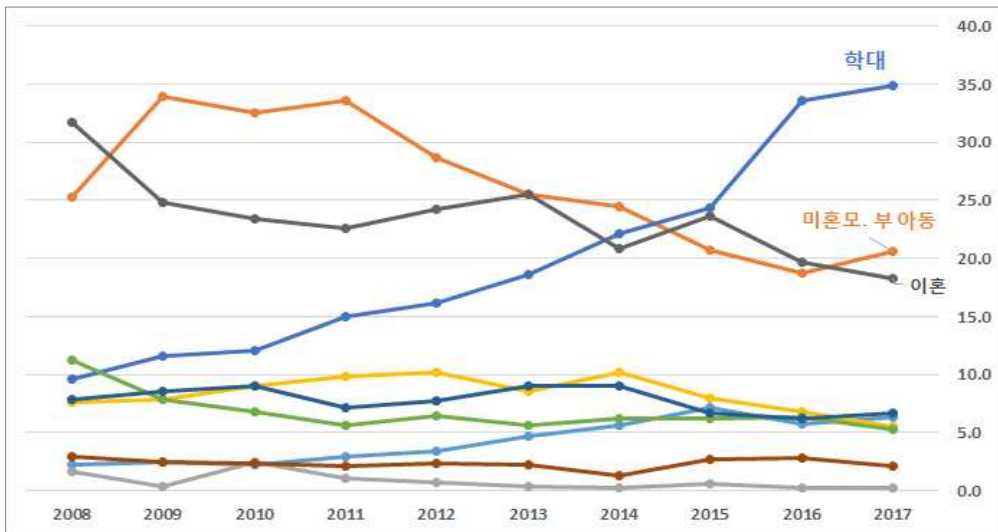
- 2017년을 기준으로 요보호아동 발생 사유를 전국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미혼모·부의 아동, 52.5%)과 광주(이혼, 31.5%)를 제외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부모학대'로 인한 사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자료: 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8), 「2017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 전북의 경우, 학대로 인한 사유가 5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혼 (20.2%), 부모사망(10.7%), 미혼모·부(6.0%) 아동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학대로 인한 사례는 세종시(총 사례수가 6건 뿐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7〉 전국 시·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사유(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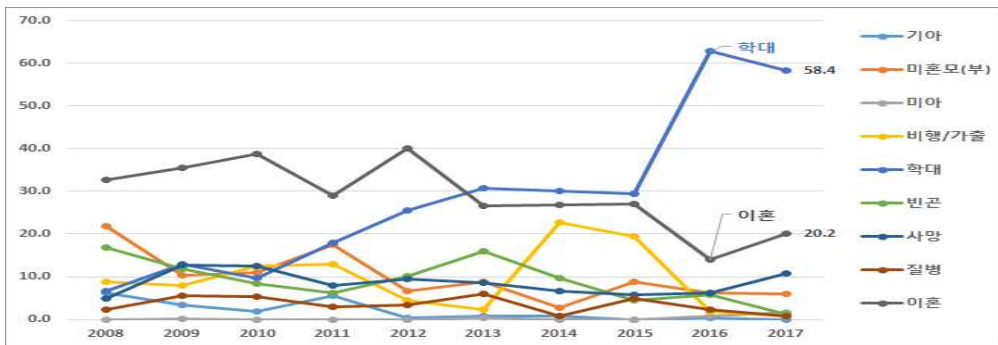
〈그림 3-8〉 전국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사유(2008~2017)

○ 전북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모의 ‘이혼’에 의한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3년부터는 ‘학대’로 인한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 현재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2016~2017년에는 요보호아동 절반 이상이 학대로 인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표 3-2〉 전북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사유(2008~2017)

(단위: 명, %)

구분	계	기아	미혼 모부 아동	미아	비행 가출 부랑아	부모의 빈곤·사망·학대 등					
						계	학대	빈곤	사망	질병	이혼
2017	233 100.0	0 0.0	14 6.0	4 1.7	2 0.9	213 91.4	136 58.4	3 1.3	25 10.7	2 0.9	47 20.2
2016	278 100.0	1 0.4	17 6.1	2 0.7	5 1.8	253 91.0	175 62.9	16 5.8	17 6.1	6 2.2	39 14.0
2015	241 100.0	0 0.0	21 8.7	0 0.0	47 19.5	173 71.9	71 29.5	11 4.6	14 5.8	12 5.0	65 27.0
2014	260 100.0	2 0.8	7 2.7	0 0.0	59 22.7	192 73.8	78 30.0	25 9.6	17 6.5	2 0.8	70 26.9
2013	270 100.0	2 0.7	24 8.9	1 0.4	6 2.2	237 87.7	83 30.7	43 15.9	23 8.5	16 5.9	72 26.7
2012	359 100.0	1 0.3	24 6.7	0 0.0	16 4.5	318 88.5	92 25.6	36 10.0	34 9.5	12 3.3	144 40.1
2011	366 100.0	20 5.5	64 17.5	0 0.0	47 12.8	235 64.2	66 18.0	23 6.3	29 7.9	11 3.0	106 29.0
2010	453 100.0	8 1.8	50 11.0	0 0.0	56 12.4	339 74.8	44 9.7	38 8.4	57 12.6	24 5.3	176 38.8
2009	457 100.0	15 3.3	47 10.3	1 0.2	36 7.9	358 78.3	59 12.9	54 11.8	58 12.7	25 5.5	162 35.4
2008	451 100.0	28 6.2	98 21.7	0 0.0	40 8.9	285 63.3	30 6.7	76 16.9	22 4.9	10 2.2	147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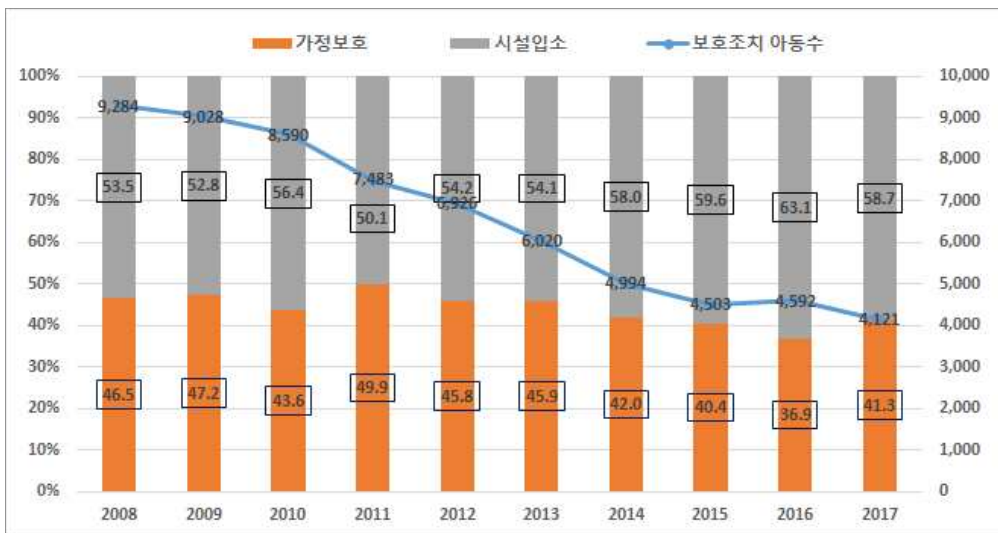


〈그림 3-9〉 전북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사유(2008~2017)

나.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현황*

1) 전국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현황

- 전국 요보호아동 연도별 보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4,846명 발생하였고, 그 중 725명(15.0%)은 ‘귀가 및 연고자 인도’되었으며, 4,121명(85.0%)에게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졌음. 귀가 및 연고자 인도 비율은 2008년 20.5%에서 2011년(11.3%)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부터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7년 15.0%로 나타남
- 2008~2017년 요보호아동 대상 보호조치 결과를 시설입소와 가정보호 비율로 살펴보면, 시설입소 비율이 매년 높게 나타나며, 특히 2016년의 시설보호 비율은 63.1%로 가장 높았음
 - 가정보호 비율은 2011년 49.9%로 가장 높은 해로 나타났으며,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2016년 36.9%로 가장 저조하였음. 2017년 현재 요보호아동의 41.3%가 가정보호 조치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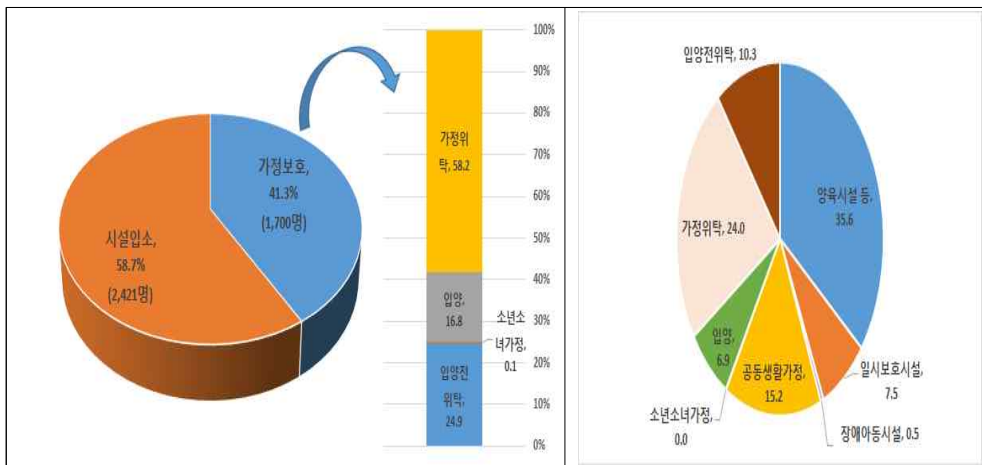
주: 가정보호(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입양, 입양 전 위탁), 시설입소(양육시설 등,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림 3-10> 전국 연도별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결과(2008~2017)

* 자료: 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8), 「2017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표 3-3〉 전국 연도별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현황(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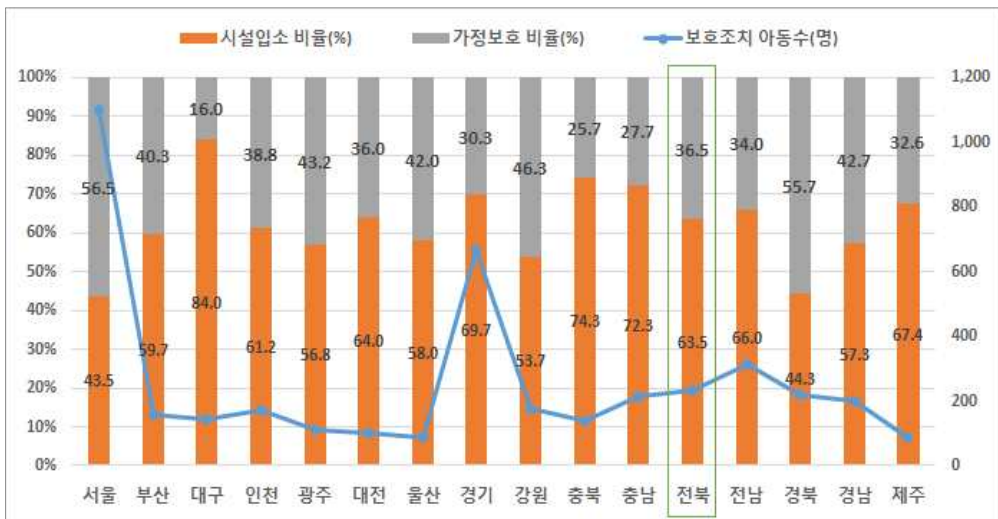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총 발생아동 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계	조치내용							
				가정보호				시설입소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입양	입양전 위탁	양육시설 등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2017	4,846	725	4,121 100.0	990 24.0	2 0.0	285 6.9	423 10.3	1,467 35.6	310 7.5	19 0.5	625 15.2
2016	5,226	634	4,592 100.0	1,024 22.3	6 0.1	243 5.3	425 9.2	1,736 37.8	541 11.8	12 0.3	605 13.2
2015	4,975	472	4,503 100.0	1,206 26.8	0 0.0	239 5.3	376 8.3	1,412 31.4	799 17.7	13 0.3	458 10.2
2014	6,014	1,020	4,994 100.0	1,300 26.0	13 0.3	393 7.9	388 7.8	1,818 36.4	566 11.3	10 0.2	506 10.1
2013	6,834	814	6,020 100.0	1,749 29.1	20 0.3	478 7.9	516 8.6	1,731 28.8	801 13.3	39 0.6	686 11.4
2012	8,003	1,077	6,926 100.0	2,289 33.0	117 1.7	772 11.1	0 0.0	2,272 32.8	676 9.8	25 0.4	775 11.2
2011	8,436	953	7,483 100.0	2,350 31.4	128 1.7	1,253 16.8	0 0.0	2,246 30.0	862 11.5	32 0.4	612 8.2
2010	9,960	1,370	8,590 100.0	2,124 24.7	231 2.7	1,393 16.2	0 0.0	2,445 28.4	1,751 20.4	23 0.3	623 7.3
2009	10,500	1,472	9,028 100.0	2,734 30.3	213 2.4	1,314 14.5	0 0.0	2,406 26.6	1,640 18.2	35 0.4	686 7.6
2008	11,672	2,388	9,284 100.0	2,838 30.6	178 1.9	1,304 14.0	0 0.0	2,997 32.3	1,261 13.6	39 0.4	667 7.2



〈그림 3-11〉 전국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내용(2017)

- 2017년 전국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시설 35.6%로 가장 높았고, 가정위탁(24.0%), 공동생활가정(15.2%), 입양전 위탁(10.3%), 일시보호시설(7.5%), 입양(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전국 시·도별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입소 비율은 대구 8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북(74.3%), 충남(7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총 사례수가 6건인 세종 제외). 전북은 63.5%였음



〈그림 3-12〉 시도별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결과(2017)

2) 전북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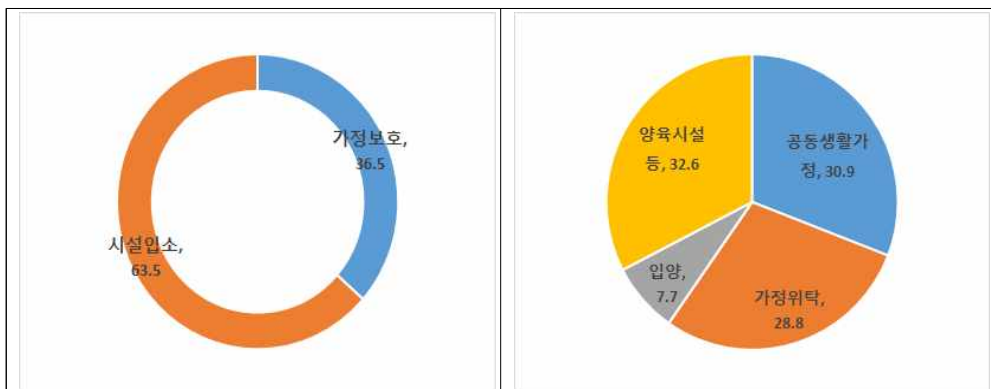
- 먼저, 전북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287명 발생하였고, 그 중 54명(18.8%)은 ‘귀가 및 연고자 인도’되었으며, 233명(81.2%)은 보호조치가 이루어졌음
-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내용은 2011년을 제외한 2008~2013년까지는 가정위탁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4년부터는 양육시설 조치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한편, 2017년 기준 가정위탁비율은 28.8%로 2016년 보다

10.5%p 상승한 반면, 2008년 보다는 7.6%p 감소하였고, 양육시설 보호와 공동생활가정보호는 각각 32.6%, 3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보호보다는 시설보호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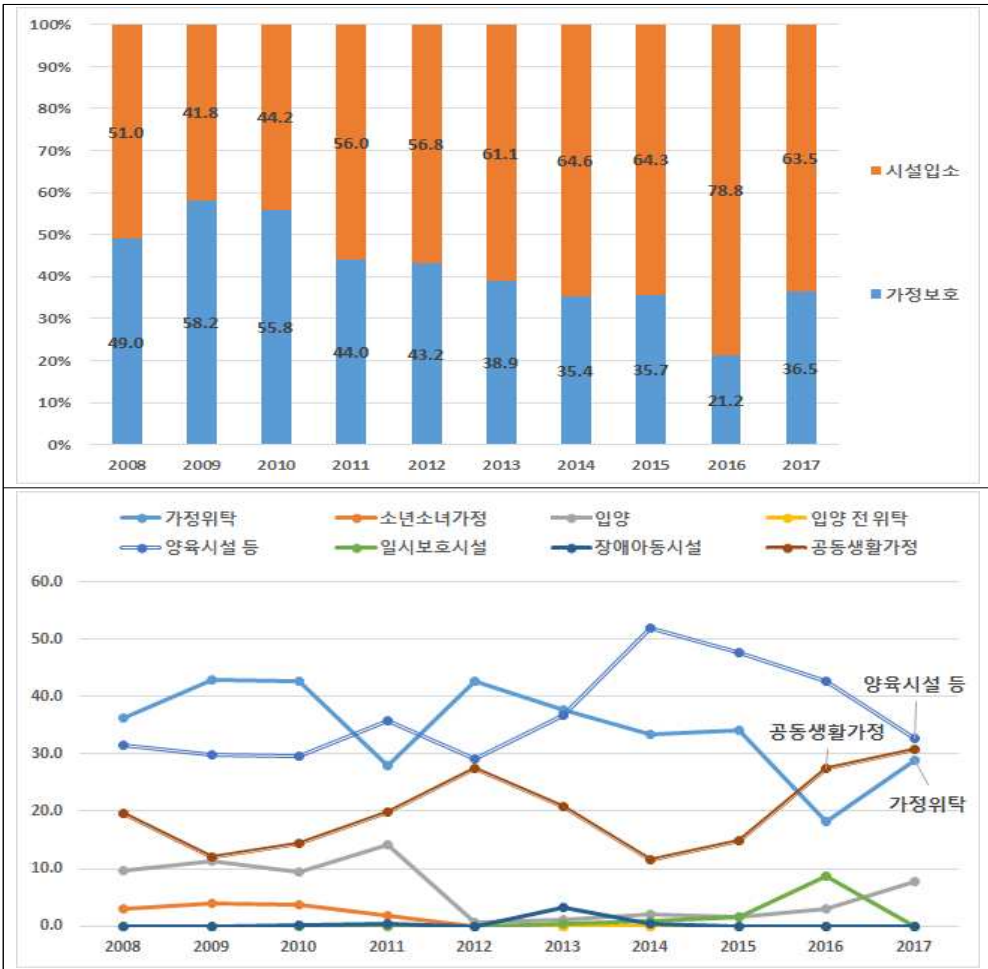
〈표 3-4〉 전북 연도별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현황(2008~2017)

(단위: 명, %)

구분	총 발생 아동 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계	조치내용							
				가정보호				시설입소			
				가정 위탁	소년소녀가정	입양	입양 전 위탁	양육시설 등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2017	287	54	233 100.0	67 28.8	0 0.0	18 7.7	0 0.0	76 32.6	0 0.0	0 0.0	72 30.9
2016	311	33	278 100.0	51 18.3	0 0.0	8 2.9	0 0.0	119 42.8	24 8.6	0 0.0	76 27.4
2015	252	11	241 100.0	82 34.0	0 0.0	4 1.7	0 0.0	115 47.7	4 1.7	0 0.0	36 14.9
2014	292	32	260 100.0	87 33.5	0 0.0	5 1.9	0 0.0	135 51.9	2 0.8	1 0.4	30 11.5
2013	304	34	270 100.0	102 37.8	0 0.0	3 1.1	0 0.0	99 36.7	1 0.4	9 3.3	56 20.7
2012	375	16	359 100.0	153 42.6	0 0.0	2 0.6	0 0.0	105 29.2	0 0.0	0 0.0	99 27.6
2011	413	47	366 100.0	102 27.9	7 1.9	52 14.2	0 0.0	131 35.8	0 0.0	1 0.3	73 19.9
2010	496	43	453 100.0	193 42.6	17 3.8	43 9.5	0 0.0	134 29.6	0 0.0	1 0.2	65 14.3
2009	465	8	457 100.0	196 42.9	18 3.9	52 11.4	0 0.0	136 29.8	0 0.0	0 0.0	55 12.0
2008	460	9	451 100.0	164 36.4	14 3.1	43 9.5	0 0.0	142 31.5	0 0.0	0 0.0	88 19.5



〈그림 3-13〉 전북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내용(2017)



〈그림 3-14〉 전북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결과 및 내용(2008~2017)

- 전북의 아동양육시설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내 14개소가 있으며, 총 정원 777명 중 현원 616명으로 정원 충원율 79.3%임. 이는 전국평균 정원 충원율(73.5%, 정원 15,866명 중 현원 11,665명) 보다 5.8% 정도 높기는 하나 전북지역 아동복지시설의 부족함은 없음을 나타냄
- 14개의 아동양육시설은 지역별로 전주 3개, 군산 4개, 익산 3개, 정읍 1개, 완주 1개, 고창 2개가 설치되어 있음. 정원 충원율은 익산 86.7%로 가장 높았고, 완주 70.9%로 가장 낮았음

〈표 3-5〉 전국 시도별 아동양육시설 현황

구분	시설	정원	현원	구분	시설	정원	현원
계	242	15,866	11,665	경 기	25	1,418	1,116
서 울	36	2,857	2,330	강 원	8	444	300
부 산	19	1,485	1,078	충 북	11	731	502
대 구	18	973	643	충 남	13	781	617
인 천	9	629	500	전 북	14	777	616
광 주	10	651	504	전 남	21	1,575	1,074
대 전	12	612	386	경 북	15	1,121	714
울 산	1	150	127	경 남	24	1,326	859
세 종	1	48	27	제 주	5	288	272

자료 : 보건복지부, 2018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17. 12. 31기준)

〈표 3-6〉 전북의 아동양육시설 현황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고창
시설 수	3	4	3	1	1	2
종사자 수	62	79	61	25	17	33
정원(현원)	164(134)	204(158)	158(137)	80(60)	55(39)	116(88)
충족률	81.7%	77.5%	86.7%	75.0%	70.9%	75.9%

자료 : 보건복지부, 2018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17. 12. 31기준)

- 14개의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현황을 살펴보면, 0~3세 미만 34명, 3~6세 미만 106명으로 미취학 요보호아동은 140명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함. 그 외 초등학생 174명, 중학생 133명, 고등학생 148명으로 나타남
- 한편, 0~3세 미만 아동은 아동양육시설보다도 가정위탁보호가 우선시 됨에도 불구하고 아동양육시설 전체 아동 중 5.5%인 0~3세 미만 아동이 여전히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 전북의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현황

시설 수	종사자 수	정원	수용인원			아동현황							
			계	남	여	계	미취학		초등재	중재	고재	대재	기타
							0~3 미만	3~6 미만					
14	277	777	616	340	276	616	34	106	174	133	148	20	1

자료 : 보건복지부, 2018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17. 12. 31기준)

-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로 크게 시설보호와 공동생활가정보호 및 가정위탁보호로 분류되며, 공동생활가정보호는 양육시설보호와 가정위탁보호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가정과 동일한 공간에서 약 7명 이하의 요보호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임. 공동생활가정은 아동을 동일하게 집단 내에서 보호하는 시설보호가 아닌 가정이라는 거주공간에서 7명 이내의 아동을 보호하다보니 집단시설에서 보이는 시설병을 방지할 수 있고, 겉으로 쉽게 드러나 보이는 낙인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무엇보다 종사자들로부터 보다 많은 관심과 보호 및 거리적 안정감 등을 받을 수 있음
- 전북 도내 공동생활가정은 총 45개소로 경기(138개소), 서울(62개소)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8〉 전국 시도별 공동생활가정 현황

구분	시설수	종사자 수	정 원	현원	정원 충원율	0~3미만	3~6미만	초등재	중재	고재	대재	기타
계	533	1,569	3,671	2,811	76.6	70	315	947	661	642	127	49
서울	62	178	427	302	70.7	13	34	93	65	75	13	9
부산	34	104	237	176	74.3	1	18	62	38	43	10	4
대구	15	48	99	75	75.8	1	8	24	20	15	6	1
인천	17	50	119	93	78.2	2	8	40	16	17	8	2
광주	31	94	216	167	77.3	3	37	60	37	23	5	2
대전	18	58	124	103	83.1	3	12	33	22	22	8	3
울산	10	27	66	51	77.3	0	4	22	14	10	1	0
세종	2	5	14	2	14.3	0	0	0	1	1	0	0
경기	138	403	948	766	80.8	18	73	263	188	195	18	11
강원	23	72	158	118	74.7	1	14	38	29	26	6	4
충북	29	89	201	158	78.6	7	9	50	39	46	7	0
충남	26	76	182	134	73.6	5	16	42	35	24	10	2
전북	45	127	307	239	77.9	3	20	95	56	51	9	5
전남	37	106	258	190	73.6	3	24	58	44	45	14	2
경북	13	43	88	66	75.0	4	9	21	17	12	3	0
경남	28	77	194	141	72.7	6	22	37	36	31	6	3
제주	5	12	33	30	90.9	0	7	9	4	6	3	1

자료 : 보건복지부, 2018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2017. 12. 31기준)

- 전북의 공동생활가정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12월 31일 기준 전북 도내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는 총 45개소(2개소 미지원)가 있으며, 정원 307명 중 현원 239명을 보호하며, 정원 충원율 77.9%로 나타남
- 전북 도내 공동생활가정의 아동현황을 살펴보면 0~3세 미만은 3명, 3~6세 미만은 20명, 초등학생 95명, 중학생 56명, 고등학생 51명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표 3-9〉 전북의 공동생활가정의 내 아동현황

구분			성별		아 동 현 황						
시설수	종사자 수	정원 (현원)	남	여	미 취 학		초등재	중재	고재	대재	기타
					0~3미만	3~6미만					
					45	127	307 (239)	115	124	3	20

자료 : 보건복지부, 2018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2017. 12. 31기준)

- 전북 도내 45개의 공동생활가정은 지역별로 전주 18개, 군산 9개, 익산 3개, 김제 1개, 완주 4개, 진안 3개, 임실 3개, 순창 1개 및 미상 3개가 설치되어 있음. 정원 충원율은 순창이 가장 높았고, 완주가 67.8%로 가장 낮았음

〈표 3-10〉 전북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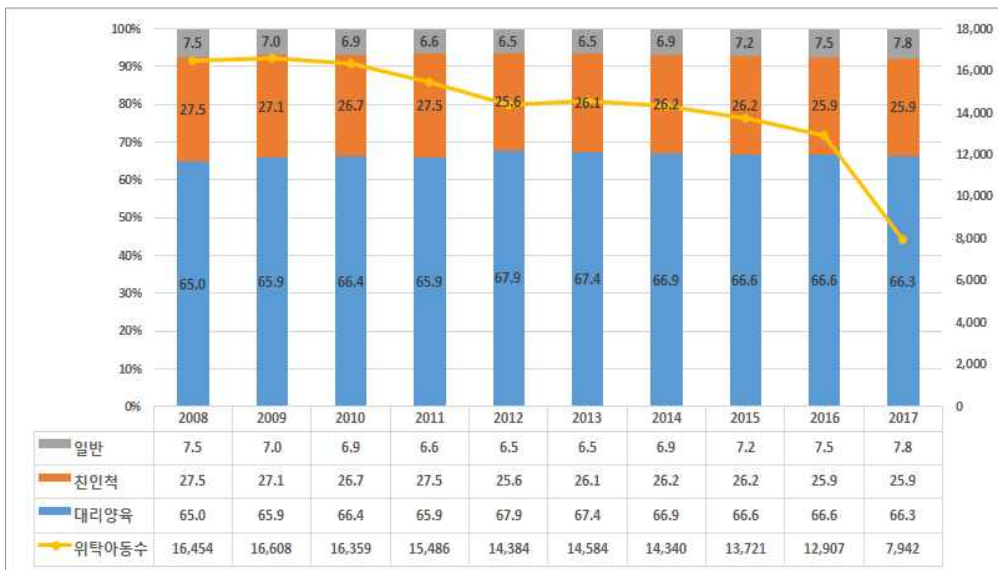
구분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임실	순창	미상
시설 수	18	9	3	1	4	3	3	1	3
종사자 수	46	18	8	3	12	8	8	3	12
정원 (현원)	120 (94)	63 (47)	21 (19)	7 (5)	28 (19)	19 (15)	21 (15)	7 (7)	21 (18)
충족률	78.3%	74.6%	90.5%	71.4%	67.8%	78.9%	71.4%	100%	85.7%

자료 : 보건복지부, 2018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17. 12. 31기준)

제 2 절 가정위탁보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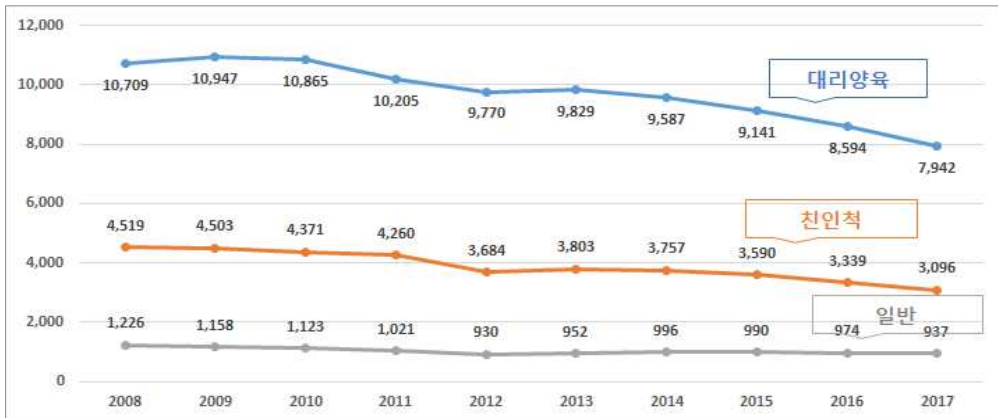
가. 가정위탁보호 아동관련 현황

- 전국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는 2008년 16,454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7년 11,975명으로 나타남. 유형별 위탁아동 수를 살펴보면, 대리양육은 2008년 10,709명에서 2017년 7,942명으로, 친인척양육은 2008년 4,519명에서 2017년 3,096명, 일반가정양육은 2008년 1,226명에서 2017년 937명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임. 유형별 위탁아동의 비율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대리양육 65%이상, 친인척 25%이상, 일반 가정 7.0% 이상)을 보이고 있음
- 2017년 기준 전체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일반가정위탁 아동비율은 7.8%로 가장 낮은 반면, 대리양육 아동비율은 66.3%, 친인척가정위탁 아동비율은 25.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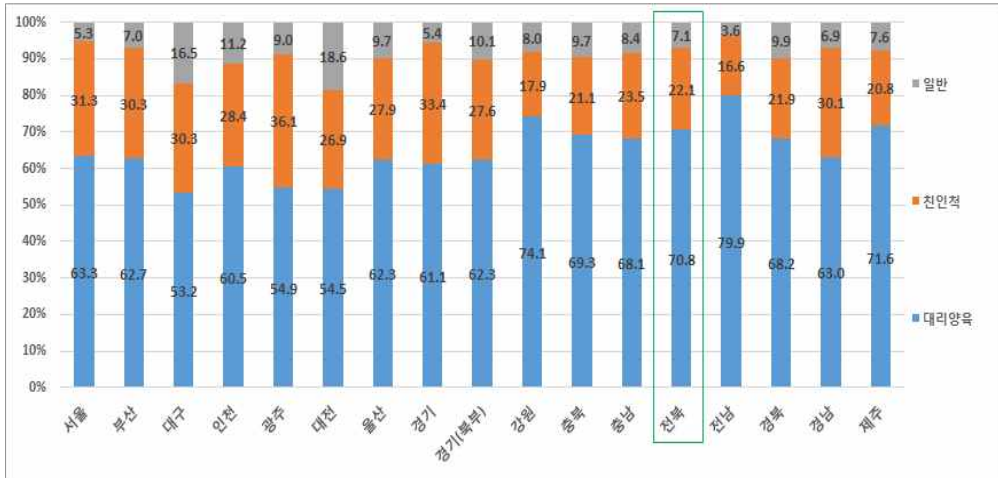
〈그림 3-15〉 전국 연도별 가정위탁별 아동 수 현황(2008~2017)

* 자료: 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8), 「2017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그림 3-16〉 전국 위탁유형별 아동 수(2008~2017)

- 전국 가정위탁보호의 아동현황(2017년 기준)을 살펴보면, 전국의 가정위탁 보호 아동 총 11,975명 중 경기 1,415명(11.8%), 전남 1,177명(9.8%), 강원 1,109명(9.3%) 순으로 나타남
- 유형별 가정위탁보호 아동현황을 전국 시도별로 비교하면, '대리양육'은 전국 총 7,942명 중 전남 940명(11.3%), 경기 865명(10.9%), 서울 675명(8.5%) 순으로 나타남. '친인척양육'은 전국 3,096명 중 경기 473명(15.3%), 서울 334명(10.8%), 경남 287명(9.3%) 순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일반가정위탁'은 전국 937명 중 경북 93명(9.9%), 강원 89명(9.5%), 경기 77명(8.2%)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전국 시·도별에 따른 유형별 가정위탁보호 아동비율을 살펴보면, '일반가정위탁' 비율은 대전이 1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대구 16.5%, 인천 11.2% 등의 순으로 높았음. '대리양육' 비율은 전남(79.9%), 강원(74.1%), 제주(71.6%), 전북(70.8%) 등의 순으로 높았고, '친인척' 비율의 경우 광주(36.1%), 경기(33.4%), 서울(31.3%), 부산/대구(30.3%) 등의 순이었음
- 전북의 경우 전국 시도와 비교해서, 대리양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친인척 양육 및 일반양육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7〉 전국 시·도별 위탁아동의 위탁유형별 비율(2017)

〈표 3-11〉 전국 시·도별 위탁유형별 아동 수 및 비율 현황(2017)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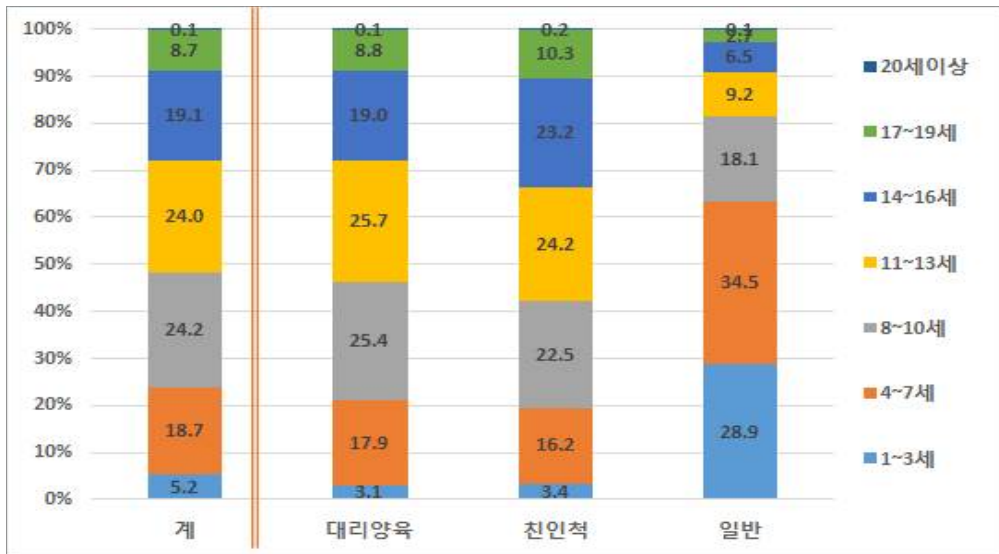
구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소계	
계	7,942	66.3	3,096	25.9	937	7.8	11,975	100.0
서울	675	63.3	334	31.3	57	5.3	1,066	100.0
부산	410	62.7	198	30.3	46	7.0	664	100.0
대구	151	53.2	86	30.3	47	16.5	284	100.0
인천	352	60.5	165	28.4	65	11.2	583	100.0
광주	190	54.9	31	36.1	31	9.0	346	100.0
대전	132	54.5	65	26.9	45	18.6	242	100.0
울산	154	62.3	69	27.9	24	9.7	247	100.0
경기	865	61.1	473	33.4	77	5.4	1,415	100.0
경기(북부)	465	62.3	206	27.6	75	10.1	746	100.0
강원	822	74.1	198	17.9	89	8.0	1,109	100.0
충북	365	69.3	111	21.1	51	9.7	527	100.0
충남	431	68.1	149	23.5	53	8.4	633	100.0
전북	560	70.8	175	22.1	56	7.1	791	100.0
전남	940	79.9	195	16.6	42	3.6	1,177	100.0
경북	639	68.2	205	21.9	93	9.9	937	100.0
경남	602	63.0	287	30.1	66	6.9	955	100.0
제주	189	71.6	55	20.8	20	7.6	264	100.0

- 2017년 기준 가정위탁 아동연령은 8~10세가 24.2%로 가장 많고, 11~13세(24.0%), 14~16세(19.1%), 4~7세(18.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위탁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리양육’의 경우 8세~13세(51.1%) 아동의 비율이 높고, ‘친인척’의 경우 11세~16세(47.4%), ‘일반’은 1세~7세(63.4%) 아동의 위탁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아동은 연령분포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지만, ‘일반’ 위탁아동의 경우 1세~7세(취학 전)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냄

〈표 3-12〉 전국 위탁가정유형별 위탁아동의 연령(2017)

(단위: 명, %)

구분	계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이상
계	11,975 100.0	619 5.2	2,243 18.7	2,891 24.2	2,877 24.0	2,291 19.1	1,040 8.7	14 0.1
대리양육	7,942 100.0	244 3.1	1,419 17.9	2,023 25.4	2,041 25.7	1,512 19.0	697 8.8	6 0.1
친인척	3,096 100.0	104 3.4	501 16.2	698 22.5	750 24.2	718 23.2	318 10.3	7 0.2
일반	937 100.0	271 28.9	323 34.5	170 18.1	86 9.2	61 6.5	25 2.7	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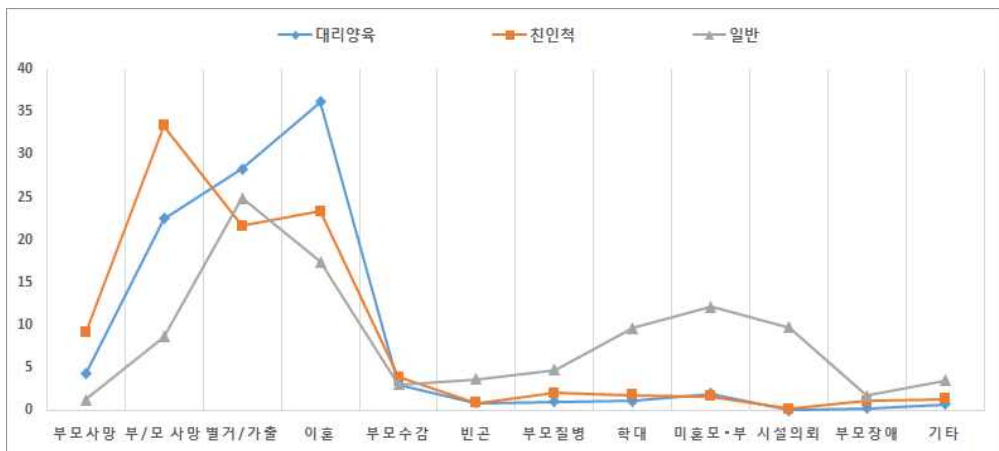
〈그림 3-18〉 전국 위탁가정유형별 위탁아동의 연령 분포(2017)

- 전국 가정위탁보호의 사유를 살펴보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위탁아동이 31.4%(3,759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모의 별거/가출 26.3%(2,904명), 부 또는 모의 사망 24.2%(2,904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가정위탁 유형별 위탁아동의 사유를 살펴보면, ‘일반위탁’ 아동은 부모의 별거/가출이 24.9%(233명)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대리양육’ 위탁아동의 경우 부모이혼이 36.2%(2,847명), ‘친인척’ 위탁아동은 부(모)의 사망 33.4%(1,034명)로 높게 나타남

〈표 3-13〉 전국 가정위탁유형별 아동의 위탁사유(2017)

(단위: 명, %)

구분	계	부모 사망	부/모 사망	별거/가출	이혼	부모수감	빈곤	부모질병	학대	미혼모부	시설의뢰	부모장애	기타
계	11,975	634	2,904	3,147	3,759	385	123	185	236	311	94	68	129
	100.0	5.3	24.2	26.3	31.4	3.2	1.0	1.5	2.0	2.6	0.8	0.6	1.1
대리양육	7,942	340	1,789	2,247	2,847	235	66	78	90	150	1	17	55
	100.0	4.3	22.5	28.3	36.2	3.0	0.8	1.0	1.1	1.9	0	0.2	0.7
친인척	3,096	283	1,034	667	722	122	23	63	56	48	2	35	41
	100.0	9.1	33.4	21.6	23.3	3.9	0.8	2.0	1.8	1.6	0.1	1.1	1.3
일반	937	11	81	233	163	28	34	44	90	113	91	16	33
	100.0	1.2	8.6	24.9	17.4	3.0	3.6	4.7	9.6	12.1	9.7	1.7	3.5



〈그림 3-19〉 전국 가정위탁유형별 위탁아동 보호사유(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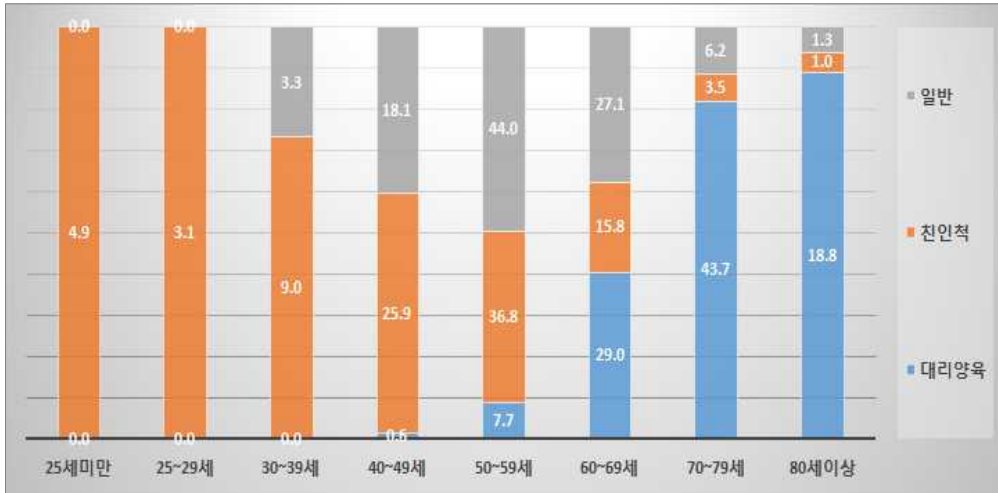
나. 가정위탁 가구 관련 현황

- 전국 유형별 가정위탁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70~79세가 2,864명(29.9%)으로 가장 많았고, 60~69세 2,418명(25.3%), 50~59세 1,766명(18.5%), 80세 이상 1,207명(12.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위탁부모의 67.8%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남
- [위탁부모 연령]을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리양육’ 위탁부모는 70~79세가 2,725명(43.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0~69세 1,800명(29.0%), 80세 이상 1,170명(1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친인척’ 위탁부모의 연령은 50~59세가 953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40~49세 672명(25.9%), 60~69세 410명(15.8%) 등의 순으로 많았음. ‘일반’ 위탁부모는 50~59세가 338명(44.0%)으로 가장 많았고, 60~69세 208명(27.1%), 40~49세 139명(18.1%) 순으로 많았음
- 위탁가정 유형별로 ‘대리양육’ 위탁부모는 주로 60~79세(72.7%), ‘친인척’ 위탁부모는 40~59세(62.7%), ‘일반’ 위탁부모는 50~69세(71.1%)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 정리하면, 위탁부모의 연령대는 「친인척 < 일반 < 대리양육」 유형 순으로 부모의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3-14〉 전국 위탁가정 유형별 위탁부모의 연령(2017)

(단위: 명, %)

구분	계	25세 미만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계	9,570	126	80	258	851	1,766	2,418	2,864	1,207
	100.0	1.3	0.8	2.7	8.9	18.5	25.3	29.9	12.6
대리양육	6,211	0	0	1	40	475	1,800	2,725	1,170
	100.0	0.0	0.0	0.0	0.6	7.7	29.0	43.7	18.8
친인척	2,591	126	80	232	672	953	410	91	27
	100.0	4.9	3.1	9.0	25.9	36.8	15.8	3.5	1.0
일반	768	0	0	25	139	338	208	48	10
	100.0	0.0	0.0	3.3	18.1	44.0	27.1	6.2	1.3



〈그림 3-20〉 전국 위탁가정 유형별 위탁부모의 연령 분포(2017)

-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17.2%), 무학(15.4%), 초등학교(1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위탁유형별로는 ‘대리양육’ 위탁부모의 경우 무학(20.6%), 초등학교(16.2%) 순이었으며, ‘친인척’ 위탁부모는 고등학교(30.7%), 대학교(10.8%) 순이었으며, ‘일반’ 위탁부모는 대학교(39.9%), 고등학교(37.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일반 위탁부모의 경우 대체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임

〈표 3-15〉 전국 위탁가정 유형별 위탁부모의 학력(2017)

(단위: 명, %)

구분	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파악안됨
계	9,570	1,470	1,137	713	1,653	622	101	3,874
	100.0	15.4	11.9	7.5	17.2	6.5	1.0	40.5
대리양육	6,211	1,279	1,005	530	565	36	12	2,784
	100.0	20.6	16.2	8.6	9.1	0.5	0.2	44.8
친인척	2,591	168	106	138	796	280	13	1,090
	100.0	6.5	4.1	5.3	30.7	10.8	0.5	42.1
일반	768	23	26	45	292	306	76	0
	100.0	3.0	3.4	5.9	37.9	39.9	9.9	0.0

○ [직업유형]은 ‘파악 안 됨’과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무직(25.1%), 전업주부(8.5%), 농·어·임·축산업(5.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주로 고령의 퇴직자나 상대적으로 시간활용이 유연한 전업주부 등이 참여하기 수월한 것으로 사료됨. ‘대리양육’ 위탁부모의 경우 무직(34.0%), 농·어·임·축산업(5.9%), 전업주부(4.6%), 단순노무직(3.6%) 등의 순으로 많았음. ‘친인척’ 위탁부모는 전업주부(10.5%), 무직(9.9%), 사무직(5.5%), 서비스직(5.1%), 자영업(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일반’ 위탁부모는 전업주부(32.4%), 종교인(14.5%), 전문직(8.3%), 자영업(8.2%) 등의 순이었음

〈표 3-16〉 전국 위탁가정 유형별 위탁부모의 직업(2017)

(단위: 명, %)

구분	계	공무원	군인	기계 장치 조작	농어 임축 산업	단순 노무	비정 규직	사무 직	서비 스직	자영 업	전문 직	종교 인	전업 주부	판매 직	학생	무직	기타	파악안됨
계	9,570	39	6	16	474	304	145	204	224	274	115	143	809	41	67	2,405	1,590	2,712
	100.0	0.4	0.1	0.2	5.0	3.2	1.5	2.1	2.3	2.9	1.2	1.5	8.5	0.4	0.7	25.1	16.6	28.3
대리양육	6,211	5	0	4	368	226	85	25	51	82	10	12	288	15	8	2,109	1,007	1,916
	100.0	0.1	0.0	0.1	5.9	3.6	1.4	0.4	0.8	1.3	0.2	0.2	4.6	0.2	0.1	34.0	16.2	30.9
친인척	2,591	16	6	12	91	68	52	143	132	129	41	20	272	24	59	257	473	796
	100.0	0.6	0.2	0.5	3.5	2.6	2.0	5.5	5.1	5.0	1.6	0.8	10.5	0.9	2.3	9.9	18.3	30.7
일반	768	18	0	2	15	10	8	36	41	63	64	111	249	2	0	39	110	0
	100.0	2.3	0.0	0.3	2.0	1.3	1.0	4.7	5.3	8.2	8.3	14.5	32.4	0.3	0.0	5.1	14.3	0.0

-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50만원 미만(62.0%)로 가장 많았으며, 50~99만원(10.5%), 100~149만원(7.5%) 순으로 나타남. 위탁유형별로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50만원 미만(71.0%), 50~99만원(12.5%) 순이었으며, ‘친인척’ 위탁가정은 50만원 미만(56.8%), 100~149만원(9.8%) 순이었으며, ‘일반’ 위탁가정의 경우 300만원 이상 41.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리양육 < 친인척 < 일반’ 위탁가정 순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경향을 나타냄

〈표 3-17〉 전국 위탁가정 유형별 위탁부모의 소득수준(2017)

(단위: 명, %)

구분	계	50만원미 만	50~99만 원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249 만원	250~299 만원	300만원 이상	파악 안됨
계	9,570 100.0	5,931 62.0	1,009 10.5	719 7.5	380 4.0	336 3.5	116 1.2	513 5.4	566 5.9
대리 양육	6,211 100.0	4,408 71.0	778 12.5	373 6.0	133 2.1	58 0.9	16 0.3	35 0.6	410 6.6
친인 척	2,591 100.0	1,471 56.8	193 7.5	255 9.8	151 5.8	162 6.3	45 1.7	158 6.1	156 6.0
일반	768 100.0	52 6.8	38 4.9	91 11.8	96 12.5	116 15.1	55 7.2	320 41.7	0 0.0

- [참여 동기]를 살펴보면,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가정은 당위적으로 “혈연 관계” 이유가 각각 93.5%, 93.0%로 높았고, ‘일반’ 위탁가정은 “사회적 이 타심 실현(51.2%), 종교적 이념 실천(21.2%)” 이유가 높게 나타남

〈표 3-18〉 전국 위탁가정 유형별 위탁 부모의 참여 동기(2017)

(단위: 명, %)

구분	계	종교적 이념 실천	사회적 이타심 실현	가족체계 강화	개인적 만족감	입양 전 준비	혈연관계	기타
계	9570 100.0	170 1.8	406 4.2	94 1.0	22 0.2	45 0.5	8220 85.9	613 6.4
대리양육	6211 100.0	2 0.0	10 0.2	58 0.9	4 0.1	10 0.2	5809 93.5	318 5.1
친인척	2591 100.0	5 0.2	3 0.1	21 0.8	0 0.0	5 0.2	2409 93.0	148 5.7
일반	768 100.0	163 21.2	393 51.2	15 2.0	18 2.3	30 3.9	2 0.3	147 19.1

○ 전국 시·도별 '일반위탁' 가구 수를 살펴보면, 전체 일반위탁가정 총 768 가구 중 경북이 77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 71가구, 강원 69가구, 경기(북부) 62가구 순으로 나타남. 한편, 가정위탁유형별 전체 가구 중 일반위탁 가정의 가구 비율은 대전 17.3%로 가장 높았고, 대구 16.1%, 인천 11.4% 순으로 나타남

-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가구 수는 전남 745가구로 가장 많았고, 전남(745가구), 경기(690가구), 강원(650가구) 순으로 많았으며, 전체 위탁가구 중 비율로는 전남(79.6%), 강원(73.2%), 제주(69.9%), 전북(69.4%) 등의 순으로 높았음. '친인척' 위탁가정의 가구 수는 경기(387가구), 서울(287가구), 경남(228가구) 순으로 많았고, 전체 위탁가구 중 비율은 광주(38.7%), 경기(33.7%), 서울(32.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9〉 전국 시·도별 및 위탁유형별 위탁가정 가구 수(2017)

(단위: 가구, %)

구분	소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계	9,570	100.0	6,211	64.9	2,591	27.1	768	8.0
서울	873	100.0	538	61.6	287	32.9	48	5.5
부산	553	100.0	338	61.1	177	32.0	38	6.9
대구	230	100.0	119	51.7	74	32.2	37	16.1
인천	473	100.0	274	57.9	145	30.7	54	11.4
광주	266	100.0	135	50.8	103	38.7	28	10.5
대전	185	100.0	98	53.0	55	29.7	32	17.3
울산	193	100.0	117	60.6	58	30.1	18	9.3
경기	1,148	100.0	690	60.1	387	33.7	71	6.2
경기(북부)	590	100.0	355	60.2	173	29.3	62	10.5
강원	888	100.0	650	73.2	169	19.0	69	7.8
충북	431	100.0	288	66.8	101	23.4	42	9.7
충남	484	100.0	322	66.5	116	24.0	46	9.5
전북	605	100.0	420	69.4	141	23.3	44	7.3
전남	936	100.0	745	79.6	159	17.0	32	3.4
경북	733	100.0	487	66.4	169	23.1	77	10.5
경남	763	100.0	482	63.2	228	29.9	53	6.9
제주	219	100.0	153	69.9	49	22.4	17	7.8

- 전국 시·도별 일반위탁가정의 가구 및 아동 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위탁가정의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 77가구로 가장 많았고, 일반위탁가정 총 768가구 중 10.0%를 차지함. 다음으로 경기(71가구), 강원(69가구) 순으로 나타남
- 일반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수 역시 경북이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원 89명 등으로 나타남

〈표 3-20〉 전국 시·도별 일반가정위탁의 가구 및 아동 수(2017)

(단위: 가구, 명)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구 수	768	48	38	37	54	28	32	18	71	62	69	42	46	44	32	77	53	17
아동 수	937	57	46	47	65	31	45	24	77	75	89	51	53	56	42	93	66	20

다. 전북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 현황

- 먼저 전북의 연도별 및 유형별 위탁가정의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위탁가정 가구 수 추이는 2008년 98가구에서 2017년 44가구로 절반 가까이 크게 감소하였고, 전체 위탁가정 중 일반위탁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2.5%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는 6.3%까지 감소했다가 2017년 7.3%를 나타냄
-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2008년 458가구(58.3%)에서 2017년 419가구(69.4%)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체 가정위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8.3%에서 69.4%로 오히려 크게 증가함
- ‘친인척’ 위탁가정은 2008년 230가구에 2017년 141가구로 감소하였고, 전체 가정위탁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8년 29.3%에서 2017년 23.3%로 감소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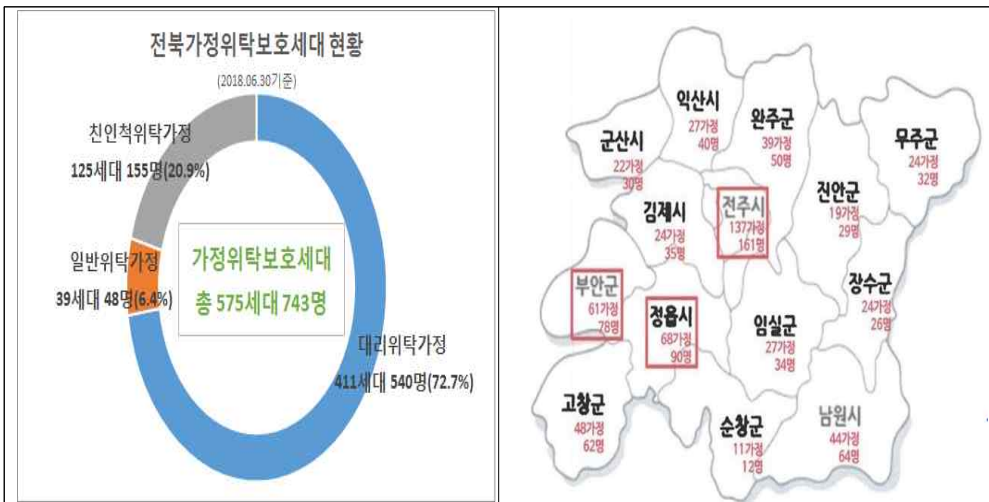
〈표 3-21〉 전북 연도별 및 유형별 위탁가정 가구 및 아동 수(2008~2017)

(단위: 가구, 명, %)

구분	가구 수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소계	
2008	가구 수	458	58.3	230	29.3	98	12.5	786	100.0
2009	가구 수	474	60.1	229	29.0	86	10.9	789	100.0
2010	가구 수	488	61.7	218	27.6	85	10.7	791	100.0
	아동 수	679	-	338	-	110	-	1,127	100.0
2011	가구 수	677	63.7	314	29.5	72	6.8	1,063	100.0
	아동 수	918	-	404	-	91	-	1,413	100.0
2012	가구 수	484	65.2	196	26.4	62	8.3	742	100.0
	아동 수	683	-	271	-	84	-	1,038	100.0
2013	가구 수	518	69.4	180	24.1	50	6.9	748	100.0
	아동 수	711	-	247	-	79	-	1,037	100.0
2014	가구 수	480	66.8	186	25.9	52	7.2	718	100.0
	아동 수	647	-	241	-	77	-	965	100.0
2015	가구 수	486	70.6	153	22.2	49	7.1	688	100.0
	아동 수	640	-	205	-	71	-	916	100.0
2016	가구 수	453	71.3	142	22.4	40	6.3	635	100.0
	아동 수	605	-	178	-	61	-	844	100.0
2017	가구 수	419	69.4	141	23.3	44	7.3	604	100.0
	아동 수	560	-	175	-	56	-	791	100.0

자료: 통계청,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2018. 05. 25기준)

- 2018년 6월 30일 자료를 토대로 전북의 위탁가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위탁가정은 총 575가구(743명)이며, 이 중 일반위탁가정은 39가구(위탁보호 아동 48명)로 나타남. 그 외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411가구(위탁보호 아동 540명), 친인척 위탁가정 125가구(위탁보호 아동 155명)로 나타남. 이를 유형별에 따른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위탁 가정 비율은 전체 중 6.4%만을 차지할 뿐 대리양육 위탁가정 비율이 72.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친인척가정위탁 비율이 20.9%를 차지하고 있음
- 전북 시·군별 위탁가정의 가구 수는 전주가 137가구(위탁보호 아동 1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읍 68가구(위탁보호 아동 90명), 부안 61가구(위탁보호 아동 78명) 등의 순으로 많았음



자료 : 2018. 6. 30기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내부 자료

〈그림 3-21〉 전북 위탁가정 유형별 가구 및 아동 수 현황

- 가정위탁 된 아동의 연령 및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17~19세가 254명 (3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세 이상 180명(24.2%), 14~16세 128명(17.2%) 등으로 나타남
- 아동의 성별 분포에서 다소 차이가 났는데, 17~19세는 남아의 비율이, 20세 이상에서는 여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음

〈표 3-22〉 전북 위탁아동의 연령 및 성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이상
계	743 100.0	3 0.4	32 4.3	62 8.3	84 11.3	128 17.2	254 34.2	180 24.2
남	383 100.0	1 0.3	19 5.0	33 8.6	50 13.1	70 18.3	146 38.1	64 16.7
여	360 100.0	2 0.6	13 3.6	29 8.1	34 9.4	58 16.1	108 30.0	116 32.2

자료 : 2018. 6. 30기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내부 자료

- 가정 위탁된 위탁사유를 살펴보면, 이혼 42.8%(318명), 부모의 별거·가출 22.7%(169명), 부 또는 모의 사망 19.9%(148명) 등이 주된 사유로 나타남

〈표 3-23〉 전북 위탁아동의 위탁사유

(단위: 명, %)

부모 사망	부/모 사망	별거 가출	부모 질병	부모 수감	이혼	빈곤	학대 방임	미혼모 (부)	시설 의뢰	부모 장애	기타	합계
22	148	169	7	21	318	2	14	12	4	10	16	743
3.0	19.9	22.7	0.9	2.8	42.8	0.3	1.9	1.6	0.5	1.3	2.2	100.0

자료 : 2018. 6. 30기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내부 자료

- 전북 시·군별 일반위탁가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39가구 48명의 아동 중 전주가 18가구(19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익산 3가구(7명), 임실 3가구(6명), 진안 3가구(4명), 남원 3가구(3명) 등으로 나타남

〈표 3-24〉 전북 시군별 일반 위탁가정 가구(39가구) 및 아동 수 현황

(단위: 가구, 명)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체
세대 수	18	1	3	2	3	1	3	3	-	1	3	-	1	-	39
아동 수	19	1	7	2	3	1	3	4	-	1	6	-	1	-	48

자료 : 2018. 6. 30기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내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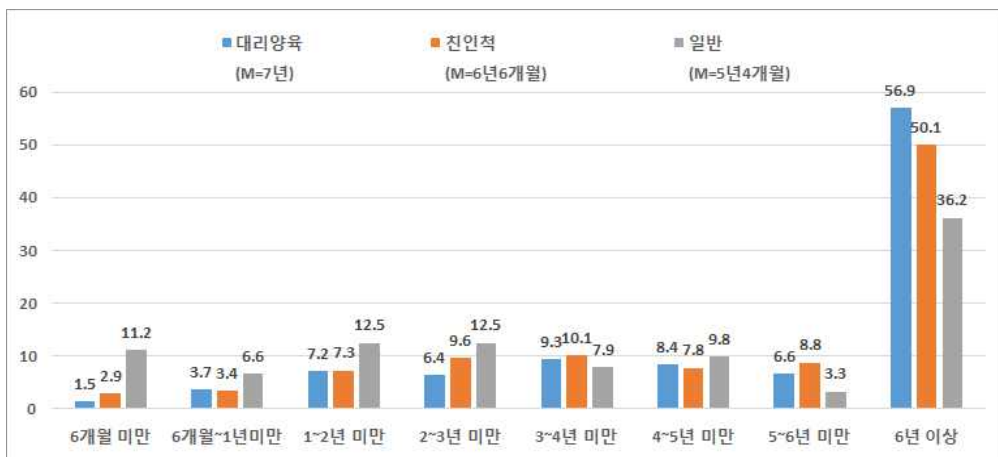
라. 가정위탁 위탁기간 및 종결사유

- 종결된 위탁아동의 위탁기간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종결아동의 평균 위탁기간은 6년 9개월로 2015년(6년)에 비해 길어짐. 위탁유형 중 일반위탁가정의 기간이 평균 5년 4개월로 중 가장 짧았고, 대리양육의 위탁기간은 7년, 친인척의 위탁기간은 6년 6개월로 나타남
- 가정위탁유형별 위탁기간을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6년 이상의 위탁을 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일반위탁의 경우 1년 이상~3년 미만의 비율이 25.0%로 그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나, 주로 짧은 기간의 위탁기간에 더 많이 배치되고 있었음

〈표 3-25〉 전국 종결아동의 가정위탁유형별 위탁기간(2017)

(단위: 명, %)

구분	계	6개월 미만	6개월~1년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6년 미만	6년 이상	평균 위탁기간
계	2,182 100.0	56 2.6	83 3.8	166 7.6	169 7.8	206 9.4	181 8.3	153 7.0	1,168 53.5	6년 9개월
대리양육	1,405 100.0	21 1.5	52 3.7	101 7.2	90 6.4	131 9.3	117 8.4	93 6.6	800 56.9	7년
친인척	625 100.0	18 2.9	21 3.4	46 7.3	60 9.6	63 10.1	49 7.8	55 8.8	313 50.1	6년 6개월
일반	152 100.0	17 11.2	10 6.6	19 12.5	19 12.5	12 7.9	15 9.8	5 3.3	55 36.2	5년 4개월



〈그림 3-22〉 전국 종결아동의 가정위탁유형별 위탁기간(2017)

- 전국 위탁가정 종결의 사유를 살펴보면, 91.4%가 위탁아동이 종결되어 자연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남. 위탁유형별 차이 없이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위탁 모두 위탁아동 종결이 각각 91.0%, 92.3%, 9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위탁아동의 보호 종결에 따라 자연적 종결은 가정위탁의 원 취지인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현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표 3-26〉 전국 종결위탁가정의 종결사유(2017)

(단위: 가구, %)

구분	계	위탁아동종결	이사 등 환경변화	자격상실	기타
계	1,647 100.0	1,505 91.4	78 4.7	8 0.5	56 3.4
대리양육	1,025 100.0	933 91.0	47 4.6	7 0.7	38 3.7
친인척	506 100.0	467 92.3	23 4.5	1 0.2	15 3.0
일반	116 100.0	105 90.5	8 6.9	0 0.0	3 2.6



〈그림 3-23〉 전국 종결위탁가정의 종결사유(2017)

마. 신규 일반가정위탁 관련 현황

- 2017년 전국 신규 배정된 위탁가정(총 948가구)은 대리양육 위탁이 596가구(62.9%)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 위탁가정은 252가구(26.6%)로 나타남. 시·도별 신규위탁가정 수는 경기도가 13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93가구), 서울(87가구) 순으로 많았음
- 신규 위탁 948가구 중 일반위탁의 경우 100가구로 전체의 10.5%를 차지함.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11가구), 전북(10가구), 강원(8가구) 등의 순이었음. 전북의 신규 일반위탁 가구는 지난해(2가구)에 비해 증가함. 한편, 위탁가정 유형별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위탁’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 35.7%(5가구), 인천 28.2%(11가구), 대전 21.9%(7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리양육’ 비율은 경북 73.1%(68가구), 울산 72.7%(16가구) 등의 순으로, ‘친인척’ 비율은 서울 40.2%(35가구), 충북 37.9%(11가구)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7〉 전국 시·도별 신규 위탁가정 수(2017)

(단위: 가구, %)

구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소계	
계	596	62.9	252	26.6	100	10.5	948	100.0
서울	49	56.3	35	40.2	3	3.4	87	100.0
부산	35	61.4	16	28.1	6	10.5	57	100.0
대구	4	28.6	5	35.7	5	35.7	14	100.0
인천	25	64.1	3	7.7	11	28.2	39	100.0
광주	23	65.7	11	31.4	1	2.9	35	100.0
대전	15	46.9	10	31.3	7	21.9	32	100.0
울산	16	72.7	5	22.7	1	4.5	22	100.0
경기	81	60.9	37	27.8	15	11.3	133	100.0
경기(북부)	36	67.9	11	20.8	6	11.3	53	100.0
강원	38	61.3	16	25.8	8	12.9	62	100.0
충북	14	48.3	11	37.9	4	13.8	29	100.0
충남	37	63.8	15	25.9	6	10.3	58	100.0
전북	36	60.0	14	23.3	10	16.7	60	100.0
전남	53	69.7	16	21.1	7	9.2	76	100.0
경북	68	73.1	20	21.5	5	5.4	93	100.0
경남	53	68.8	21	27.3	3	3.9	77	100.0
제주	13	61.9	6	28.6	2	9.5	21	100.0

주: 2017년 신규위탁가정 현황은 다른 센터로 사례이관되거나, 위탁가정이 변경된 213세대(대리양육위탁가정 78세대, 친인척위탁가정 106세대, 일반위탁가정 29세대)를 신규위탁가정 수에서 제외하고 집계.

- 연도별 전국 일반가정위탁 신규 가구 수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소폭의 증감을 보이다가 2014년 199가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17년 123가구가 신규가구로 등록된 상태임. 상대적으로 신규 일반가정위탁 가구가 많이 발굴되는 지역은 강원, 경북, 경기, 인천 등으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2010년 신규 일반가정위탁 수가 13가구로 가장 많이 발굴되었으며, 2011년과 2016년에는 3가구로 가장 적었고, 2017년에는 10가구가 새로이 일반가정위탁으로 발굴된 상태임

〈표 3-28〉 전국 시·도별 및 연도별 신규 일반위탁가정 발생 현황(2010~2017)

(단위: 가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69	85	173	189	199	183	131	123
서울	14	5	12	11	17	13	6	4
부산	17	1	12	11	21	6	12	8
대구	6	10	5	13	6	3	3	4
인천	13	10	17	17	17	15	3	11
광주	2	1	1	5	2	3	9	1
대전	25	6	10	5	5	5	4	8
울산	9	2	8	10	8	3	6	2
세종	-	-	0	3	0	3	1	1
경기	16	11	29	32	29	43	19	26
경기(북부)								
강원	8	9	16	22	15	13	19	7
충북	8	6	10	10	8	22	9	7
충남	4	1	9	9	18	7	7	5
전북	13	3	11	4	12	8	3	10
전남	2	14	2	6	2	11	9	10
경북	24	4	9	15	19	17	9	8
경남	9	1	14	12	12	10	10	9
제주	2	1	8	4	8	1	2	2

자료 : 통계청,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2018. 05. 25기준)

- 신규 위탁가구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신규위탁가정 948가구 중 소득이 파악되지 않은 가정은 6.0%(57가구)였으며, 150만원 미만인 가정이 68.1%(645가구)로 대다수를 차지함. 반면에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1.8%(112가구)의 분포를 보였으며 대부분 일반위탁 가구임

〈표 3-29〉 전국 신규 위탁가정 부모의 소득수준(2017)

(단위: 가구, %)

구분	계	50만원 미만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249만원	250~299만원	300만원 이상	파악 안됨
계	948 100.0	445 46.9	99 10.5	101 10.7	60 6.3	52 5.5	22 2.3	112 11.8	57 6.0
대리양육	596 100.0	342 57.4	82 13.7	66 11.1	32 5.4	19 3.2	5 0.8	9 1.5	41 6.9
친인척	252 100.0	103 40.9	15 6.0	31 12.3	17 6.7	28 11.1	9 3.6	33 13.1	16 6.3
일반	100 100.0	0 0.0	2 2.0	4 4.0	11 11.0	5 5.0	8 8.0	70 70.0	0 0.0

- 신규 위탁가정의 소득을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50만원 미만이 57.4%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 위탁가정 역시 50만원 미만이 4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일반’ 위탁가정의 경우는 300만원 이상이 70.0%로 나타나 일반위탁가정은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과는 다른 소득분포가 나타남



〈그림 3-24〉 전국 신규 위탁가정 부모의 소득분포(2017)

- 신규 위탁가구의 종교를 살펴보면, 신규위탁가정 948가구 중 무교가 59.6%(565가구)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18.2%(173가구), 기타 7.8%(74가구), 불교 4.1%(39가구) 순으로 나타남. 신규 위탁가정 유형별 종교 분포

는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은 무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일반’ 위탁가정의 경우, 기독교가 58가구(58.0%)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였으며, 무교 20가구(20.0%), 기타 9가구(9.0%) 순으로 나타남

〈표 3-30〉 전국 신규 위탁가정의 종교(2017)

(단위: 가구, %)

구분	계	가톨릭	기독교	불교	무교	기타	파악안됨
계	948	15	173	39	565	74	82
	100.0	1.6	18.2	4.1	59.6	7.8	8.7
대리양육	596	5	92	25	382	43	49
	100.0	0.9	15.4	4.2	64.1	7.2	8.2
친인척	252	2	23	9	163	22	33
	100.0	0.8	9.1	3.6	64.7	8.7	13.1
일반	100	8	58	5	20	9	0
	100.0	8.0	58.0	5.0	20.0	9.0	0.0

- 신규 위탁가구의 참여 동기를 살펴보면, 신규위탁가정 948가구 중 835가구(88.1%)가 혈연관계로 인해 가정위탁보호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의 참여 동기가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위탁가정의 참여 동기를 살펴보면, 사회적 이타심 실현이 54.0%(54가구)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종교적 이념실천이 15.0%(15가구) 등의 순이었음

〈표 3-31〉 전국 신규 위탁가정의 참여 동기(2017)

(단위: 가구, %)

구분	계	종교적 이념 실천	사회적 이타심 실현	가족체계 강화	개인적 만족감	입양 전 준비	혈연관계	기타
계	948	15	54	8	2	8	835	26
	100.0	1.6	5.7	0.8	0.2	0.8	88.1	2.8
대리양육	596	0	0	3	0	0	589	4
	100.0	0.0	0.0	0.5	0.0	0.0	98.8	0.7
친인척	252	0	0	1	0	0	246	5
	100.0	0.0	0.0	0.4	0.0	0.0	97.6	2.0
일반	100	15	54	4	2	8	0	17
	100.0	15.0	54.0	4.0	2.0	8.0	0.0	17.0

제 3 절 가정위탁보호 지원내용 및 지원센터 운영현황*

가. 가정위탁보호 지원내용

1) 전라북도 지원내용

- 먼저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가 2005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도 도비 100%로 운영되고 있음. 2019년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예산은 2018년 예산(417,978천원) 보다 14.3% 증가(59,707천원) 한 477,685천원으로 나타남
- 가정위탁지원센터 예산은 구체적으로 센터 운영지원비(432,272천원, 종사자 특별수당 9,240천원)와 사업 지원비(36,173천원 : 교육, 위탁아동지원, 자립지원, 위탁부모지원, 자원관리 등)로 사용되고 있음. 16년에는 638세대의 842명이, 17년에는 601세대의 791명, 18년에는 743명이 지원받음. 전북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지원센터 지원예산 금액은 2012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임
- 2018년 전국 시도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예산을 살펴보면, 경북이 610,180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254,870천원으로 가장 낮았음.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예산과 종사자의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 지역은 광주, 대전, 전남, 경북 등으로 나타남. 한편, 전라북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수와 예산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전북의 센터 종사자수는 10명, 예산 417,978천원으로 전국 평균 종사자 수(9.9명)와 예산(413,902천원)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18년 12월 기준 전문위탁가정 총 3사례로 양육보조금 월 40만원이 법인(세이브터칠드런)으로부터 예산을 지급받고 있음
- 그 외 충남은 전문위탁가정을, 경북은 일시가정위탁을 실시함

*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8). '2017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표 3-32〉 전국 시도별 가정위탁지원센터 예산 현황(2018)

(단위: 명, 천원)

구분	종사자 수 (센터장 포함)	2018년 센터 운영비	
		운영비	비고
서울	10	348,202	전문가정위탁지원(월 20만원)
부산	10	288,000	양육보조금 15만원, 대학진학금(1학기 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 자립지원금 500만원,
대구	10	380,743	
인천	10	465,587	
광주	9	464,400	센터운영 459,000천원, 종사자특별수당 5,400천원, 초기정착금 100만원
대전	7	254,870	종사자 특별수당 10만원*12개월 가정위탁양육보조금 15만원, 자립정착금 300만원
울산	7	279,344	
경기	10	389,000	경기와 경기북부 : 전문위탁부모(영유아, 장애아동 대상) 양성
강원	10	419,000	
충북	10	462,191	
충남	11	340,064	전문위탁가정 양육보조금 지원 3,240천원
전북	10	417,978	양육보조금 15만원, 자립정착금 300만원, 대학입학 200만원
전남	12	576,588	종사자 수당 16,800천원(10만원*12개월)
경북	10	610,180	센터운영 581,164천원 종사자 수당 23,520천원 일가정위탁지원 5,500천원
경남	11	419,732	
제주	11	506,556	
전국평균	9.87	413,902	

자료 : 시도별 2018년 세입세출예산서 참고

- 다음으로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 사업(도비 30%, 시군비 70%)은 보호아동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보호비 지원으로 자립능력 배양 및 자기발전에 대한 동기부여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추진하고 사업임. 주요 사업내용으로 김장비 1회(세대당 100천원), 장류비 1회(세대당 70천원), 방과 후 간식비(1인/1일 1천원, 180일 기준), 대학입학지원(1인/1회 2,000천원), 현장체험활동비(2회; 초등 30천원, 중등 40천원, 고등 50천원) 등이 있음. 2018년 총 사업비는 2017년 사업비와 동일한 711,180천원이며, 약 791명의 위탁가정 아동에게 지원함
- 전북 시군지역 중에서는 전주시만이 위탁가정 아동 대상 체험활동지원을 연

2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외 심리치료 지원사업, 아동발달지원
계좌 사업 및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등은 국비 70%가 포함된 사업들임

- 전라북도의 2019년 기준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477,685천원, 인건비 포함)와 가정위탁지원사업비(351,276천원)는 총 828,961천원으로 전라북도 사회복지 전체 예산(2,104,320,863천원)의 0.04%에 해당됨

〈표 3-33〉 전북 가정위탁 아동 및 위탁부모 대상 예산 현황(2017, 2018)

(단위: 천원)

사업명	목적	지원내용	지원금액
전북가정위탁지원사업 (도비 100%)	가정위탁보호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 도모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종사자인건비, 사업비, 위탁부모교육비 및 긴급양육비 등	2017년 346,777 2018년 417,978 2019년 477,685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도비30%, 시군비70%)	위탁가정 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간장비, 장류비, 방과후교재비, 대학안락지원, 현장체험활동비 등 지원 (대리양육 560명, 친인척 175명, 일반가정 56명)	2016년 1,249,979 2017년 374,634 2018년 374,634 2019년 351,276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국비70%, 도비15%, 시군비15%)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 심리 상담치료가 필요 시 치료 지원	심리정서검사 및 치료비 지원 13명 대상	2016년 6,697 2017년 10,030
아동발달 지원계좌 (국비70%, 도비15%, 시군비15%)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	자산형성 매칭펀드 지원 5,415명 대상	2016년 987,697 2017년 1,059,200
상해보험료 지원 (국비70%, 도비30%)	질병·인적사고 발생시 위탁부모가 무제한 책임질 수 어렵기에 상해에 대한 보험 지원	위탁가정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730명 대상	2016년 43,756 2017년 47,450
전주시 가정위탁아동체험활동지원 (전주 시비 100%)	요보호아동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연 2회 문화체험활동 실시 뮤지컬 관람 등	2017년 20,000천원 2018년 20,000천원

자료: 전라북도 2018년·2019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 참고

2) 전라북도의 지원 현황

- 2017년도 전국 신규위탁아동 1,195명 중 92.1%인 1,100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세입대 지원

* 가정위탁보호비지원 : 도비 10%, 시군비 90%, 소년소녀가정지원 : 도비 10%, 시군비 90%,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전지원 : 도비 30%, 시군비 70%

의 경우 124명의 대상자 중 대리양육위탁가정 55.4%(74호), 친인척위탁가정 44.6%(47호)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신규위탁아동 76명 중 94.7%인 72명이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임대 지원의 경우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 모두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주된 사유는 위탁아동의 부모사망 후 유족연금이나 보험금 등의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거나, 양육을 거부하고 연락 두절된 친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었기 때문임. 이로 인해 위탁가정의 양육부담이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4〉 전국 및 전북의 생계비/전세임대 지원서비스 현황(2017)

(단위: 명, 호, %)

구분	신규위탁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 전세임대 지원		
	위탁아동 수	생계비지원 아동 수	비율	계	대리양육위탁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전국	1,195	1,100	92.1	124	74(59.7)	47(37.9)
전북	76	72	94.7	-	-	-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8). 2017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 2017년 가정위탁보호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적립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총 적립금은 41,117,217원으로 사업대상 위탁아동 635명 중 실제 저축하고 있는 아동은 601명으로 저축률 94.6%를 보이고 있음. 전북의 가정위탁아동의 저축률 94.6%는 전국 평균 저축률(95.4%)보다 0.8%p 낮은 것으로 나타남. 아동 1인당 월평균 저축액은 39,329원이었으며, 아동 1인당 월 평균 매칭지원액은 29,086원으로 나타남

〈표 3-35〉 전북 위탁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현황(2017)

(단위: 명, %)

사업대상 아동 수	저축 아동 수	저축률	아동 입금액	아동 1인당 월평균 입금액		매칭 신청 기준 금액	아동 1인당 월평균 매칭지원액		총 적립금	평균 적립금	
				저축 아동 기준	사업대상 아동기준		저축 아동 기준	사업대상 아동 기준		저축 아동 기준	사업상 아동 기준
635	601	94.6	23,636,575	39,329	37,223	17,480,642	29,086	27,529	41,117,217	68,415	64,752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8). 2017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 가정위탁아동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4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아동의 저축액과 1:1로 매칭하여 추가 적립금을 제공함. 이는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기초자산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지원

3)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내용 및 지원서비스·교육 현황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원내용은 크게 교육, 홍보, 지역사회조직화, 문화정서지원, 위탁아동자립지원, 위기가정지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3-36〉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내용 현황

교육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위탁부모교육: 일반위탁부모로 활동하기 희망하는 예비위탁부모 대상 교육 -위탁부모교육: 아동인권 및 긍정적 훈육을 기초로 한 위탁부모 보수교육 진행 -위탁부모 자조모임: 위탁부모들이 양육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유대감 강화를 위한 정기적 모임 -전문가정위탁교육: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 제공을 위한 전문가정위탁 교육 -공무원 간담회: 행정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협조체계 구축
홍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캠페인: 가정위탁 홍보 및 예비위탁부모 발굴을 위한 캠페인 -홈페이지 및 SNS: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언론홍보: 전라북도 내 신문, TV, 라디오, 생활정보지, 전광판 등 언론매체 홍보
지역 사회 조직 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외협력: 지역사회 아동복지 관련 핵심 연계기관과 자원연계관련 업무협약의 진행 -운영자문위원회: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발전방안 모색 및 사례자문과 관련한 정기적 회의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교육 등 관리 및 가정위탁보호사업 홍보캠페인
문화 정서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위탁부모 및 아동을 위한 지지체계 제공과 위탁가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일반위탁 힐링프로그램: 일반위탁부모 양육스트레스 해소 및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위탁가정 관계향상 프로그램: 위탁아동과 대리/친인척 위탁가정 및 친가정 관계향상 -대리/친인척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대리/친인척가정 대상 정서적지지 및 가족기능 향상
위탁 아동 자립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위기 가정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환경 개선비: 위탁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환경 변화를 지원 -의료비: 병원검사 및 치료, 보장구 구입 등 아동의 신체·정서적 치료비용 지원 -생계비 및 사례관리 지원: 식료품, 난방비 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지원

자료 : 2018. 6. 30기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내부자료.

- 다음으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위탁아동, 위탁부모, 친부모 등에게 제공된 상담은 물론 물품, 의료, 학습, 경제적 지원 등의 서비스가 직·간접적으로 제공된 것을 알 수 있음
- 먼저, 전국의 가정위탁 지원서비스 현황을 보면, 전체 인원은 47,624명에 411,927건의 서비스가 지원된 것으로 1인당 약 9건의 서비스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 대상자별 서비스 건수를 살펴보면, ‘위탁아동’ 대상 서비스는 16,314명에 191,692건의 서비스가 지원된 것으로 1인당 약 12건의 서비스가 지원됨. ‘대리양육위탁부모’ 대상 서비스는 9,601명에 85,250건의 서비스가 지원되었으며(1인당 약 9건), ‘친인척위탁부모’ 대상 서비스는 3,932명에 30,973건의 서비스가 지원되었으며(1인당 약 8건), ‘일반위탁부모’ 대상 서비스는 1,606명에 38,508건의 서비스가 지원(1인당 24건) 되었음. ‘친가정’ 대상 서비스는 612명에 6,846건의 서비스가 지원되어 1인당 11건으로 나타남

- 전북의 지원서비스 현황을 보면, 전체 인원 2,618명에 28,442건의 서비스가 지원된 것으로 1인당 약 11건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 대상자별 서비스 건수를 살펴보면, ‘위탁아동’ 대상 서비스는 931명에 20,702건 지원 (1인당 22건), ‘대리양육위탁부모’ 대상 서비스는 570명에 3,501건 지원 (1인당 6건), ‘친인척위탁부모’ 대상은 181명에 1,140건 지원(1인당 6건), ‘일반위탁부모’ 대상은 87명에 1,594건 지원(1인당 18건), ‘친가정’ 대상 서비스는 25명에 143건 지원(1인당 6건) 하였음

〈표 3-37〉 전국 및 전북의 지원서비스 현황(2017)

(단위: 명, 건, %)

구분		계	위탁아동 서비스	대리양육위탁 부모서비스	친인척위탁 부모서비스	일반위탁부모서비스	친가정서비스	기타
전국	인원	47,624	16,314	9,601	3,932	1,606	612	15,559
	%	100.0	34.2	20.2	8.2	3.4	1.3	32.7
	건수	411,927	191,692	85,250	30,973	38,508	6,846	58,658
	%	100.0	46.5	20.7	7.5	9.4	1.7	14.2
	1인당 건수	9	12	9	8	24	11	4
전북	인원	2,618	931	570	181	87	25	824
	%	100.0	35.6	21.8	6.9	3.3	1.0	31.5
	건수	28,442	20,702	3,501	1,140	1,594	143	1,362
	%	100.0	72.8	12.3	4.0	5.6	0.5	4.8
	1인당 건수	11	22	6	6	18	6	2

주. '기타서비스'는 위탁아동과 관련된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와 가정위탁 문의, 위탁가정 신청, 위탁아동 신청 등의 일반상담까지 포함함.

-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원서비스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1인당 지원건수는 2015년 1인당 약 8건(3,027명에 23,570건)에서 2017년 1인당 약 1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위탁아동' 대상 서비스는 2015년 1인당 약 7건에서 2017년 약 22건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대리양육위탁부모' 대상 서비스는 2015년 1인당 약 10건에서 2017년 6건으로 감소, '친인척위탁부모' 대상 서비스는 2015년 약 8건에서 2017년 6건으로 감소, '일반위탁부모' 대상 서비스는 2015년 약 27건에서 18건으로 감소, '친가정' 대상 서비스는 2015년 약 10건에서 2017년 6건으로 각각 감소하였음

〈표 3-38〉 전북의 연도별 지원서비스 현황(2015~2017)

구분		계	위탁아동 서비스	대리양육위탁 부모서비스	친인척위탁 부모서비스	일반위탁부모 서비스	친가정 서비스	기타
2017	인원	2,618	931	570	181	87	25	824
	%	100.0	35.6	21.8	6.9	3.3	1.0	31.5
	건수	28,442	20,702	3,501	1,140	1,594	143	1,362
	%	100.0	72.8	12.3	4.0	5.6	0.5	4.8
	1인당 건수	11	22	6	6	18	6	2
2016	인원	3,163	1,023	759	239	89	40	1,013
	%	100.0	32.3	24.0	7.6	2.8	1.3	32.0
	건수	27,222	9,627	8,186	1,789	3,057	576	3,987
	%	100.0	35.4	30.1	6.6	11.2	2.1	14.6
	1인당 건수	9	9	11	7	34	14	4
2015	인원	3,027	933	835	282	116	46	755
	%	100.0	30.8	27.6	9.3	3.8	1.5	24.9
	건수	23,570	6,597	8,067	2,155	3,175	450	3,126
	%	100.0	28.0	34.2	9.1	13.5	1.9	13.3
	1인당 건수	8	7	10	8	27	10	4

- 2017년도 전국 가정위탁 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부모교육의 참여인원을 위탁유형별로는 '대리양육' 위탁부모교육(3,555명), '친인척' 위탁부모교육(1,081명) 순으로 많았고, '일반위탁'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위탁부모교육은 437명, 보수교육은 68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공무원

교육은 1,941명, 기타교육은 2,828명으로 집계됨. 지역센터별 전체 교육 현황의 경우, 교육 횟수가 많은 지역은 경북 413회로 가장 많았고, 대전 (210회), 경남(171회) 등의 순이었으며, 교육 참여인원이 많은 지역은 경북 1,46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남(1,178명), 경남(89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2017년 전체 교육 횟수는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교육인원은 감소하였음. 한편, 일반위탁부모 대상 교육은 예비위탁부모교육과 보수교육 모두 교육 횟수와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 교육은 교육 횟수는 전년대비 동일하나 교육받은 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9〉 전국 및 전북의 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2017)

(단위: 회, 명, %)

구분		계	대리양육 위탁부모	친인척 위탁부모	일반위탁부모		공무원교육	기타	
					예비 위탁부모	보수교육			
전국	횟수	1,766	422	233	102	104	212	693	
	%	100.0	23.9	13.2	5.8	5.9	12.0	39.2	
	인원	10,522	3,555	1,081	437	680	1,941	2,828	
	%	100.0	33.8	10.3	4.1	6.5	18.4	26.9	
전 북	2017	횟수	78	14	12	6	2	13	30
		%	100.0	17.9	15.4	7.7	2.6	16.7	38.5
	인원	618	232	69	39	35	163	80	
		%	100.0	37.5	11.2	6.3	5.7	26.4	12.9
	2016	횟수	53	13	13	2	1	13	11
		%	100.0	24.5	24.5	3.8	1.9	24.5	20.8
		인원	681	253	79	10	25	205	109
		%	100.0	37.2	11.6	1.5	3.7	30.1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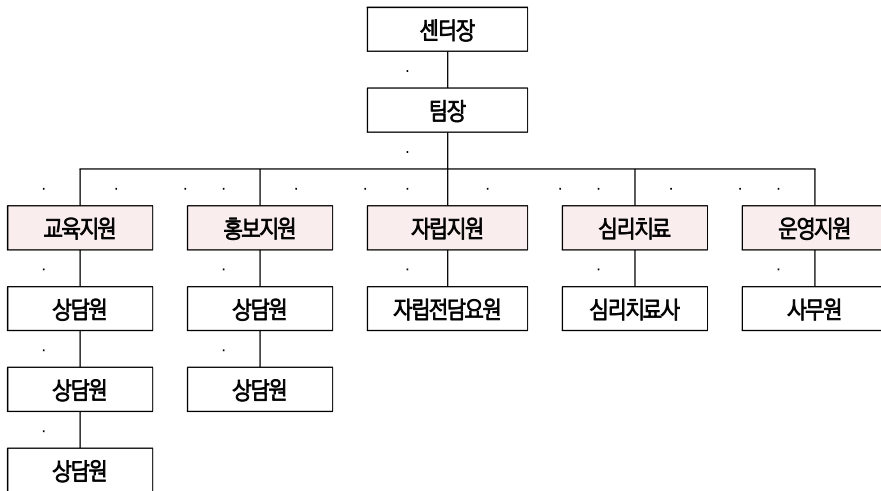
주. '교육'은 위탁부모,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임.

나.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업무량

1)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현황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북도 내 보호필요아동 발생 시 위탁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임. 전북도로부터 지정받아 운영되는 아동복지전담기관
- 운영법인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2017.1.1부터)이 운영하며 2003년~2016년까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였음
 - 조직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과 상담원(5명), 자립전담요원(1명), 심리치료사(1명), 사무원(1명)으로 구성됨

계	센터장	팀장	상담원	자립지원	심리치료사	사무원
10	1	1	5	1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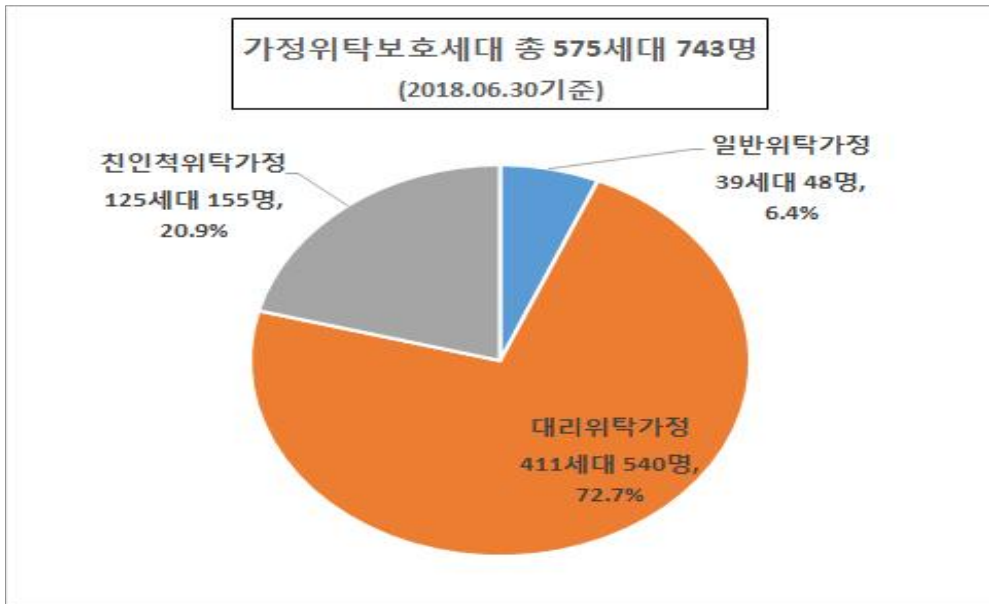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기본방향은 가정방문, 위탁부모 인력풀 구축, 위탁부모 대상 교육, 사례관리, 종결아동 자립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보호필요아동의 최선의 이익 실현을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



〈그림 3-25〉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기본방향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18년 6월 60일 기준으로 총 575세대(743명)의 가정위탁보호세대를 지원하고 있음. 이 중 대리위탁이 7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친인척(20.9%), 일반위탁(6.4%) 순임



〈그림 3-26〉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보호세대 현황

2) 센터 업무량

- 전국 17개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총 168명이며, 각 영역별 업무량을 살펴보면, 상담·후원·학습·문화·의료 등의 지원서비스는 47,624명에게 411,927건이 제공됨. 지역별로 지원서비스는 경기 41,158건, 경남 39,099건, 서울 33,936건, 경북 32,247건 등의 순으로 많았음
- 교육은 총 1,766회로 10,522명(위탁부모, 공무원 등)이 참여하였으며, 지역별 교육 참여인원은 경북 1,469명, 전남 1,178명, 경남 897명 순으로 많았음. 홍보는 총 406,902건이 진행되었으며, 주로 대중매체 등의 홍보 방법이 활용되었음
- 전북의 경우 센터장을 포함한 총 10명이 지원서비스 2,618명 대상 28,442건, 교육 618명 대상 78건, 대중매체 홍보 등은 634건, 홍보물은 3,410건을 진행함

〈표 3-40〉 전국 시·도별 센터 지원서비스·교육·홍보 업무량(2017)

(단위: 명, 회)

구분	종사자 수 (센터장 포함)	지원서비스		교육		홍보	
		인원	건수	횟수	인원	대중매체 홍보 등	홍보물
계	168	47,624	411,927	1,766	10,522	268,776	138,126
서울	10	4,249	33,936	38	313	5,640	14,993
부산	10	2,446	13,552	28	401	15,946	6,653
대구	10	1,462	13,316	15	131	549	8,955
인천	10	2,036	20,186	56	557	931	6,666
광주	9	1,628	28,591	66	451	1,309	11,017
대전	7	1,441	26,172	210	607	117,592	4,185
울산	7	732	21,639	36	405	2,220	4,686
경기	10	5,882	41,158	89	826	25,520	15,664
경기(북부)	9	2,640	13,604	75	393	2,305	8,271
강원	10	3,060	14,373	106	633	1,926	2,150
충북	10	3,366	25,620	45	408	14,777	5,065
충남	11	2,101	27,921	85	645	1,608	6,891
전북	10	2,618	28,442	78	618	634	3,410
전남	12	4,579	24,454	152	1,178	38,494	5,271
경북	10	3,676	32,247	413	1,469	15,394	4,189
경남	11	4,814	39,099	171	897	3,148	10,868
제주	11	894	7,617	103	590	20,783	19,192

- 2017년 상담원 1인당 사례 수, 지원서비스, 교육 및 홍보의 업무량을 보면,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중 상담원은 평균 6명으로 조사됨. 상담원 1인당 담당하는 위탁아동 수는 106명, 위탁가정 수는 85가구이며, 지원서비스는 424명에게 3,811건 제공, 교육은 16회에 걸쳐 94명을 대상으로 실시, 홍보는 3,937건으로 나타남. 한편, 상담원 1인당 사례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02명/164가구), 서울(178명/146가구), 전남(147명/117가구) 순으로 나타남. 지원서비스는 경기도(상담원 1인당 840명 대상 5,880건)가 가장 많았고, 교육은 경북(상담원 1인당 59건의 교육과 210명의 인원을 담당)이 가장 많았음. 홍보는 대전이 24,3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 강원 다음으로 가장 적었음
- 2017년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6명의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담원 1인당 담당하는 위탁아동 수는 132명, 위탁가정 수는 101가구이며, 지원서비스는 436명에게 4,740건 제공, 교육은 13회에 걸쳐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 홍보는 674건으로 나타남

〈표 3-41〉 전국 시·도별 상담원 1인당 업무량(2017)

(단위: 명, 가구, 건, 회)

구분	상담원 수	사례 수		지원서비스		교육		홍보
		위탁아동 수	위탁가정 수	인원	횟수	횟수	인원	
전국평균	6	106	85	424	3,811	16	94	3,937
서울	5	178	146	708	5,656	6	52	3,439
부산	6	109	92	408	2,259	5	67	3,767
대구	6	47	38	244	2,219	3	22	1,584
인천	6	97	79	339	3,364	9	93	1,266
광주	6	58	44	271	4,765	11	75	2,054
대전	5	48	37	288	5,234	42	121	24,355
울산	5	49	39	146	4,328	7	81	1,381
경기	7	202	164	840	5,880	13	118	5,883
경기(북부)	7	107	84	377	1,943	11	56	1,511
강원	8	139	111	383	1,797	13	79	510
충북	6	88	72	561	4,270	8	68	3,307
충남	7	90	69	300	3,989	12	92	1,214
전북	6	132	101	436	4,740	13	103	674
전남	8	147	117	572	3,057	19	147	5,471
경북	7	134	105	525	4,607	59	210	2,798
경남	7	136	109	688	5,586	24	128	2,002
제주	7	38	31	128	1,088	15	84	5,711

주: 상담원 수는 센터장,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자립지원전담요원, 사무원을 제외한 수임.

- 2017년 전북 지원센터 상담원 1인당 담당하는 업무량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북 지원센터 상담원 1인당 담당하는 위탁아동 사례 수는 전국 평균보다 26명이 더 많았으며, 위탁가정 수는 16가구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전북 지원센터의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지원서비스 지원 인원은 전국평균보다 12명이 더 많았으며 이로 인해 929건의 지원 서비스를 보다 더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은 전국 평균의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교육보다 전북 지원센터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교육이 3회 이상 더 많았고 이로 인해 9명의 인원을 추가적으로 대면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홍보 부분에서는 전북 지원센터 상담원 1인 담당 홍보는 전국 평균보다 3,263건이나 절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업무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위탁아동 수는 2015년 153명(114가구)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서비스 대상인원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지원서비스 횟수는 2015년 3,928건에서 2017년 4,74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교육 업무 역시 2015년 대비 3회 증가한 13회(103명)로 나타남. 하지만 홍보사업의 경우, 2015~2016년 대비 부족하였음

〈표 3-42〉 전국 및 전북 상담원 1인당 업무량(2015~2017)

(단위: 명, 가구, 건, 회)

구분	상담원 수	사례 수		지원서비스		교육		홍보	
		위탁아동 수	위탁가정 수	인원	횟수	횟수	인원		
전국평균	6	106	85	424	3,811	16	94	3,937	
전북	2017	6	132	101	436	4,740	13	103	674
	2016	6	141	106	527	4,537	9	114	4,480
	2015	6	153	114	505	3,928	10	121	2,517

주: 상담원 수는 센터장,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자립지원전담요원, 사무원을 제외한 수임.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매년 발간하는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각년도)」와 통계청 가정위탁현황통계,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가정위탁보호현황, 전북 가정위탁보호 지원내용 및 지원센터 운영현황을 연도별·위탁유형별·시도별로 비교해 살펴보았음. 이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내용 중 특기할만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요약하는 것으로 소결하고자 함

가.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 전북의 요보호아동 발생은 2008년 451명에서 2015년 24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6년 278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가 2017년 233명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전북 아동인구 1,000명당 0.77%이었으며, 이는 전년(0.88%)보다 0.11%p 감소하였으나, 전국 평균 보다 0.28%p 높음
 - 시도별로는 서울이 1,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664명), 전남(312명), 전북(233명), 경북(219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요보호아동 발생사유를 보면, 전북의 경우 학대로 인한 사유가 5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혼(20.2%), 부모사망(10.7%), 미혼모·부(6.0%) 아동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학대로 인한 사례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도별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모의 ‘이혼’에 의한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3년부터는 ‘학대’로 인한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 현재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정리하면, 전북의 요보호아동은 아동인구 수 감소에 영향 등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아동인구 대비 비율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준임. 이러한

요보호아동 발생원인은 아동학대와 연결 지어 볼 수 있음. 전북의 아동학대 수준은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287명이 발생하였고, 그 중 54명(18.8%)은 ‘귀가 및 연고자 인도’되었으며, 233명(81.2%)은 보호조치가 이루어졌음
 - 2011년을 제외한 2008~2013년까지는 가정위탁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4년부터는 양육시설 조치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한편, 2017년 기준 가정위탁비율은 28.8%로 2016년 보다 10.5%p 상승한 반면, 2008년 보다는 7.6%p 감소하였고, 양육시설 보호와 공동생활가정보호는 각각 32.6%, 3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보호보다는 시설보호의 비율이 높았음

나. 가정위탁보호 현황

- 전국 시·도별에 따른 유형별 가정위탁보호 아동비율을 살펴보면, ‘일반가정위탁’ 비율은 대전이 1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대구 16.5%, 인천 11.2% 등의 순으로 높았음. ‘대리양육’ 비율은 전남(79.9%), 강원(74.1%), 제주(71.6%), 전북(70.8%) 등의 순으로 높았고, ‘친인척’ 비율의 경우 광주(36.1%), 경기(33.4%), 서울(31.3%), 부산/대구(30.3%) 등의 순이었음
- 전북의 경우 전국 시도와 비교해서, 대리양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친인척 양육 및 일반양육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위탁’ 가구 수 추이는 2008년 98가구에서 2017년 44가구로 절반 가까이 크게 감소하였고, 전체 위탁가정 중 일반위탁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2.5%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는 6.3%까지 감소했다가 2017년 7.3%를 나타냄
 - ‘대리양육’ 위탁가정은 2008년 458가구(58.3%)에서 2017년 419가구(69.4%)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체 가정위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8.3%에서 69.4%로 오히려 크게 증가함

- ‘친인척’ 위탁가정은 2008년 230가구에 2017년 141가구로 감소하였고, 전체 가정위탁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8년 29.3%에서 2017년 23.3%로 감소하는 추세임

- 전북 위탁아동의 위탁사유를 살펴보면, 이혼 42.8%(318명), 부모의 별거·가출 22.7%(169명), 부/모 사망 19.9%(148명) 등이 주된 사유로 나타남
-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해보면,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는 가정과 가장 유사한 가정위탁보호로의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특히, 일반위탁 가정의 발굴이 더욱 필요할 것임. 이는 위탁가구의 유형별 일반특성을 살펴 보더라도 일반위탁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소득, 학력수준, 자발적 참여 동기) 분포가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신규 일반위탁가정 발굴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전북 가정위탁보호 지원내용 및 지원센터 운영 현황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원내용은 크게 교육, 홍보, 지역사회조직화, 문화 정서지원, 위탁아동자립지원, 위기가정지원 사업으로 구분됨
- 전북의 지원서비스 현황을 보면, 전체 인원 2,618명에 28,442건의 서비스가 지원된 것으로 1인당 약 11건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 대상자별 서비스 건수를 살펴보면, ‘위탁아동’ 대상 서비스는 931명에 20,702건 지원(1인당 22건), ‘대리양육위탁부모’ 대상 서비스는 570명에 3,501건 지원(1인당 6건), ‘친인척위탁부모’ 대상은 181명에 1,140건 지원(1인당 6건), ‘일반위탁부모’ 대상은 87명에 1,594건 지원(1인당 18건), ‘친가정’ 대상 서비스는 25명에 143건 지원(1인당 6건)됨
- 가정위탁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전체 교육 횟수는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교육인원은 감소하였음. 한편, 일반위탁부모 대상 교육은 예비위탁부모교

육과 보수교육 모두 교육 횟수와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 교육은 교육 횟수는 전년대비 동일하나 교육받은 인원은 감소함

- 한편, 가정위탁 교육과 관련하여 공무원 교육에 대한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공무원은 위탁가정을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제1선에 있는 지지체계라 할 수 있는데, 행정의 특성상 인사발령으로 인한 부서 재배치로 인해 관련 공무원도 가정위탁 지원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있어 취약하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위탁가정으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 공무원 교육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
- 전북의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2016년까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운영되었다가 2017년 1월 1일부터 세이브더칠드런으로 위탁이 변경되었음. 조직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과 상담원(5명), 자립전담요원(1명), 심리치료사(1명), 사무원(1명)으로 구성됨
- 2018년 6월 기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근무환경의 쟁점사항으로 센터장과 운영지원을 제외한 8명 정도가 전북도내 14개 시군의 743명의 아동과 575사구의 위탁가정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다 촘촘하고 전문적인 개입과 사례관리에 있어서 지리적, 시간적, 인력적 한계 발생함
- 즉,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1인당 평균 담당 사례수가 150사례 정도이며 종결사례까지 포함하면 1인당 280사례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소진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영향으로 특히, 위탁가정 발굴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홍보 부분에서는 평균 674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3,263건이나 절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로 살펴보더라도 홍보사업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대비 절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인력 충원이 요구되며, 인력 충원이 여의치 않다면, 업무량을 재 산출하여 탄력적 조직구성에 대한 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장

전북 가정위탁보호 실태 및 정책적 욕구

Jeonbuk Institute

제 1 절 위탁유형별 위탁부모 및 아동 대상 면접조사

제 2 절 현장전문가 대상 FGI(초점집단면접조사)

제 3 절 소결

제4장 전북 가정위탁보호의 실태 및 정책적 욕구

본 장에서는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실태 및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첫째, 유형별에 따른 위탁부모 대상 구체적인 경험실태 및 상이한 어려움과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둘째, 가정위탁 아동의 위탁보호 배치 및 보호 과정에서의 경험실태와 필요 지원정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의사표현 및 주장이 가능한 위탁아동(종결아동 포함)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함. 마지막으로 전북지역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와 시군 및 읍면동의 가정위탁보호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가정위탁보호사업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실천 현장에서 경험하는 주요 현안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가정위탁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제 1절 위탁유형별 위탁 부모 및 아동 대상 심층면접조사

가. 위탁유형별 부모 대상 면접조사

1) 조사개요

○ 참여대상자 및 조사방법

- 전북지역의 가정위탁보호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면접조사에 참여하는 위탁부모를 지역(시·군)과 가정위탁보호 유형(대리양육, 친인척양육, 일반가정양육) 및 위탁보호 아동의 연령(영유아기, 초등기, 중고등기, 보호 연장기)으로 세분화 선정하였고, 최종 면접조사에 참여한 위탁부모 총 27명이었음
- 위탁부모로 참여한 대상자는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로 본 연구의 목적과 안내를 공지한 뒤 이에 동의한 위탁 부모를 중심으로 실시함

- 2018년 6월 30일 기준 대리양육 411세대, 친인척 125세대, 일반위탁가정 39세대 중 면접조사에 참여한 위탁부모는 대리양육 9명(위탁아동 17명), 친인척 6명(위탁아동 7명), 일반가정위탁 12명(위탁아동 16명)임
- 면접조사는 주로 참여대상자의 자택, 주거지 근처 조용한 카페 등에서 1:1 개별심층면접으로 실시함. 면접조사 시작 전에 본 조사의 목적과 더불어 참여대상자의 익명성 보장 및 면접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언급하였고, 면접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함. 평균 면접시간은 최소 40분 이상 최장 1시간 이상이 소요됨
- 면접조사 기간은 2019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약 15일 정도 소요됨

○ 주요 면접내용

- 가정위탁보호 및 국내입양 관련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위탁부모 대상 위탁아동의 양육 및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위탁보호 시 어려운 점, 현 지원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및 개선안, 필요 정책육구 및 지원방안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을 반구조화 형식으로 구성함
- 면접내용은 위탁부모 중 혈연관계에 있는 대리양육과 친인척양육과 제3자인 일반인이 하는 일반가정위탁과 구분하여 약간의 차이를 두었음. 즉 대리양육과 친인척 양육의 경우 가정위탁보호의 대상인지에 대한 인식여부를 파악한 반면, 일반가정위탁은 위탁의 동기와 알게 된 경로 등을 파악함
- 면접내용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됨. 첫째, 위탁 부모와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위탁부모 연령, 직업, 학력, 월평균 소득수준, 동거인 수 및 위탁아동 수, 종교, 총 위탁경력, 거주지역 등을 살펴보았고, 위탁아동의 경우는 성별, 연령, 위탁된 사유, 위탁기간, 형제 수, 친부모의 상태 등을 살펴봄
- 둘째, 가정위탁 관련사항으로 가정위탁 참여 동기, 위탁양육으로 소요되는 월 비용, 위탁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위탁아동 양육 시 문제점, 가정위탁에

따른 만족도 등을 파악함

- 마지막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지원사업의 평가 및 정책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사업(위탁가정·아동)의 평가 및 개선사항, 센터 및 시·군·구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요구사항 등 정책욕구 등을 파악함

○ 분석방법

- 면접조사를 통해 얻은 녹음내용을 여러 번 반복 들으면서 전사한 뒤, 전사된 녹취록과 면접조사 시 필사한 연구노트 자료를 반복 읽으면서 의미 있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2) 분석결과

(1)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위탁부모는 총 27명임. 위탁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리 위탁부모 9명(위탁아동 17명), 친인척 위탁부모 6명(위탁아동 7명), 일반 위탁부모 12명(위탁아동 16명)임. 위탁부모들의 평균연령은 61.3세이며, 유형별로는 대리의 경우 68.4세, 친인척의 경우 55.6세, 일반의 경우 58.8세로 대리위탁부모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반 위탁부모의 연령이 높게 나타남
-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대리위탁부모의 경우 무학 2명, 초졸 2명, 중졸 4명으로 학력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인척과 일반위탁부모는 고졸 혹은 대졸이 대부분이었음. 대리의 경우 외조모 4명 친조모 5명으로 친조모가 1명 더 많았으며, 친인척의 경우 이모 1명, 이모할머니 1명, 고모 4명으로 고모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월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대리양육의 경우 월 가구소득이 전혀 없거나 약 50만원 정도가 대부분이었으며, 친인척과 일반양육의 경우 대부분이 월

200만원 이상의 일정한 가구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위탁부모들의 평균 위탁기간은 5.87년으로 나타났으며, 위탁유형에 따라 대리의 경우 7.2년, 친인척의 경우 5.8년, 일반의 경우도 친인척의 경우와 동일하게 5.8년으로 나타남. 한편, 대리양육의 위탁기간은 친인척과 일반 양육 보다 약 2년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길며, 대리 및 친인척의 경우 위탁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
- 대리 및 친인척의 경우 위탁아동이 행정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통해 지원 혜택을 받게 된 기간은 1년에서 7년일지라도 위탁가정에서 위탁아동과 실제적으로 생활한 기간은 그보다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남. 즉, 위탁아동의 실질적 위탁기간과 행정절차 상 가정위탁보호사업 지원 혜택을 받은 기간간의 차이는 평균 4.9년이었고, 최대 12년까지 나타남. 이는 위탁아동이 이미 4~5년 전부터 조부모 및 친인척과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하다가 뒤 늦게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주위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되거나 혹은 지역주민센터의 공무원에 의해 가정위탁보호의 사례로 발굴되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혜택을 받게 된 경우임
- 위탁아동은 3명을 제외한 모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었으며, 월 양육보조금 15만원과 기초생활수급에 따른 약 55만원의 지원금 및 5세 미만의 위탁아동은 양육수당 10만원 등을 지원받고 있었음
- 위탁아동들의 위탁사유를 살펴보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사유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미혼모로 아이 키울 환경이 안 되는 경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부나 모의 사망과 더불어 나머지 부모의 연락두절, 사채로 인한 부와 모의 연락두절, 방임으로 인한 순으로 나타남
- 친부모와의 현재 접촉여부를 살펴본 결과, 총 27개의 위탁가정 중 20개의 위탁가정의 아동들은 친부모와의 연락이 현재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지 위탁가정 2가구만이 친부모와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위탁유형별 부모의 일반적 특성

번호	지역	위탁 유형	이동연령 (성별)	위탁된 사유	위탁부모						친부모 접촉여부	지원받고 있는 내용	
					연령 (학년)	현 아동 보호기간 (총 위탁기간)	위탁경험 아동 수	직업 (월 가구소득)	종교	친자녀 수 (연령)		위탁부모	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여부
1	전주	일반 (전문)	11세(남)	부 사망. 모 직장생활로 아동 방임	66세 (전년졸)	1년 (13년)	세 번째	주부 (200만원)	기독교 사모	3명 (37/35/17(입양))	정기적 접촉 (생일 1년2회)	15만원 40만원	기초생활수급 56만원
2	전주	일반	17세(여)	미혼모 출생, 양부모 사망, 혈연관계 부재로 위탁됨	72세 (대졸)	10년 (10년)	첫 번째	주부 (100만원)	기독교 사모	3명 (44/42/40)	없음	15만원	기초생활수급 55만원
3	전주	일반	10세(남)	이혼 후, 모 재혼, 부 가정위탁 신청	52세 (고졸)	4년 (12년)	세 번째	주부 (200만원)	기독교 사모	3명 (29/26/25)	없음	15만원	기초생활수급
4	완주	친인척 (고모)	12세(남)	이혼, 모 연락두절, 부 사업 실패로 수감 중	45세 (고졸)	2년 (6년)		주부 (300만원)		2명 (9세, 4세)	없음	15만원	기초생활수급 56만원
5	완주	친인척 (고모)	16세(남) 장애1급	이혼, 모 알콜중독 및 연락두절, 부 재혼	57세 (고졸)	3년 (11년)		공정일 (100만원)		1명 (23세)	없음	15만원	없음 장애아동수당
6	완주	대리 (친조모)	14세(여) 12세(여)	이혼, 모 연락두절, 부 사체로 떠돌이 생활, 연락두절	67세 (중졸)	5년 (12년)		파트타임 (약 50만원)		6명 (44세-36세)	없음	15만원씩	없음 후원금10만
7	전주	일반	10세(여)	출생 후 헤어짐. 모 다방일, 부 일용직	57세 (대졸)	2년 (9년)	다섯번째	어린이집원장 (500만원)	기독교	4명 (31세-26세)	모 전화 부: 가끔만남	15만원	기초생활수급 약 50만원
8	김제	친인척 (고모)	16세(여) 12세(남)	이혼 후, 부 사망, 모 연락두절	57세 (초졸)	6년 (6년)		주부 (300만원)		2명/쌍둥이 (32세)	없음	15만원씩	기초생활수급 약 80만원
9	부안	대리 (외조모)	6세(여) 발달장애	미혼모(장녀의 아이)	46세 (고졸)	6년 (6년)		주부 (약 50만원)		3명 (24세/18세/16세)	없음	15만원	기초생활수급 약 55만원
10	부안	친인척 (아모할머니)	23세(여)	미혼모, 출생 이후부터 연락두절	73세 (중졸)	6년 (8년)		주부 (약 50만원)		4명	없음	15만원	기초생활수급 약 50만원
11	군산	일반	37개월 (남)	미혼모, 아이 키울 환경이 아님	54세 (대졸)	1년 (1년 6개월)	첫 번째	부직 (약 50만원)	기독교	2명 (24세, 20세)	없음	15만원	기초생활수급 아동수당 약 68만원
12	익산	친인척 (이모)	15세(여)	모 사망(위암), 부 연락두절	50세 (고졸)	7년 (15년)		주부 (300만원)	기독교	1명 (4세)	없음	15만원	기초생활수급 약 56만원
13	익산	대리 (외조모)	13세(여) 12세(여)	모 사망(자살), 부 연락두절	69세 (중졸)	6년 (13년)		주부 (없음)		3명 (46, 44, 40)	없음	15만원씩	기초생활수급 약 80만원
14	익산	일반 (전문)	4세(남)	방임(아동학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위탁됨	63세 (대졸)	1년2개월 (14년째)	네 번째	목사퇴직 (약 200만원)	기독교	3명 (42/40/37)	없음	15만원 40만원	기초생활수급 약 50만원

(표 계속)

번호	지역	유탁 유형	이동연령 (성별)	유탁된 사유	유탁부모						친부모 접촉여부	지원받고 있는 내용	
					연령 (학력)	현 아동 보호기간 (총 유탁기간)	유탁경험 이동 수	직업 (월 가구소득)	종교	친자녀 수 (연령)		유탁부모	유탁이동 기초생활수급여부
15	남원	대리 (친조모)	22세(여) 17세(남)	모 연락두절, 부 신용불량자로 떠돌이 생활	75세 (무학)	5년 (17년)		주부 (없음)		3명 (47/45/ 42)	없음	15만원씩	기초생활수급 약 80만원
16	남원	대리 (외조모)	24세(여) 22세(여)	부와 모 모두 연락두절	72세 (무학)	10년 (17년)		주부 (없음)		1명 (47세)	없음	15만원씩	기초생활수급 약 80만원
17	남원	대리 (친조모)	4세(여)	모 연락두절, 부 행방불명	60세 (초졸)	7개월 (4년)		농사/소일거리 (약 50만원)		3명 (37/35/33)	없음	15만원	기초생활수급 아동양육수당 약 55만원
18	임실	일반	17세(여)	부와 모 모두 연락두절	62세 (대졸)	1개월 (12년)	그룸홈에서 전환	목회 (약 200만원)	기독교	2명 (35/32)	없음	15만원	기초생활수급 약 55만원
19	임실	일반	17세(남) 15세(여)	모 사채로 인한 행방불명, 부 사채 갚기 위해 부양 힘든 상황	58세 (고졸)	7년 (7년)	첫 번째	파트타임 (약 300만원)	기독교	2명 33/32	부만 명절 때 만남	15만원씩	기초생활수급 약 80만원
20	임실	일반	20세(남) 16세(여) 14세(남)	부와 모 모두 행방불명	57세 (고졸)	10년 (10년)	첫 번째	목회 사모 (약 200만원)	기독교	2명 (38/37)	없음	15만원씩	기초생활수급 약 100만원
21	전주	일반	15세(여) 8세(여)	15세 - 미혼모, 양부모 연락두절 8세 - 이혼 후, 부모 연락두절, 친조모와 언니 2명 서친거주	56세 (대졸)	10년/5년 (10년)	두 번째	목회사모 (약 150만원)	기독교	2명 (31세/29세)	15세: 없음 8세: 가끔	15만원씩	기초생활수급 각자 약 55만원
22	진안	일반	13세(여)	미혼모, 출생 45일째 유. 부와 모 모두 행방불명	48세 (대졸)	13년 (13년)	첫 번째	목사사모 (약 200만원)	기독교	2명 (24세/20세)	없음	15만원	기초생활수급 약 55만원
23	진안	일반	24세(여) 지적장애	가정폭력, 모 연력, 부 연락두절	62세 (대졸)	11년 (20년)	다섯 번째	제가복지센터원장 (약 300만원 이상)	기독교	2명 (33세 / 31세)	가끔	15만원	기초생활수급
24	진안	대리 (친조모)	20세(남) 16세(남)	이혼 후, 모 연락두절, 부 사망	67세 (중졸)	13년 (13년)		주부/농사 (약 50만원)		2명/1명사망 (46세/42세)	없음	15만원	없음
25	무주	대리 (친조모)	21세(남)	이혼 후, 부 연락두절, 모 가끔 연락	86세 (중졸)	9년 (9년)		기초수급 (약 30만원)		3명 (58/56/54)	모만 가끔	15만원	기초생활수급 약 55만원
26	무주	대리 (외조모)	23세(남) 19세(여) 18세(여) 16세(남)	이혼 후, 부 연락두절, 모만 어쩌다 한 번씩 연락	74세 (초졸)	10년 (15년)		기초수급 장애수당 (약 40만원)		6명/2명사망	모만 아주 가끔연락	12만원씩	기초생활수급 약 100만원
27	무주	친인척 (고모)	19세(남)	이혼 후, 부 신용불량, 알콜중독 모 연락두절	52세	11년 (17년)		사과농장일 (약 200만원)		1명 (29세)	부만 가끔연락	15만원	기초생활수급 약 50만원

(2) 주요 분석결과

- 유형별 위탁부모의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실태 및 어려움, 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센터 및 시·군·구와 읍·면·동으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정책적 욕구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리함
- 위탁부모의 경험실태와 어려움 및 지원정책 욕구 등에 대한 분석결과 내용에 있어서 가정위탁보호의 유형별(대리양육, 친인척양육, 일반가정위탁) 특성을 구분하여 나타내기 위해 괄호 안에 가정위탁보호 유형을 별도로 기입함

〈표 4-2〉 위탁부모 대상 면접조사에 따른 주요 분석결과

구분	주요 내용	
가정위탁 보호 실태 및 어려운 점	정보취득 과정	(대리/ 친인척)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정보부족, 처음부터 지원받지 못함 일반위탁가정 저조한 원인 :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식저조, 위탁아동의 부족, 잘못된 편견 (대리) 열악한 주거환경과 취약한 정보접근성
	양육·보호 과정	(대리) 위탁아동의 학습과 교육 및 진로 지원에 대한 관리·지도 부재 위탁부모의 권리행사에 대한 한계 (친인척) 어쩔 수 없이 위탁아동을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가족갈등 발생 친가정으로의 복귀 어려움 : 친부모의 행방불명·연락두절로 위탁보호 장기화
	행정처리 과정	(일반) 기초생활수급 비용에 대한 영수 증빙 처리의 불편함 (대리) 연장보호아동의 경우 아르바이트는 필수,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의 두려움
	필요 지원 정책 욕구	(대리) 위탁아동의 학습지원과 진로와 고민 상담을 위한 멘토 지원 (친인척) 위탁아동의 심리치료 지속 지원 (일반) 일관된 양육을 위해 위탁부모와 친부모 간의 부모역할 협의·조정 지원 (일반)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관심과 지원 필요 (일반) 일반위탁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상급학년 진학에 따른 경제적 지원 현실화 사춘기 진입 및 사춘기 위탁아동에 대한 대처방법(교육과 상담) 지원 위탁아동 관련 서류준비 시 행정기관의 적극적 도움 지원

① 유형별 위탁부모의 가정위탁보호 실태 및 어려운 점

- 분석결과, 가정위탁보호 과정에서 겪는 경험실태 및 어려움은 크게 3가지 유형(정보취득의 어려움, 양육·보호과정의 어려움, 행정처리 과정의 어려움)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었음

가. 정보취득 과정에서의 가정위탁보호 실태 및 어려움

□ (대리/친인척)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정보부족, 처음부터 지원 받지 못함

- 대리양육 및 친인척양육의 위탁부모는 아동을 데려온 당시부터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알고 그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매우 적었음.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2년 전부터 위탁아동과 함께 생활함.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알게 된 경로는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변 지인을 통해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알게 된 경우였음. 이에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보다 강화된 홍보가 필요하며, 공무원 대상 가정위탁보호사업 관련 교육 강화와 다수의 사람들이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에 따른 인식개선이 필요함

□ (대리) 열악한 주거환경과 취약한 정보접근성

- 대리양육의 경우 대부분이 전북의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의 조부모와 거주하는 경우로 주거환경이 다른 위탁가정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함. 대문과 집의 울타리가 없거나 화장실과 부엌도 집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방의 개수와 크기도 한정되어 있어 비좁은 곳에서 비위생적으로 매우 취약하게 생활하고 있었음
- 또한, 고령의 조부모는 학력수준이 낮고, 빠르게 바뀌어가는 정보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정보 습득 능력 부족과 정보 접근성의 제약이 큼. 이에 은행업무의 어려움과 가정위탁보호 관련 각종 변화된 지원혜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매우 취약했음

□ 일반위탁가정 저조한 원인 :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식 저조, 위탁아동의 부족, 잘못된 편견

- 면접조사에 참여한 일반가정 위탁부모 대상 일반위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함. 먼저 일반가정 위탁부모들의 위탁동기를 살펴보면,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미리 알고 시작한 것보다는 이미 위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동사무소 직원이나 지인의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뒤늦게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다음으로 항상 어려운 아동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던 차에 가정위탁보호를 하고 있는 지인의 소개로 시작한 경우, 광고지를 보고 본인이 직접 찾아가 시작하는 경우 등이 있었음. 이와 같은 사실은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저조함을 나타냄
- 한편, 일반가정위탁보호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첫째, 일반가정의 위탁부모 대기자는 있으나 일반가정에 위탁될 위탁아동이 없다는 점, 둘째, 친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여유로워지는 40~50대 종교인들이 일반가정위탁을 하고 싶어도 위탁가정 선정 시 위탁아동에 대한 사랑과 헌신, 사명과 잘 돌봐주고 싶은 마음가짐 보다는 경제적·외형적·형식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 셋째, 가정위탁이란 희생과 봉사가 주가 되고 사랑과 사명 등으로 위탁아동들을 보호·양육함에도 주위의 반응과 시각이 일반가정위탁을 돈 버는 목적의 사업/직업이라는 잘못된 편견이나 인식 부족으로부터 오는 오해 등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마지막으로 가정위탁보호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위탁아동들을 돌보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음. 즉, 일반가정위탁이 저조한 이유로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을 꼽았음(40~50대 종교인들에게 홍보 필요, 은행·버스정류장·학교·어린이집·유치원 등에 홍보과 인식개선 필요)

나. 위탁아동 양육·보호 과정에서의 가정위탁보호 실태 및 어려움

□ (대리) 위탁아동의 학습과 교육 및 진로 지원에 대한 관리·지도 부재

- 가정위탁보호 유형 중 대리양육이란 조부모에 의한 양육으로 조부모는 대

부분이 학력수준이 낮고, 고령으로 위탁아동과의 연령차 및 세대차이가 컸음. 이로 인해 생각과 사고방식, 정보습득 방식 등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된 경우가 많았음. 또한, 조부모는 현 교육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탁아동이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학습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여 학습지도 및 지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음. 즉, 초등학교 고학년의 위탁아동부터는 조부모의 학력수준 등의 한계로 학습과 교육 및 진로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도를 전혀 해줄 수 없는 상황으로 학업과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 큼. 조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은 있지만, 최대한 위탁아동의 식사와 잠자리 등 일생 생활을 도와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 이에 학업지원 강화, 학원비 및 학비 지원, 진로지도와 함께 자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함

□ (친인척) 어쩔 수 없이 위탁아동을 받아들여짐에 따라 가족갈등 발생

- 친인척가정위탁의 경우 위탁아동을 새로운 가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과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부갈등, 시댁/외가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등 가족관계 내 긴장과 스트레스가 지속 발생함에 있어 가족원 모두가 힘들어함. 남편 혹은 부인 형제자매의 자녀(위탁아동)를 갑작스럽게 어쩔 수 없이 도맡아 양육과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갈등 발생, 의심, 위탁아동과 본 자녀와의 갈등, 본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 위탁아동의 친부모에 대한 원망 등 심리·내적 긴장과 불화가 많았고, 가족해체의 문제도 나타났음. 위탁가정의 이러한 가족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위탁아동과의 긍정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가족상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위탁부모의 권리행사에 대한 한계

- 유형별 위탁부모 모두가 일제히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과 보호를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위탁아동에 대한 위탁부모

로서의 권리행사가 전무하다는 점임. 즉, 위탁아동에 대한 법적 친권이 제한되어 있어 위탁아동을 위한 핸드폰 개통, 보험가입, 은행계좌 및 청약통장 개설 뿐 만 아니라 병원에서의 소견서 발급, 학기 초마다의 서류제출, 해외여행 준비를 위한 서류 발급 등에 있어서 행정업무 처리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상황임. 그리고 위탁아동에게 위급한 사고발생 시 위탁부모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음에 위탁아동의 안전한 보호에 무력감을 느낌. 무엇보다 친부모와의 연락이 완전 두절되었을 경우 친부모의 연락만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막막한 상황임. 이에 친부모와 동등하게 위탁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권한과 역할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시급함

애들 아빠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핸드폰이 고장나서 쓰지도 못하는데 당사자 본인이 아니면 해지가 안된다 해서 매달 아까운 돈만 나가고 있어요. 애들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당사자만 된다고 하니.. 법정대리인이나.. 이를 어떻게 해.. 그저 아까운 돈만 매달 들어가.. 돈도 없는데... 이것 좀 해결해줘요... (no 6)

매년 학기 초마다 (가명)지훈이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최대한 친부모와 연락을 하려해도.. 잘 되지 않으면 담임 선생님에게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지훈이가 가정위탁보호 되고 있음)을 알려야만 하는게... 마음아파요.. 이왕이면 지훈이가 가정위탁이란 것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도 서류를 떼주거나..동사무소에서는 지훈이가 가정위탁보호 대상이란 것을 알고 있으니.. 친부모가 아니어도 알아서 필요한 서류를 떼어주면 좋겠어요..(no3)

□ 친가정으로의 복귀 어려움 : 친부모의 행방불명·연락두절로 위탁보호 장기화

- 대리양육 및 친인척 양육의 위탁아동 대부분은 친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한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 등 소재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거나,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위탁사유로 맡겨져서 친가정으로의 복귀가 상당히 어려워 친가정 복귀 비율이 매우 저조함. 무엇보다 대리양육 및 친인척 양육의 경우 친부모와의 연락두절로 친가정 복귀 프로

그램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어서 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으로 종결될 때 까지 가정위탁보호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한편,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대리양육 및 친인척 양육보다는 상대적으로 친 부모와의 만남과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지만 친부모가 자립하여 위탁아동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미흡으로 위탁보호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 이에 장기간 위탁보호 되고 있는 위탁아동의 증가로 위탁아동의 자립지원 관련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다.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가정위탁보호 실태 및 어려움

□ (일반) 기초생활수급 비용에 대한 영수 증빙 처리의 불편함

- 가정위탁보호 유형들 중 특히, 일반위탁부모의 경우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위탁아동이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비용에 대해 영수 증빙 처리를 행정기관(지역의 담당 공무원)에 매달 준비하여 제출하고 확인 받아야 함에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토로함. 실질적으로는 위탁아동의 양육을 위해 의·식·주에 관련된 비용 이외에도 사교육비, 여가문화비 등 국가 및 도에서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양육보조금과 기초생활수급 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사비로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으로 지원되고 있는 비용에 대한 영수 증빙 처리를 매달 혹은 분기별로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함에 불편함, 의심받고 있음에 대한 마음 상함 등을 토로함

□ (대리) 연장보호아동의 경우 아르바이트는 필수,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의 두려움

- 대리양육의 경우 조부모의 근로활동 부재로 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과 기초생활수급 지원금만으로 조부모와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음. 특히 연장보호아동의 경우 부족한 금액은 스스로 메워야 하고, 학교 수업료 이외 실습비나 용돈을 조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그러나 아르바이트 비용이 전산에 잡히거나 조금이라도 일정 한도를 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토로함. 항시 아르바이트를 함과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수급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일자리 중에서도 저임금 일자리 혹은 전산 상 아르바이트 비용이 잡히지 않은 취약한 음지의 일자리만을 선택해야 만하는 상황이었음. 연장보호 아동의 이러한 상황을 점주들은 역이용하여 일한 시간만큼의 대가를 주지 않고 돈을 떼이는 사례도 있었음

② 가정위탁보호 시 필요한 지원정책

□ (대리) 위탁아동의 학습지원과 진로 및 고민 상담을 위한 멘토 지원

- 가정위탁 유형 중 특히 대리양육의 경우 조부모의 낮은 학력수준으로 위탁아동의 학습지원과 진로지원 및 진로에 대한 지도·관리가 미흡하여 중·고등학생 위탁아동을 위한 진로 지원에 한계가 있음. 무엇보다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양육보조금으로는 중·고등학생인 위탁아동의 학습지원을 위한 국·영·수 학습 학원비 및 예체능 사교육비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사회 연계 학습·교육 지원이 부재한 경우 학습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전북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교통의 접근성 제한, 지리적 한계, 지역사회 자원연계 부족 등으로 학습지원과 진로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위탁아동의 학습능력 향상과 진로 고민 및 지원을 위해 학습과 교육 지원을 위한 학원비 지원, 지역사회 연계 1주 한 번씩 국어, 수학, 영어 방문 학습지 및 문제집 지원, 멘토 혹은 재능기부자 등이 농촌지역까지 직접 방문해서 위탁아동들의 학습과 진로 등을 함께 고민하고 상담해주며 지도·관리해 줄 수 있는 멘토(방문교사) 지원을 필요로 함

□ (친인척) 위탁아동의 심리치료 지속 지원

- 부모의 이혼 및 사망과 유기 등 다양한 이유로 친가정 밖으로 밀려난 위탁아동들은 심리 내적으로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가까이에서 혈연관계의 조부모와 고모/이모가 돌봐주고 사랑해준다 하더라도 위탁아동의 심리정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안정감을 찾지 못해 다양한 형태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고 있음. 즉 말을 안 하거나, 표현이 거의 없거나,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주의력 결핍, 산만, 우울 등의 심리정서 문제에서부터 과잉행동장애, 도벽, 거짓말 등 문제 행동까지 지속 심리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사춘기가 도래하여 심리 내적으로 그리고 사고가 깊어짐에 따라 보다 예민하고 예측 불가능한 정서표현으로 위탁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위탁아동의 심리정서 문제와 문제행동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당 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이에 위탁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기간만큼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함

□ (일반) 일관된 양육을 위해 위탁부모와 친부모간의 부모역할 협의·조정 지원

- 일반가정 위탁부모는 친부모의 어려운 상황이 정리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및 심리적 자립능력이 가능한 일정기간 동안 위탁아동을 양육·보호함. 그러나 일부의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을 양육·보호하는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와의 서로 다른 양육 및 교육관의 차이로 위탁아동에게 일관된 양육을 하기가 어렵고, 위탁아동은 이러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역 이용하거나 혼란을 겪는 어려움이 있음. 예를 들어, 일반가정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에게 안정된 가정 환경·친환경적인 음식제공·연령에 맞는 생활과 교육습관 등을 지원하고 형성해 주려는 반면, 친부모는 위탁아동이 원하는 모든 뜻과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인스턴트와 외식 위주로 식사하고 아동연령에 적절치 못한 환경에 노출(성인오락실, 게임방, 성인다방 등)시키거나 무절제한 핸드폰 사용 등으로 위탁아동이 위탁가정과 친가정을 오고가며 위탁가정의 양육과 교육관에 반항하거나 위탁가정에서의 적응을 저해하는 상황이 초래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건전한 위탁아동의 성장을 위해 친부모와 위탁부모 간의 서로 지켜야할 역할과 의견 및 행동 등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이 조정하는 등의 중간자적 매개 역할을 강력하게 지원 해주어야 함.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의 중재자적 매개 역할과 조정기능이 일반가정위탁부모와 친부모 및 위탁아동의 관계향상, 아동의 빠른 가정 적응, 올바른 성장 등을 유도할 것임

□ (일반)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관심과 지원 필요

-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정위탁보호 기간이 장기화 되고 결국에는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 짐.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중요 목표가 위탁아동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양육하고 친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가정 및 친부모 자립을 위한 관심과 지역자원 연계 및 프로그램 등이 거의 부재함
- 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친부모와 지속적인 연락 연계, 질병치료 지원, 알코올중독 치료 연계, 법적인 부분 연계 및 지원, 일자리 연계 등 친부모의 자립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해당 기초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크와 자원연계 및 지원이 필요함

□ (일반) 일반위탁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일반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을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함. 먼저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위탁부모는 급한 용무나 일정기간 집을 비울 경우 위탁아동을 돌봐줄 수 있는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주기를 요구함. 다음으로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간의 초기 관계적응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 위탁부모와 아동 간의 기질 및 성향·성격 파악 등이 가능한 성격유형검사나 심리·양육 상담 지원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를 요구하면서

위탁아동과 위탁부모가 함께 떠나는 여행 및 관계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기를 요구함

- 또한, 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 이후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에 대한 그리움, 상실감, 허무함, 우울함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심리 내적을 다루어주고 치료할 수 있는 심리상담 지원을 필요로 했고,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친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적응 상황 및 적응을 잘 하고 있음에 대한 소식, 사진 혹은 연락과 만남 등의 연계도 요구함. 마지막으로 위탁아동을 양육·보함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육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재충전을 위한 1박 2일 정도의 힐링 캠프 등도 요구함

□ 상급학년 진학에 따른 경제적 지원 현실화

-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이 상급학년으로 진학할수록 기본적인 의식주 이외 학원비, 의류비, 용돈, 계획 없이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장 힘들어 하였고, 위탁아동 또한 경제적 부족에 따른 학교생활의 어려움, 학습지원에 대한 어려움, 교우관계의 어려움 등이 가장 큼을 토로함. 즉,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과 기초생활수급비가 지원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기초생활만을 해결하는데 그치고 있음. 따라서 위탁아동의 연령대별 필요지원에 따른 양육보조금이 차등화되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대리양육위탁가정의 경우 위탁아동이 중·고등학생 및 20세 연장보호일 경우 무엇보다도 경제적 비용 부담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지적되었음

□ 사춘기 진입 및 사춘기 위탁아동에 대한 대처방법(교육과 상담) 지원

- 위탁부모들은 위탁아동들의 성장발달 단계 중에서도 특히 사춘기 진입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사춘기를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잘 보내기를 희망했

고, 위탁아동이 위탁부모에게 와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하는 염려와 걱정이 컸음

- 위탁부모들은 사춘기로 인해 위탁아동의 말과 표현의 부재, 이유 없는 반항, 심리 기저에서부터 발생하는 불만·불안·혼란·갈등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지원과 사춘기 위탁아동을 현명하게 대하는 대처방법들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고민과 양육 상담 지원을 통해 위탁아동이 사춘기를 완만하게 잘 극복하기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함

□ 위탁아동 관련 서류준비 시 행정기관의 적극적 도움 지원

- 가정위탁부모는 위탁아동에 대한 일정한 권한이 없어 위탁아동에게 필요한 서류 준비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위탁아동 친부모의 허락 또는 주민등록증 지참 및 위탁아동의 필수 참석 등으로 위탁아동이라는 낙인까지 찍히고, 더불어 눈총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심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복잡하고 힘든 상황임
- 이에 가정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일정기간 동안만이라도 위탁아동에게 필요한 서류들(핸드폰 개통, 은행에서의 통장 개설, 보험 가입 및 새 학기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서류, 해외여행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지역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때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의 적극적인 도움이 요구됨. 무엇보다 자주 바뀌는 담당 공무원들 간에 정확한 업무인계 및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에 대한 사전 정보 공유 등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실시되어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지원 받음에 있어 끊임이나,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업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상기시키는 일에 대한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없기를 요구함

나. 위탁유형별 위탁보호 연장 및 종결아동 대상 면접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가정위탁보호 과정에서의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간의 인식과 경험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위탁아동 중심의 가정위탁 보호·양육 실태와 자립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위탁보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지원받은 서비스의 만족도와 문제점 및 개선사항, 필요지원 정책 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실시함
- 현재 가정위탁보호 받고 있는 위탁아동 보다 연장보호 및 종결된 아동을 면접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자신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면서, 가정위탁 배치에서부터 위탁보호과정 및 자립과정과 종결과정을 전반적으로 경험하였기에 가정위탁보호 일련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실천적, 정책적 대안 제시가 용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임

○ 면접 참여대상자 및 조사방법

- 참여대상자 섭외를 위해 전라북도 가정위탁보호사업 담당 공무원과 자립전담요원의 협조를 통해 연장보호 아동 및 위탁보호가 종결된 아동들 중 가정위탁보호 유형을 고려하여 참여대상자를 의뢰받은 후, 의뢰받은 참여대상자들 중 면접조사에 동의한 아동을 중심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 연장보호아동 2명,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아동 2명, 총 4명이 면접조사에 참여함
- 면접조사 시작 전에 참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결과의 활용도, 면접내용에 대한 녹음 및 익명성 보장과 녹음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설명하였음

○ 면접내용 및 분석방법

- 면접을 위해 사전에 선행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함. 면접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위탁유형(위탁가정 가족원), 연령, 성별, 위탁된 사유, 위탁된 연령, 학력, 직업(근로여부), 월수입, 위탁가정과 동거여부 및 분리기간, 친부모 접촉여부 등 일반적 특성을 살펴봄. 둘째, 위탁된 사유, 위탁가정의 배치된 과정과 위탁가정에서의 생활(보호·양육)하면서 겪은 경험과 어려움 및 힘든 점 등 위탁가정에서의 생활실태, 셋째, 지원받았던 서비스 현황, 센터 종사자와의 접촉빈도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문제점과 개선사항, 센터를 통해 지원받고 싶은 사항 등, 넷째, 가정위탁보호 과정에서 또는 자립과정에서 도움받고 싶은 지원정책들에 대한 욕구 분석 등을 파악함
- 자료 분석은 면접조사 시 녹음한 내용을 반복 들으면서 전사한 뒤, 녹취록과 면접조사 시 필사한 연구노트 자료를 반복 읽으면서 의미 있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함

〈표 4-3〉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연장보호 및 종결 아동의 일반적 특성

구분	위탁유형 (기간)	연령 (성별)	위탁된 사유	위탁된 연령	학력	직업 (근로여부)	월 수입	종결 이후 기간 (위탁부모 동거여부)	친부모 접촉 여부
1	친인척 (12년)	21세 (여)	부모 사망	7세	고졸	중소기업 격리업무	160 만원	10개월 (혼자원룸 생활)	없음
2	대리 (24년)	24세 (여)	부 사망 모 연락두절	출생과 동시에	2월 졸업 예정	취업준비 중	기초수 급비용	자립지원금 받음	없음
3	친인척 (8년)	22세 (여)	모 가출 부 모름	14세	대학 3년	아르바이트	50만원	연장보호	없음
4	대리 (9년)	21세 (남)	이혼 후 부 연락두절 모 가끔연락	11세	대학 2년		기초수 급비용	연장보호	모만 가끔

2) 분석 결과

(1)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면접조사에 참여한 위탁아동은 총 4명임. 이 중 2명은 연장보호 위탁아동 이었고, 나머지 2명은 종결아동임. 위탁유형별로는 대리위탁아동 2명, 친인척위탁아동 2명임. 한 위탁아동은 작은집에서 이모집으로 위탁가정의 변경이 있었고, 대부분의 위탁아동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조부모와 친인척과 함께 살아왔는지, 위탁 보호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음

(2) 주요 결과

- 가정위탁 연장보호 및 종결아동 대상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 실태, 가정위탁으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 지원사업에 대한 한계와 개선사항, 센터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정책적 욕구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리함

〈표 4-4〉 위탁아동(연장보호 및 종결 아동) 대상 면접조사에 따른 주요 분석결과

구분	주요 내용
연장보호 및 종결아동 대상 가정위탁보호 실태 및 어려운 점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큼 가정위탁보호 아들이란 것을 친구들에게 비밀로 하려고 노력함
위탁보호 시 필요한 지원정책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원비 지원 및 학원 연계 신발·의류 지원 및 교복비 지원 진로탐색을 위한 직업인과의 만남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진학 및 진로·취업 결정 시 관련 전문가 상담과 지도 지원 필요 연장보호 및 보호종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 필요

① 위탁아동 관점에서의 가정위탁보호 실태 및 어려운 점

□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큼

- 면접조사에 참여한 위탁아동 모두는 가정위탁보호 유형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음.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위탁가정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있기에 학원 다니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꼭 다녀야만 하는 학원일 경우에는 위탁부모의 눈치가 보였으며, 이로 인해 위탁가정에 불화가 발생한 경험도 있었음을 토로함. 학원에 다니는 대신 되도록 방과 후 교실이나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받는 쪽으로 관심을 쏟음
-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메이커 신발 및 의류를 입는 것에 대해 부러움이 컸고, 나름대로 용돈을 모으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신발과 의류를 준비해 본 경험들도 이야기함. 항상 용돈이 부족하여 쪼개 쓰고, 교통비가 부족하여 걸어 다니기도 했으며, 대학 생활하는 지금도 생활비 부족으로 끼니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함.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족과 위탁부모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보다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거나, 대학 진학 시에는 희망진로와 관계없이 국립대학 위주로 원서를 넣거나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 할 수 있는 전공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음

□ 가정위탁보호 아들이란 것을 친구에게 비밀로 하려고 노력함

- 위탁아동들은 특히 중학교 사춘기 시절에 내가 가정위탁보호 아들이란 것을 주위 친구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긴장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학교생활에서도 국가지원 대상자란 것을 노출하기 꺼려했으며, 심지어 학교에 제출하는 가족관계 서류 내용도 거짓으로 진술하여 기입하기도 함

② 위탁보호 시 필요한 지원정책

□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원비 지원 및 학원 연계

- 위탁아동들이 절실히 필요한 지원서비스로 학원비 지원을 요구함. 학습능력 향상

을 위해 국·영·수학원과 함께 전 과목을 지도해주는 학원, 혹은 상업계 고등학생으로 컴퓨터 자격증과 회계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 다니고 싶은 학원에 등록하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학원을 다니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가장 많이 토로함. 특히, 예를 들어 미술, 무용, 음악, 체육 등을 배울 수 있는 예체능 전공 관련 학원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더 많아 위탁가정에 속내를 꺼내지 못한 채 스스로 포기한 위탁아동들이 다소 있었음

□ 신발·의류 지원 및 교복비 지원

-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최신 유행하고 있는 브랜드의 신발과 의류를 갖고 싶어도 단지 소망일 뿐 갖지 못했던 아쉬움과 함께 중·고등학교 입학 시 교복 준비 시에도 다소 큰 비용이 들어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경험을 토로함. 이에 위탁아동이 중·고등학생 시기에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신발과 의류 관련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위탁아동들에게 지원한다면 위탁아동의 자존심과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중·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교복비용을 양육부담금에서 조금 더 지원해 줄 필요도 있음

□ 진로탐색을 위한 직업인과의 만남 및 실질적인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위탁아동은 진로결정 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 확충을 요구함. 막연한 꿈과 진로라는 추상적인 상황에서 본인의 꿈(희망)이라고 생각되는 직업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직장인과의 현실적인 만남을 요구함. 이 만남을 통해 직업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및 직장 체험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다양한 자립준비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활성화 해주길 요구함
- 꿈(희망)의 진로에 있는 직장인과의 만남과 직업체험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을 유도하고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위한 진로설계 프로그램 등이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음

□ 진학 및 진로·취업 결정 시 관련 전문가 상담과 지도 지원 필요

- 면접조사에 참여한 연장 보호 및 보호 종결 아동 대부분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 사항(고등학교 계열과 전공 선택, 대학 및 전공 선택, 직업선택 등)을 주로 혼자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 인문계 혹은 상업계·공업계 선택 시의 고민, 대학과 전공 선택의 고민, 취업 준비 시 직장 선택의 고민을 혼자하고 결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자립준비의 어려움이 많음을 나타냄
- 적합한 진학 및 진로와 취업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누군가와의 속 깊은 상담으로 결정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함. 즉, 진학과 진로 및 취업 결정 시,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향후 미래를 내다보며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학과 진로 및 취업·직장 선택 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1:1 만남 등을 갖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함께 고민하고 지도 및 관리 받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연장보호 및 보호종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위탁아동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 만 18세 이상의 연장보호 아동과 보호 종결 아동을 면접조사 대상으로 한정함. 이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 담당자를 통해 위탁아동에 대한 섭외가 이루어졌으며 유형별 각 2명씩 총 6명을 계획하였으나, 위탁아동의 약속 취소 및 일정이 맞지 않아 총 4명만이 면접조사에 참여하게 됨. 대부분의 연장보호 및 보호 종결 아동은 여전히 적합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요구하였고, 자립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들을 요구함. 이에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연장보호 및 보호종결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적극적이고 개인 욕구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취업을 위한 각종 자격증 취득 지원, 보다 성장할 수 있는 자기계발 기회 확대,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경제·주거·금융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안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제 2절 현장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

본 절에서는 전북지역에서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와 시·군 및 읍·면·동의 가정위탁보호 사업 담당 공무원)를 대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 실천 현장에서 경험하는 주요 현안과 문제점 등을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가.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전북지역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시·군과 읍·면·동의 가정위탁보호사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는 목적은 첫째, 현장전문가 관점에서의 친가정·위탁아동·위탁부모의 객관적인 생활 및 양육실태 파악과 더불어 친가정·위탁아동·위탁부모의 연령별·사유별·지역별 등에 따라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각기 상이한 요구사항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접근하기 위함임
- 둘째로는 친부모·위탁아동 및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임
- 셋째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위탁가정으로 배치되는 과정, 배치되어 (사례) 관리되고 종결되는 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함
- 넷째로는 전북지역의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실현하는 핵심기관인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안과 문제점 및 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 모색,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 모색하고자 함

2) 참여대상자

- 본 연구에서의 현장전문가는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 및 시·군과 읍·면·동의 가정위탁보호사업 담당 공무원을 일컫음
- 구체적으로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 7명과 시·군과 읍·면·동 담당 공무원 5명 등 총 12명이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함

3) 조사방법

- 먼저 현장전문가 중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는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기관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면접조사가 가능한 요일에 두 차례 찾아가 지원센터 종사자 7명의 의견을 파악함
- 다음으로 시·군 및 읍·면·동 가정위탁보호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는 전북도청 가정위탁보호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각 시·군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에게 공문을 보낸 뒤 초점집단면접조사가 가능하다고 동의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조사가 실시됨
- 질문문항의 구성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반구조화 형식으로 문항들을 추출하여 현장전문가의 직종별로 총 3회의 조사가 실시됨. 구체적으로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면접조사가 가능한 일정별로 2회씩 나누어 실시하였고, 시·군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1회 실시함
- 면접시간은 집단 당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됨. 면접 장소는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본 연구진이 센터로 직접 가서 센터 내 상담실에서 진행하였고, 시·군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대상 조사는 본 연구원의 회의실에서 진행함

4) 면접 조사내용

- 현장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됨. 먼저,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성별, 학력, 근속년수 (총 경력), 담당업무, 직급 등을 살펴봄
- 다음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현장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본 위탁가정 유형별 친가정·위탁아동·위탁부모의 생활·양육 실태 및 애로사항과 이들이 요구하는 지원서비스 파악, 담당업무 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가정위탁보호 사업 담당 공무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자에게 요구하고 싶은 사항 등을 파악함
- 마지막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상의 어려움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필요 지원정책 욕구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파악함

5) 분석방법

- 모든 초점집단면접조사 내용은 참여대상자들의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녹음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녹취한 전사 자료와 면접 시 기입한 노트필기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도출함

나. 결과분석

1)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전북지역에서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 중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면접대상자는 총 12명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7명, 시·군 및 읍·면·동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 담당 공무원 5명이 참여함
- 먼저,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무경력은 약 2년으로 2017년 가

정위탁지원센터 법인이 바뀜으로 인해 종사자 인력이 새롭게 교체됨. 가정 위탁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연령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원이 된 26세 부터 많게는 34세까지로 평균연령은 30.7세로 대부분이 30대 초반이었고,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미혼이었음

〈표 4-5〉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 참여한 현장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구분	연령 (성별)	학력	직급	업무 (담당 사례수)	센터근무년수 (총경력)	결혼상태	전공/지역	
센터 종사자	1	32세 (남)	대졸		자립지원 + 상담원	2년(3년)	기혼	사회복지
	2	26세 (여)	대졸		상담원	2년	미혼	사회복지
	3	31세 (여)	대학원졸 (박사)		상담원	2년 (4년)	미혼	임상심리
	4	26세 (여)	대졸		상담원	2년 (2년 5개월)	미혼	사회복지
	5	31세 (여)	대졸		상담원	2년 (3년 4개월)	기혼	사회복지
	6	34세 (여)	대졸	과장	상담원	1년 (8년)	미혼	사회복지
	7	37세 (여)	대학원졸 (석사)	팀장	업무 총괄	2년 (10년)	기혼	사회복지
기타 공무원	1	38세 (여)	대졸	8급	아동복지전반	6개월 (5년)	기혼	익산시
	2	34세 (여)	대졸	7급	아동복지전반	1년6개월 (6년)	미혼	김제시
	3	39세 (여)	대졸	9급	가정위탁, 입양, 아동급식, 그룹홈 등	8개월 (8개월)	미혼	군산시
	4	32세 (여)	대졸	7급	기초생활수급	- (5년)	미혼	완주군 00면
	5	33세 (여)	대졸	9급	아동업무	1년 (2년)	미혼	남원시

- 조사에 참여한 시·군 및 읍·면·동 가정위탁보호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가정위탁보호사업 업무를 평균 8개월 정도 담당·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가정위탁보호사업 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8개월(1년 6개월) 정도로 나타남. 가정위탁보호사업 담당 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35.4세로 대부분이 30대 초·중반 이였고, 공무원의 총 근무경력은

평균 3.7년으로 짧게는 8개월, 길게는 6년으로 나타남.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미혼이었고, 공무원으로 입사 한 후 아동복지 전반 및 기초생활수급 관련 일과 함께 겸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 업무를 처음으로 담당·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주요 분석결과

- 현장전문가(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및 시군과 읍면동 가정위탁보호사업 담당 공무원)의 관점에서 살펴본 유형별 가정위탁보호의 실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과 지원방안 등을 구분하여 살펴봄

〈표 4-6〉 현장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주요결과

구분	주요 내용
현장전문가 관점에서 본 위탁유형별 가정환경 실태	(대리)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차이로 인한 대화단절, 학습·진로에 대한 지도감독 부재
	(친인척)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부담, 상급학년 진학에 따른 학습비·의류비 등 경제적 부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담당업무 과중 및 인력 부족
	짧은 업무경력으로 센터 종사자의 업무경험 및 전문역량 부족
	잡은 인사이동으로 담당공무원의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전문성 부족
	가정위탁지원센터와 담당공무원간의 상호연계성 부족
	요보호아동의 일반가정위탁보호 배치 시 신속성 부족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사항 및 지원방안	가정위탁보호사업 홍보 강화 및 인식개선
	가정위탁보호사업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및 간담회와 사례회의 강화
	일반가정위탁부모 인력 풀 구축 및 정보공유

(1) 현장전문가 관점에서 본 유형별 위탁부모와 아동의 실태

□ (대리) 경제적 어려움, 세대차이로 인한 대화단절, 위탁아동의 학교생활·학습·진로 등에 대한 지도 감독 부재

- 대리양육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비경제활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다른 가정위탁 유형보다도 더 크며 이로 인해 중·고등학생의 위탁아동들은 용돈 및 학습교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었음. 또한, 조부모와의 세대차이로 인해 의사표현과 사고방식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서로 간에 대한 이해부족과 대화단절이 심각함. 마지막으로 고령의 조부모는 낮은 학력수준 및 정보부족 등으로 위탁아동들을 먹이고 재우는 것 등 단순한 의식주 생활 유지만 시켜주는 한계로 위탁아동의 학교생활, 학습과 교육, 진로 등에 대한 지도·감독이 전혀 없으며, 사춘기의 위탁아동이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어려움과 조부모는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 대리위탁가정 대상 위탁아동의 학교생활, 학습과 교육 및 진로 등을 지도·감독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의 서비스 개발과 지원이 시급함

□ (친인척) 본인 자녀와 위탁아동 양육·보호로 양육부담, 상급학년 진학에 따른 학습비·의류비의 경제적 부담

- 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위탁아동 보호와 더불어 본인 자녀의 양육을 겸해야함에 있어 양육에 대한 부양부담이 크게 나타남. 또한, 본인의 자녀와 위탁아동간의 관심 배분 및 위탁아동이 조금이라도 차별받고 있다는 지각을 할지도 모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존재하였음. 마지막으로 위탁아동의 성장과 더불어 고학년으로 진학함과 동시에 사교육비, 학습비, 의류비, 식비 등의 경제적 부양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친인척위탁가정 대상 위탁아동 고학년 진급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교육비와 학습비 및 의류비 등의 경제적 비용을 분담해 줄 수 있는 후원 연계 및 지역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 지원 내용이 부가적으로 필요함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

□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 도민 뿐만 아니라 실천 현장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조차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담당한 이후에 본 사업 관련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서 그 간에 발생하는 공백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함. 사회 현장에서는 이미 조손가족으로 그리고 혈연관계에 있는 조카 등을 어쩔 수 없이 돌보고 있다 가 가정위탁보호사업 관련 정보를 최근에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안타까운 사연으로 지인을 통해 미혼모의 아이 혹은 부모가 없는 아동을 오래전부터 양육하다가 다행스럽게도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는 등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담당업무 과중 및 인력 부족

-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추진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는 과중하나 종사 인력 수는 부족한 실정임. 현재(2019년 1월 기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센터장 이외 총 11명으로 상담원 7명, 자립지원 1명, 심리치료사 1명, 사무행정직 1명, 총괄팀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상담원 1명당 평균 담당 사례수가 약 150사례가 되며, 매년 신규로 발굴되어 배정되는 사례수를 고려하면 1년 담당 사례수가 약 180사례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자립지원 담당자는 1명으로 15세(중3)부터 19세(고3)까지의 자립을 준비하는 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계획 및 1년에 5번 정도의 자립준비 교육 등을 시행해야 하고, 자립한 아동 대상 5년간의 사후관리까지 상당량의 과중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 무엇보다 14개 시·군을 이동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와 시간적 제한으로 사례관리의 전문성 저하와 지속성·집중성의 어려움 등으로 질 높은 서비스의 한계와 더불어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즉, 사례관리 시 내실 있고 충분한 상담, 욕구파악, 필요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부족, 부모교육과 홍보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내용과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때 최소 2명 이상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인력 증원과 종사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무엇보다 새로운 인력 구성면에 있어서 자립지원 전담 직원의 확보가 시급하며,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 증원도 필요함. 더 나아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시·군 차원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분소 배치 및 상담원 확충, 지역별 유관기관 협의 및 연계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체계 운영 확보도 필요함

□ 짧은 업무경력으로 센터 종사자의 업무경험 및 전문역량 부족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현 기관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3년 이상 업무경험을 가진 종사자는 7명 중 단 1명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이 약 2년 정도의 업무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위탁보호사업 추진 시 업무의 경험 부족, 내부의 동력 및 내공 등이 다소 약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근무기간 장기화 유도로 업무경험 축적 및 능력 개발이 마련되어야 함. 최소한 가정위탁보호사업 업무경험이 5년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업무역량을 장려할 수 있도록 센터의 운영체제 마련 및 지원방안이 필요함

□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공무원의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

- 시·군 및 읍·면·동의 가정위탁보호사업 담당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빈번해서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업무 이해부족과 사업 추진 시 전문성 부족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시·군 및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이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신규 직원이거나 수습직원 혹은 대신하는 업무로 추진하고 있었음. 이로 인해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은 담당공무원의 가정위탁보호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다양

한 지원 혜택들을 수혜 받지 못하고, 요보호아동 배치 시 가정보호 보다 시설보호가 우선 배치되는 등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음

- 가정위탁보호사업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및 신규 및 수습직원이 대신하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 대상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업무이해 교육과 더불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센터의 노력이 필요함
- 그리고 시·군 및 읍·면·동의 가정위탁보호사업 담당 공무원은 정책추진 경험이 전혀 없는 이제 막 입사한 신규 직원이거나 아동복지와 전혀 다른 분야를 주업무로 하면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부업무로 겸하고 있는 사무분장형태가 많았기에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과 관심부족 및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가정위탁 부모와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가정위탁보호 및 입양,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수당 등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담당하는 전담인력 마련이 필요함

□ 가정위탁지원센터와 담당공무원 간의 상호연계성 부족

- 시·군 및 읍·면·동의 가정위탁보호사업 담당공무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들 간의 상호연계 부족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업무연계와 사례관리 및 관련 정보공유 등에 있어 그 흐름과 지속성을 방해받고 있음. 가정위탁보호사업 관련 업무 추진 시 정보전달에 있어서의 혼선, 협력관계 분절 등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들이 업무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큼

□ 요보호아동의 일반가정위탁보호 배치 시 신속성 부족

- 시·군 및 읍·면·동에 요보호아동 발생 시 요보호아동의 보호배치는 담당공무원 개인의 주관에 많은 영향을 미침. 즉,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 배

치 상황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신속한 보호배치가 어려운 가정위탁보호보다 양육시설 및 그룹홈 등의 아동양육시설로 우선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 많았음

- 요보호아동의 보호 배치 시 특히 일반가정위탁보호 절차는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배치에 있어 다소 복잡한 절차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요보호아동은 일반위탁가정에 배치되어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함. 이에 관련 공무원들이 요보호아동이 그 지역에 발생했을 때 양육시설 보호보다 가정보호위탁을 우선시 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 인식 제고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일반위탁부모의 인력 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담당 지역에 가정위탁보호로 배치할 수 있는 상황판단을 지원할 필요 있음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사항 및 지원방안

□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식개선

-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함. 이에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 강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급함. 일차적으로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들의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일반 시민들도 가정위탁이란 용어의 이해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여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캠페인, 언론보도, 광도 등으로 홍보가 필요함. 이로 인해 지속적인 위탁가정 발굴 및 위탁부모 발굴로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활성화 될 것임

□ 가정위탁보호사업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및 간담회·사례회의 강화

- 담당 공무원의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업무 이해정도에 따라 요보호아동 발생 시 아동양육시설에 우선 보호조치 되거나 가정위탁보호에 우선 보호

조치 되는 상황이 발생함. 또한, 가정위탁보호 대상인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혜택과 지역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의 지속성과 집중도의 차이가 발생함. 이에 우선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가정위탁보호사업 관련 인식개선과 더불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와 역할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며, 위탁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와 담당 공무원들 간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사례회의가 연계 및 협조되어야 함. 이로 인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요보호아동 중심의 보호조치 체계가 자리 잡게 될 것임

□ 일반가정위탁부모 인력 풀 구축 및 정보공유

- 요보호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설 우선 배치되어 시설보호의 비율이 높음. 이러한 상황은 아동복지 담당공무원이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상호연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됨
- 즉, 담당공무원의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이해 수준과 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상호연계정도, 일반가정위탁부모의 인력 풀 구축에 관한 정보 공유정도에 의해 요보호아동이 가정위탁보호, 특히 일반가정위탁보호로 보호 조치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담당공무원이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와 소통이 원활하다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중요성과 보호조치 시 아동중심의 보호조치 과정으로 결정되어 쉽고 간단한 시설 우선 배치보다 가정위탁보호를 우선 배치하게 되며, 보호조치 과정에서도 사례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논의하거나 의견수렴 등 요보호아동의 관점에서 최우선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제3절 소결

본 절에서는 먼저 유형별 위탁 부모와 종결아동 대상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나타난 위탁 보호·양육 관련 전반적인 실태와 현 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향과 정책적 욕구에 대한 연구결과와 가정위탁보호업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대상 FGI를 통해 실천 현장에서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 및 필요 지원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를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함

다음으로 유형별 위탁부모와 종결아동 및 현장전문가 대상 면접과 FGI조사를 통해 나타난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실태 및 문제점, 개선사항과 정책적 욕구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정위탁보호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쟁점들을 도출함

가. 가정위탁보호의 실태 및 정책적 욕구조사 결과 요약

□ 유형별 위탁 부모 및 종결아동 대상 면접조사 결과

- 먼저, 유형별 위탁부모 대상 면접조사 결과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봄. 위탁부모의 가정위탁보호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 대리양육과 친인척 양육의 경우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정보 부족으로 위탁아동이 맡겨지는 날부터 가정위탁보호의 지원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많았음. 둘째, 대리양육의 경우 특히 위탁아동의 학습과 교육 및 진로 지원에 대한 관리·지도가 부재하였고, 대학진학으로 연장보호아동이 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양육보조금으로는 대학교 생활비, 학교등록금, 용돈, 실습비 및 교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가 필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아르바이트 수입이 전산 상으로 잡히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음. 셋째, 친인척 양육의 경우 형제자매의 자녀를 어쩔 수 없이 도맡아야 한다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배우자의 원가족과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본인자녀와 위탁아동간의 불화 등에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각했음. 넷째, 일반위탁부모의 경우 위탁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 비용에 대한 매달 혹은 분기별 영수 증빙 처리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함. 다섯째, 유형별 위탁부모 모두가 가장 절실히 느끼는 어려움으로 위탁아동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권리행사를 전혀 할 수 없음에 대해 힘들음을 토로함. 즉, 학기 초 서류 발급, 핸드폰 개통, 은행에서의 통장개설, 보험 청구 및 보험 가입 시 법적 권리행사의 한계로 어려움과 좌절 등을 겪음. 여섯 번째, 대리 및 친인척의 경우 친부모의 이혼 이후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 혹은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남과 동시에 연락 두절된 사례가 많아 위탁아동들의 친가정으로의 복귀 비율이 매우 저조하며 위탁보호의 장기화 현상이 두드러짐. 마지막으로 일반위탁가정이 저조한 이유는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절대적인 홍보 부족과 위탁부모로의 선전기준이 희생과 봉사 및 사랑이 되기보다는 경제적 측면을 위주로 살펴봄에 대한 아쉬움을 보였고 일반위탁가정에 배치되는 위탁아동의 부족도 일반위탁가정이 저조한 이유로 꼽음

-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유형별 위탁부모가 가정위탁보호 시 필요로 한 지원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대리위탁부모의 경우 위탁아동의 학습지원과 진로 및 고민 상담을 위한 멘토 지원을 요구했고, 둘째, 친인척위탁부모의 경우 위탁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원하는 시기에 위탁아동의 심리가 안정되고 치료될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받기를 요구함. 셋째, 일반위탁부모의 경우는 위탁아동을 안전하고 보다 건전하게 양육하기 위해 친부모와 위탁부모 간의 부모역할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들이 강력하게 해주기를 요구함. 넷째, 일반위탁부모는 가정위탁보호의 궁극적인 목표인 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위해 친가정과 친부모에 대한 자립능력 지원 제고를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기를 요구함. 또한, 일반위탁부모는 정부지원의 아이돌봄 사업 이용 요구와 위탁아동과의 초기 관계적응

을 위해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간의 기질 및 성향·성격 파악 등이 가능한 성격유형검사나 심리·양육 상담 및 위탁부모와 아동이 함께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주기를 요구함. 더 나아가 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 이후 위탁부모 대상의 집중적인 심리치료와 양육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재충전을 위한 1박 2일 정도의 힐링 캠프도 요구함. 다섯째, 위탁아동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원비 지원, 학비지원, 의류비와 용돈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정위탁지원금에 대한 현실화를 요구하였고, 여섯째, 위탁아동의 사춘기 진입 및 사춘기 시기 동안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교육)과 상담 지원을 요구함. 마지막으로는 유형별 모든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에 대한 법적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위탁아동에게 필요한 서류준비 시 행정기관의 적극적 도움을 필요로 함

- 다음으로 연장보호 및 종결아동 대상 면접조사 결과, 가정위탁보호 실태 및 어려운 점으로 첫째,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크고 절실하게 느꼈고, 다음으로 가정위탁보호 아들이란 것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긴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위탁아동들이 위탁보호 시 가장 필요로 한 지원정책으로는 첫째,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원비 지원 및 학원 연계로 나타났음. 둘째는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유행중인 브랜드의 신발과 의류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어 했으며, 중·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이 다소 높은 교복 준비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했음. 마지막으로는 진로탐색 및 결정을 위해 위탁아동이 꿈꾸고 있는 직업의 직장인을 만나 직업에 대한 이야기와 직업 체험을 하고 싶다고 요구함

□ 현장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

- 현장전문가의 관점에서 유형별 가정위탁의 실태와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주요 현안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한 결과, 첫째, 대리양육의 경우 조부모의 경제활동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이 컸으며, 조부모와 위탁아동 간의 세대차이로 서로 간의 이해부족 및 대화단절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남. 무엇보다 대

리양육의 경우 조부모의 낮은 학력수준 및 정보부족 등으로 위탁아동의 학교생활, 학습과 교육 및 진로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전혀 없었음. 친인척양육의 경우 본인의 자녀양육과 더불어 위탁아동의 양육을 함께 있어 양육에 대한 부담부담이 컸으며, 위탁아동이 고학년으로 진학함에 따라 사교육비, 학습비, 의류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음

- 둘째,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고, 다음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했으며 종사 인력 및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지리적 접근성과 시간적 한계로 사례관리의 전문성 저하, 질 높은 서비스의 한계 및 사후관리의 미흡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또한, 센터 종사자의 업무경험과 전문역량의 부족 및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가정위탁보호사업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업무이해 부족으로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의 부실 및 사례관리의 미흡 문제가 나타남. 무엇보다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행정기관의 공무원 간의 상호연계 및 협조 부족이 두드러졌으며 가정위탁보호의 다소 복잡한 절차로 긴급한 보호를 필요한 요보호아동들이 가정위탁보호 대신 양육시설 보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현장전문가 관점에서 살펴본 가정위탁보호 지원정책을 살펴본 결과, 먼저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와 인식개선 노력을 가장 필요로 하였고, 다음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와 담당 공무원 간의 상호연계 강화 및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공무원 교육 의무화 및 간담회와 사례회의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일반위탁가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가정위탁부모의 인력 풀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4-7〉 조사결과 주요 내용 요약·정리

구분	위탁부모	종결위탁아동	현장전문가
<p>가정 위탁 보호 실태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위탁보호의 정보부족 ◦ (대리) 학습·교육 및 진로 관리·지도 부재 ◦ (대리) 연장보호아동 아르바이트 시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 우려 ◦ (친인척) 가족갈등 발생 ◦ (일반) 영수 증빙처리의 불편함 ◦ 위탁부모의 권리행사 한계 ◦ 친가정 복귀 어려움 ◦ 일반위탁가정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어려움 ◦ 가정위탁보호아동이란 것을 친구들에게 비밀로 하려고 노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 경제적 어려움, 세대차이로 인한 대화 단절 ◦ (친인척) 위탁아동 양육부담, 학습비/의류비 등 경제적 부담 ◦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 센터 종사자의 업무 과중 및 인력 부족 ◦ 센터 종사자, 짧은 업무경력, 업무경험과 전문역량 부족 ◦ 공무원 잦은 인사이동으로 가정위탁보호 전문성 부족 ◦ 가정위탁지원센터와 담당공무원 간의 상호연계성 부족
<p>개선 및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 멘토 지원 ◦ (친인척)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속 지원 ◦ (일반) 위탁부모와 친부모 간의 부모역할 협의 조정 지원 ◦ 일반위탁부모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상급학년 진학에 따른 경제적 지원 현실화 ◦ 사춘기에 대한 대처방법 지원 ◦ 위탁아동 서류준비 시 행정기관의 적극적 도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원비 지원 및 학원 연계 ◦ 신발·의류 지원 및 교복비 지원 ◦ 진로탐색을 위한 직업인과의 만남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 진학 및 진로·취업 결정 시 관련 전문가 상담과 지도 지원 필요 ◦ 연장보호 및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위탁보호사업 홍보 강화 및 인식개선 ◦ 위탁보호사업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및 간담회와 사례회의 강화 ◦ 일반가정위탁부모 인력 풀 구축 및 관리

5

장

전북 요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 지원방안

Jeonbuk Institute

-
- 제 1 절 주요결과 및 정책적 함의
 - 제 2 절 정책 추진과제

제5장 전북 요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 지원방안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검토하면서 나타난 주요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 및 전북 요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 지원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정책 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제1절 정책적 함의

-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관련법·제도·정책분석 및 국내외 지원정책 사례 검토와 시사점 도출, 전북 요보호아동 발생 및 가정위탁보호 현황 분석, 그리고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 부모와 아동 대상 면접조사, 현장전문가 대상 FGI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가. 가정위탁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담당공무원 교육 및 홍보 확대·강화

-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 된지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주민 센터의 공무원, 학교교사 등도 가정위탁보호에 대해 잘 모르며, 일반시민들은 더욱 생소한 제도로 알려져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인식개선을 위해 먼저는 담당 공무원 대상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확대 및 교육 참여 의무화, 일반시민 대상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 등 홍보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나. 일반위탁가정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핵심이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일반위탁부모의 발굴 확대임. 대리 및 친인척양육은 혈연관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이 부여되지만, 일반가정위탁의 경우는 대부분 종교적 이념실천과 사회적 이타심 실현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1) 사랑과 희생, 봉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위탁아동을 돌보고 있었음. 그러나 일반부모가 가정위탁을 함에 있어 양육에 대한 법적 권한 제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편견, 낮은 사회적 인식, 자원봉사란 사회적 낮은 위상, 그리고 아동위탁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 발생 등으로 가정위탁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강화, 일반위탁부모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예를 들어, 외국의 지원정책 사례와 같이 자격기준을 전문화하여 일반위탁부모에게 매월 최저 9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보수를 지급하고 일종의 직업 형태로 운영한다든지, 혹은 다양한 형태의 전문위탁가정 운영과 위탁부모 양성을 위해 수고비 및 인센티브 성격으로 일정금액을 일반위탁부모에게 지급하는 등 일반위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표 5-1〉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가정위탁보호의 종사자(위탁부모) 자격기준, 인건비 등 비교

	자격기준	인건비	운영비
공동 생활 가정 (그룹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취득 이후 아동관련 사회복지 사업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5년 이상 종사 경력 있는 사람, - 보육교사 자격증 1급 취득 이후 사회복지 관련 사업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 (보육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3급 이상 취득한 사람, 보육교사 및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인건비 정부 지원 ◦ 24,942천원/년 (직급·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 ◦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급 ◦ 연장근로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4천원/개소 월 (연료비, 공공요금 등)
가정위탁 보호 위탁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아동을 친자녀처럼 양육하기에 필요한 성품·경험·지식을 갖춘 자 ◦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있고, 정신·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도 없을 것 ◦ 위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경제적 재산이 있어야 할 것 ◦ 가정조사 시 위탁보호 가정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를 이웃 등을 통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 위탁부모에게 20만원의 양육보조금만 지원(2019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자료: 2018 보건복지부, 아동사업안내

- 다음으로, 일반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탁부모 발굴과 더불어 위탁 아동의 수급도 제고해야 필요가 있음. 요보호아동 발생 시 시설 우선 보호 조치 보다 아동 최상의 이익원칙에 의거해 가정위탁보호를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대상 가정위탁보호사업 이해증진 교육 강화, 지역 내 대기 중인 일반위탁부모에 대한 인력 풀 정보제공, 가정위탁보호 진행 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단기 혹은 일시 가정위탁보호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다. 양육비 지원 단계적 현실화 필요

- 가정위탁보호 시 지원되는 것은 양육보조금, 기초생활수급비,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자립지원금, 대학 진학금, 디딤씨앗통장, 대리/친인척의 경우 전세자금 등이 있음. 이 중 위탁가정에서 실제 기본 생계비로 쓰이는 지원금은 2018년 기준 전북의 경우 양육보조금 15만원과 기초생활수급비 약 55만원 등 총 70만원임. 약 70만원의 생계지원비는 위탁보호 유형과 아동 연령에 상관없이 일괄 통일되어 공통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반면, 위탁아동이 상급학년으로 진학하면서부터는 교육비(과외활동비, 교재비, 학비 등), 의류비(메이커 브랜드 옷과 신발), 교통비, 식비 및 용돈 등 상당양의 생계비와 양육비가 소요됨, 특히 대리양육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과 조부모의 경제활동 부재로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 이에 가정위탁보호 양육비 지원은 현실에 맞게 증액되어야 하며, 위탁아동의 연령과 필요에 따라 차등적 지원이 필요 함. 또한, 사교육비, 학습교재비, 후원 연계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 해주어야 함

라. 위탁부모에게 최소한의 법적 양육 권한 인정 필요

- 가정위탁부모는 일정기간 위탁아동을 양육·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위탁아동에 대한 위탁부모로서의 권리행사가 전무함. 즉, 위탁아동을 위한 핸드폰 개통, 보험가입, 은행계좌 및 청약통장 개설, 병원 소견서 및 학기 초마다의 행정서류 발급하여 제출하기,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 및 관련 서류 발급 등에 있어서 위탁아동에 대한 법적 권한이 전무하여 행정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임. 설상가상으로 대부분의 친부모가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연락이 완전 두절 되었을 경우가 많아 무작정 친부모와 연락되기만을 기다려야만 하는 막막한 상황임. 이에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태라면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양육·보호하고 있는 일정기간 동안만이라도 위탁아동에 대한 필요한 법적 권한 행사를 갖출 수 있도록 규정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마. 친가정 지속연계, 자립능력 회복과 안정화를 위한 지원내용 확대

- 가정위탁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탁아동의 친부모가 양육여건과 가정환경을 회복하여 친가정에서 아동을 다시 양육·보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해체를 방지하는 것임. 그러나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시·군 및 읍·면·동에서 지원되는 대부분의 내용은 위탁부모와 아동에 집중되어 있어 위탁기간의 장기화, 친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 회피 및 가족해체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음
- 이에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이 위탁보호 되는 기간 동안 친부모의 자립과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위탁아동을 친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강화시켜야 함. 친부모와 아동 간의 지속적인 연계, 친가정이 아동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 친부모의 자립능력 회복을 위해 친부모의 주거와 고용안정, 신체와 정신건강 증진, 소득 보존에 적극적인 개입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해야 함

- 또한, 위탁부모와 친부모가 위탁아동에게 양육·교육 역할을 일관성 있게 진행 시키기 위해서는 친부모와 위탁부모 간에 서로 지켜야할 역할과 행동에 대한 조정·관리 해 주는 중재자적 매개 역할을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강력하게 지원 해주어야 위탁아동 뿐만 아니라 위탁부모의 혼돈과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음

바. 위탁아동의 자립준비 지원 서비스 및 종료아동 사후관리 강화

- 위탁아동들의 가정위탁보호 사유를 살펴보면, 대개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및 가출, 연락두절 등으로 나타남. 이런 사유로 인해 위탁아동의 위탁보호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친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워 결국에는 친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위탁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가정위탁의 종결사유를 살펴보면, 친가정 복귀는 매우 저조한 반면, 대부분이 만 18세 이상의 연령에 도래하여 자연스럽게 보호 종결되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가정위탁보호 되는 위탁아동의 상당수가 만 18세 이상이 되어 자연스럽게 보호 종결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자립 준비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호 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종료아동에 대한 DB구축과 더불어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 및 센터 확충 필요

- 현재 전라북도에는 단 한 곳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14개 시·군의 위탁부모와 아동을 지원하고 있어 질 높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와 상담원 1인 담당 200개 이상의 사례 수 및 그 외 다양한 업무 과중으로 적극적인 대면상담과 체계적인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7조(‘18.3.23 시행)」¹⁾에

근거한 인력 배치 기준에 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인력 증원이 필요함. 더불어 전북지역의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고려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점진적으로 추가 확충해야 함. 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현황을 고려했을 시, 홍보사업 담당 인력과 자립지원전담요원 인력의 확충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종사자 및 센터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임

아. 대리양육의 경우 위탁아동이 적합한 조건에서 양육·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 점검 필요

- 전북의 가정위탁보호는 조부모와 친인척양육 비율이 일반가정위탁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그 이유는 가정위탁보호가 조부모와 친인척이 있을 경우 대리양육과 친인척양육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그러나 대리양육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혈연관계’로 인해 위탁아동을 떠맡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부모가 위탁부모로서 자격이 충분한지, 조부모의 주거 및 생활환경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되지 않은 채 단지 정책의 권고사항에 의해 우선 배치시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음(보건복지부, 2007).
- 반면, 「아동복지법 제15조의 3(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항 내용」을 보면,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한다’고 제시하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7조 : 센터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사무원 1명 이상, 임상심리치료사 1명,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사무원 1명 이상 두어야 함

※ 상담원은 위탁아동 400명 초과 시 200명당 1인 추가 배치,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 100명 초과 시 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추가 배치해야 함(아동복지법 제39조 제1항)

고 있음. 이에 대리양육이 가능한 조부모가 있을 경우 가정위탁보호로 우선적 추진되어야 하나, 조부모가 부모로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자격 조건이 충분치 못할 상황임에도 위탁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무리하게 맡기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조부모가 부모로서의 정신적·경제적 자격과 생활환경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혈연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대리양육을 맡기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친인척 위탁도 마찬가지로 위탁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충족 조건 기준을 마련하여 위탁아동이 보다 건강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자. 행정기관·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자원 연계 강화

-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즉, 가정위탁보호 활성화는 행정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 간의 연계·협력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가정위탁지원센터는 행정기관 담당공무원에게 가정위탁 보호사업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위탁가정의 인력 풀 정보공유, 간담회 및 사례회의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여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와 전문화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질 높은 사례관리를 강화시킬 수 있음
-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학교, 법률기관, 보건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기관, 지역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등)들과의 네트워크 확대로 위탁아동 발굴 및 친가정으로의 복귀,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상담 및 심리정서치료 시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을 발굴하고 후원기업과 협약하여 지역자원에 대한 연계 강화로 위탁가정 유형별, 아동의 연령대별, 필요 지원 욕구에 따라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맞춤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음

차. 지역특성 상 가정위탁지원사업(센터)의 업무는 위탁아동의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보다 위탁가정 내 건강한 보호·양육 및 성장 지원에 우선적 초점 맞춤 필요

-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현황분석 결과, 18년 12월 기준 총 752명 중 대리위탁 550명으로 전체 대비 73.1% 차지, 친인척 156명, 20.7% 차지, 일반 46명, 6.1%를 차지함. 즉, 전북 가정위탁 유형의 73% 이상이 대리양육이었고, 위탁아동의 위탁 사유 대부분은 부모의 이혼(42.8%), 부모의 별거·가출(22.7%), 사망(19.9%) 등으로 회복 불가능한 가족해체가 67% 이상으로 나타나 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 지원 자체가 어려운 상황. 또한, 위탁 부모 및 아동과 현장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위탁아동의 친부모는 자녀를 위탁하기 이전부터 이혼과 가출,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온전한 가족으로 재결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즉 아동복지법(제49조;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항)에 제시된 위탁아동의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업무는 상황적 및 구조적으로 힘든 상황임
- 이에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전북지역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이미 완전히 와해되어버린 친가정으로의 복귀지원 업무보다는 위탁가정 내에서의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보호 및 성장 지원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임

제2절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가. 가정위탁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크게 ① 가정위탁보호 지원의 현실화, ②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지원 특화, ③ 가정위탁보호 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④ 가정위탁지원센터 역량 강화 및 역할

제고 등 4개로 구분·제안함

- ‘가정위탁보호 지원의 현실화’는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보호·양육 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현실적인 물가를 적용·반영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하여 제안함
-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지원 특화’는 가정위탁의 유형별 특성과 정책적 욕구들을 각기 유형별로 구분하여 시급한 것을 중심으로 특화하여 그 세부 사업들로 구성하여 제시함. 마지막 정책방향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역량 강화 및 역할 제고’는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조직과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운영 방안들로 구성됨. 또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표기함

〈표 5-2〉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

정책방향	세부사업	우선 순위	추진기관
가정위탁보호 지원 현실화	양육보조금 단계적 현실화 및 연령에 따른 차등지원	8	전라북도
	학원비 지원카드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9	전라북도, 시·군
	전북 도내 대학 진학 시, 학비 지원	10	전라북도, 시·군
위탁 유형별 지원 특화	(대리) 초등학교생 이상 위탁아동 대상 멘토 지원서비스	11	가정위탁지원센터
	(친인척) 긍정적 초기적응을 위한 가족상담 실시 의무화	12	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 위탁 종결된 부모 대상 심리정서 치료	13	가정위탁지원센터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최우선과제)	시군과 읍면동 공무원 가정위탁보호사업 이해증진 교육 및 정례적 간담회 확대	1	전라북도, 시군 가정위탁지원센터
	은행·학교·버스정류장 및 종교기관 집중 홍보	3	가정위탁지원센터
	일시가정위탁 사업 시범운영	4	전라북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부모 인력 풀 구축 및 공무원과 정보공유	5	전라북도,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6	전라북도, 시군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 센터 역량 강화 및 역할 제고	홍보·자립지원 담당 인력 증원	2	전라북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소진 예방	15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준비 아동 대상 자립지원 사업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가정위탁지원센터
	전북지역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14	가정위탁지원센터

나. 가정위탁보호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1) 가정위탁보호 지원 현실화

-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형별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남. 특히, 대리양육이 경제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음. 경제적 비용은 기본 생활비와 더불어 상급 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소요되는 학원비, 교재비, 용돈, 신발·의류비, 대학 학비 등으로 나타남
- 이에 지방이양사업인 양육보조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함께 위탁아동의 연령과 아동이 처한 상황을 반영한 차등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

1-1

양육보조금 단계적 현실화 및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북지역 가정위탁 부모와 아동의 기본생활비는 위탁아동 1인의 기초생활수급에 따른 생계비와 지방이양된 양육보조금을 합해 대략 70만원정도임. 위탁아동의 연령과 특수 상황과는 무관하게 일괄 통일되어 지급하고 있음
- 한편, 위탁아동의 연령과 건강상태 및 필요 상황 등에 따라 위탁가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매우 상이하였고 위탁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비용 부담은 증가하고 있어서 양육보조금의 현실화와 차등적 지원 필요
- 위탁아동의 연령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지출 예산 대비 위탁 부모와 아동이 체감하는 정책 체감도는 저조함. 이에 예산의 효율성과 위탁가정의 정책지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의 연령별 차등 지원이 요구됨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라북도
- 사업대상 : 가정위탁보호 위탁아동
- 사업내용 : 양육보조금 점진적 확대와 연령에 따른 차등적 지원
 - 연령대별에 따른 차등적 양육보조금 지원 : 만0~9세 보다 만 10~12세, 만13~15세, 만16~18세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갈수록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 큼
 - 가정위탁보호 실태조사 결과, 현재 지급되는 위탁아동 1인 기준 기초생활수급비와 양육보조금 합계는 만 9세까지는 양육·보호하기에 충분하였음. 무엇보다 만 9세까지의 위탁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는 국가보조금(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었음. 반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교 생과 보호연장된(대학진학) 위탁아동은 1인 기준의 기초생활수급비용과 양육보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부족함. 즉 학원비, 교재비, 의류비, 통신비, 교육실습비 등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생활비가 지원되지 못하고 있음

〈표 5-3〉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지원금액과 위탁아동 연령대별 예상 지출 부분

구분		만 0~9세	만10세~12세	만13~15세	만16~18세
수입	기초생활비	약 55만원	약 55만원	약 55만원	약 55만원
	양육보조금	20만원 10만원(양육수당)	20만원	20만원	20만원
	총 액	85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예상 지출 부분	교육 및 생활비	- 만 6세까지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 국비 지원 혹은 가정양육비 지원 - 만 7~9세 학교 방과후수업 이용, 지역아동센터 이용	과외활동비 (영어 및 예체능) 지역아동센터 이용	과외활동비 (국, 영, 수 등) 식대비 의류비 용돈(5만원)	과외활동비 (전과목, 인강) 의류비, 식대비 교재비, 교통비 용돈(10만원)

주 : 2019년 1월 기준

〈표 5-4〉 향후 양육보조금 위탁아동 연령대별 차등지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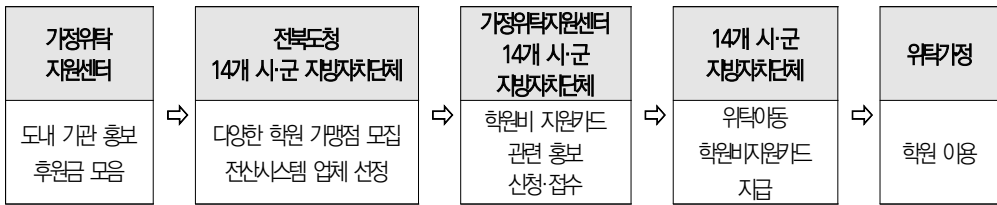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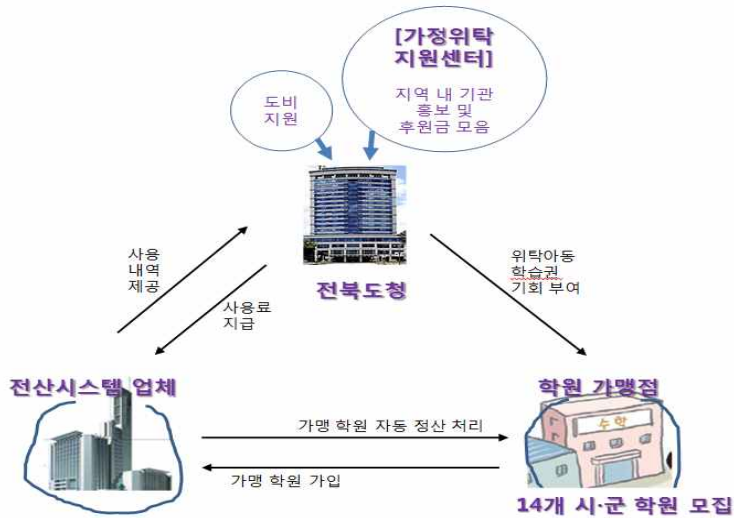
구분	만 0~9세	만10세~12세	만13~15세	만16~18세
기초생활비	약 55만원	약 55만원	약 55만원	약 55만원
향후 양육보조금 변경 증액 시	20만원 10만원(양육수당) +0만원	20만원 +5만원	20만원 +10만원	20만원 +15만원
총 액	85만원	80만원	85만원	90만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가정위탁보호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위탁부모와 아동 모두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학원비 지원으로 나타남.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원비 혹은 위탁아동의 자질과 진로를 위한 예체능 관련 사교육비가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나 양육보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탁부모와 아동에게 학습·예체능 교육을 지원하고 진로 결정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학원비 지원이 필요함. 더불어 민·관 협력 및 공동 참여 유도를 통한 지역사회 내 가정위탁보호 사업 홍보와 기부 문화 형성 확대 노력이 요구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시·군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학원연합회 등
 - 사업대상 : 전북지역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중·고등학생
 - 지원내용 : 중·고등학생의 위탁아동에게 다양한 분야의 학습 역량 강화 기회와 진로 결정의 다양한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1년 단위
 - 지원금액 : 중학생 월 10만원, 고등학생 월 15만원
(학원비 중 10%는 위탁부모 지급, 그 외 나머지 금액은 해당 학원에서 자부담)
 - 소요예산 : 2020년도 20백만원 (약 150명; 중학생 75명, 고등학생 75명)
- ※ 2018년 6월 12일 기준 중·고등학생 위탁아동 총 382명



〈그림 5-1〉 학원비 지원 연계 방안

1-3

전북도 내 대학 진학 시 전북도와 대학 간 연계 학비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위탁가정의 위탁아동이 더 나은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 및 생활수준 향상 등의 실현을 위해 대학이란 상급학교에 진학 했을 시 대학 학비, 생활비(월세비, 개인생계비 등), 의류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식대, 용돈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이에 위탁아동의 대학진학을 유도하고, 대학진학 후 학업 유지와 취업 연계 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전북지역 위탁가정에 보호조치되어 전라북도의 지방이양사업비로 보호·양육된 이후 대학진학을 타 시·도로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실태조사를 통해 볼 수 있었음. 이에 대학진학 후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최소한의 여건 충족을 전북도 내 대학에 진학하는 위탁아동에게 특별한 지원 혜택을 마련해 준다면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 및 위탁아동의 타 시도 유출 방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라북도, 도내 대학,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및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 주요내용
 - 전북도는 도내 22개 대학과 ‘가정위탁아동 대학 학비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 도내 거주하면서 도내 대학에 진학 시 가정위탁아동들은 학비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함
 - 전북도와 가정위탁지원센터 :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 대상 전북도내 대학에 진학 시 학비 일부 지원에 대한 홍보
 - 지원방법 : 위탁아동의 도내 대학의 입학 확정 시 전북도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알리면, 이에 대한 정보를 도내 대학에 공지하여 2년 혹은 4년 동안 대학 학비의 일부를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 받음
- ※ 지원 학비 규모는 최소한 학비의 30% 선인 150~200만원 이상 되도록 추진

2)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지원 특화

- 본 연구결과,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경험실태가 상이한 부분들이 확연히 드러남. 대리양육의 경우 조부모의 고령으로 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했고, 친인척 양육의 경우는 위탁아동이 가정에 배치됨에 따라 나타나는 가족원 간의 갈등과 분쟁 등에 대해 스트레스와 초기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 해결 지원을 요구함. 일반위탁부모의 경우에는 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 후에 찾아오는 상실감, 우울감, 그리움에 대한 심리·정서적 힘들에 대한 도움 지원을 요구함

2-1

(대리) 초등학교 이상 위탁아동 대상 멘토 지원 서비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특히, 대리양육의 경우 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지원 및 진로 지도·관리가 미흡함. 학습지원을 위한 국·영·수 학원비 및 예체능 사교육비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사회 연계 학습·교육 지원이 부재한 경우 학습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리양육은 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교통과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 지역사회 자원연계 부족 등으로 학습과 진로지원에 대한 혜택의 한계가 크게 자리하고 있음
- 이에 위탁아동의 학습능력 향상과 진로지원을 위해 1주에 한 번씩 국어, 수학, 영어 학습지원 및 진로지도와 고민상담 등을 군 단위 지역까지 직접 방문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멘토(자원봉사자, 방문교사) 서비스를 필요로 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 사업대상 : 대리양육가정 중 멘토지원 사업 필요로 하는 위탁가정 중심
- 사업 추진 절차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내 멘토 사업 담당자 확보로 재능기부 봉사자(멘토) 및 대리양육가정의 위탁자녀(멘티) 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 지역별 멘토 지원 수요조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 각 지역별 대리위탁가정의 멘토 지원 수요조사
 - 각 지역별 재능기부 자원봉사자(지역대학 MOU, 공무원연금재단 연계 은퇴자 등) 모집
 - 멘토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리양육가정 선착순 모집
 - 재능기부 자원봉사자와 대리양육가정의 위탁자녀와 1:1 매칭
 - 멘토지원 사업 시작 전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대상 오리엔테이션(약 4시간)과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 이수 등 필수
- 지원내용 : 주 1회 정해진 요일에 위탁아동의 집 방문하여 학습 및 진로 상담 및 문화생활 지원
 - 위탁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리 및 학습지도(국어, 수학, 영어) 지원
 - 고민상담 · 문화 활동, 심리·정서지원
- 사업기간 : 1년 단위로, 지속 연장 신청 가능
- 예산사업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업운영비로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가정위탁보호 유형 중 특히, 친인척양육의 경우 새로운 가족원인 위탁아동의 등장으로 가족관계 재구조화 단계에서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 본 자녀와 위탁아동 간의 갈등, 시댁 혹은 처가댁 등 원가족 간의 갈등이 초래되어 초기적응 시 심리적 어려움과 혼란을 가족원 모두가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즉, 가족관계를 새롭게 재구성 할 때, 심리적 및 관계적 적응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심리치료가 지원된다면 보다 긍정적인 가족관계 확립과 아동의 초기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임상심리치료사
- 사업대상
 - 위탁아동이 새롭게 보호 조치된 신규 친인척위탁가정의 가족원 모두
 - 친인척 위탁가정에서 가족관계 갈등으로 심리치료를 요구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위탁아동과 친인척 가족원 간의 심리적·관계적 적응을 위한 상담 및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 상담치료지원 : 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미술치료 등
 - 교육지원 : 부부관계 증진교육, 대화법 등
 - 문화 활동 지원 : 가족캠프 지원(연 2회)
- ※ 친인척양육가정의 초기 적응을 위해 가족상담 참여 독려는 위탁부모교육 시 강력하게 권고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족상담을 받았다는 수료증 등을 제시해야만 행정기관에서 양육보조금을 신청·지원 해준다는 기본 조건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일반위탁부모가 가정위탁보호 하면서 가장 힘들어 하는 점은 위탁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함에 따라 위탁아동과 이별하는 것임. 즉, 그 동안 위탁부모와 아동 간에 어렵게 형성한 애착관계가 친가정 복귀로 끊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위탁부모는 친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이 잘 적응하는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그리움과 더 잘 해주지 못함에 대한 미안함, 위탁아동의 빈자리에 대한 우울 등의 심리·정서적 감정들로 상당기간 힘들어 하며, 어떤 위탁부모는 병원치료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음
- 이에 위탁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한 일반위탁부모 대상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하며, 위탁아동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등 위탁부모의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위탁아동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지원해주기를 요구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일반위탁부모, 친가정에 복귀한 아동과 친부모
- 사업주관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 사업대상 : 일반위탁부모들 중 위탁보호 중인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한 직후의 일반위탁부모
- 지원내용
 - 개인 및 집단상담 지원 : 위탁부모가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개인 혹은 같은 경험을 한 위탁부모들 간의 집단상담 지원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부모에게 친가정 복귀한 아동의 소식 전달 (사진, 연락처, 정기적 만남 등) 및 지속 연계 도모

3) 가정위탁보호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가정위탁보호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일반가정위탁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가정위탁보호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인 홍보와 더불어 행정기관의 공무원 대상 교육 참여 의무화 등이 필요함
- 다음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일반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위탁부모 발굴과 인력 풀 구성 및 이에 대한 공무원과의 정보공유, 그리고 가정위탁보호 진행 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단기 혹은 일시 가정위탁보호제도 등 일반위탁가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마련이 요구됨

3-1

은행·학교·버스정류장 및 종교기관 집중 홍보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결과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및 위탁부모 발굴을 위해서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이해증진 및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가 가장 시급하게 나타남
-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대상 가정위탁보호사업 이해증진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일반시민 대상으로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와 위탁부모 발굴을 위해 잠재적 일반위탁부모가 될 수 있는 특정 집단인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캠페인 등이 필요함. 또한, 잠재적 대리 및 친인척 위탁부모가 가정위탁보호사업이란 것을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장소 즉, 은행, 유아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버스정류장을 통한 집중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개요

- 사업주관·주체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 추진내용
 - 가정위탁보호 사업 이해증진 : 아동복지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과 간담회 확대 강화
 - 잠재적 일반위탁부모 발굴 : 특정 종교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한 캠페인 활동
 - 잠재적 대리 및 친인척 위탁부모 발굴 : 자주 왕래하고 눈에 쉽게 띄는 장소인 은행, 학교(초·중·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버스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홍보 강화 필요

3-2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가정위탁보호사업 이해증진 교육 및 간담회 확대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결과, 시·군 및 읍·면·동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의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라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가정위탁의 활성화 위해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행정기관 간의 연계 강화 노력이 필요함
-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이해증진과 관련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가정위탁보호 관련 교육과 간담회를 확대해야 함. 공무원이 센터로 집합하는 교육과 간담회 보다 센터 종사자가 각 지역별로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실시하는 교육과 간담회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됨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 사업대상
 -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가정위탁보호 담당 공무원
 - 241개 읍면동의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 사업내용
 - 14개 시·군 및 241개 읍·면·동 지역 단위로 담당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는 가정위탁보호사업 이해증진 교육 및 간담회 실시
 - 사례관리 상담원이 사례관리 진행 차 각 지역 방문 시 읍면동 단위의 담당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담당자들과 인사, 가정위탁보호사업 이해 교육, 담당지역의 사례관리에 대한 정보공유 및 간담회 등으로 지원센터와 행정기관 간의 연계 강화 노력
 -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의 연계 강화로 가정위탁보호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기준 도 단위의 지역센터별 공무원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1년 동안 163명의 공무원 대상, 13번의 교육을 했으나, 이는 전국 평균 대비 교육은 6회, 공무원 인원은 약 20명 정도가 부족한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실적임을 알 있음

〈표 5-5〉 지역센터별 공무원 교육 현황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횟수	19	19	11	16	13	23	19	22	29	19
인원	238	163	126	198	163	274	158	270	34	180.4

자료 : 2017 가정위탁 현황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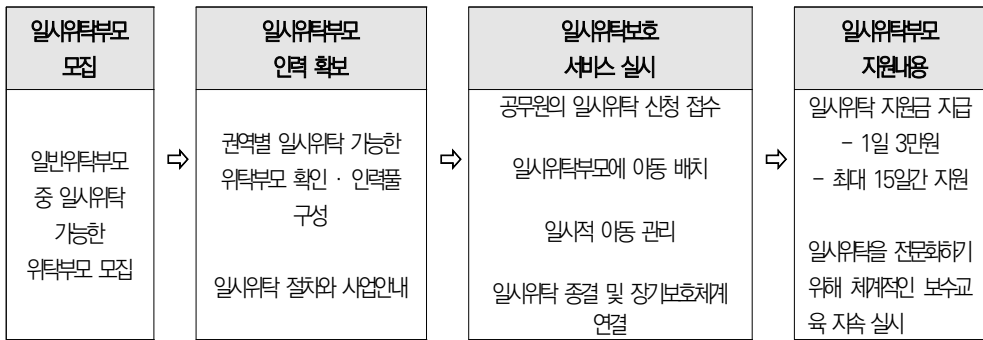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일반가정위탁 비율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가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시 일반가정위탁 배치까지의 절차가 비효율적이고, 그에 따른 행정업무 소요시간이 길어 일반가정위탁 보호조치보다 시설보호나 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에 담당공무원이 우선 배치하는 상황이 발생함
-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요보호아동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을 긴급하게 친가정과 분리 조치해야 할 경우,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배치조치 할 수 없을 경우, 가정위탁보호 배치 후 위탁가정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일시적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 일시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함
- 또한, 일시가정위탁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 시행령 19조가 신설되었으며, 일시가정위탁보호 결정 아동의 질병과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되었음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북지역 14개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 사업주관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가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아동복지 담당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진행
- 사업대상
 - 일반위탁보호로 최종 결정 전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 중 일시보호가 긴급하게 필요한 아동

○ 사업 진행 절차 및 일시위탁부모 지원내용



○ 시범사업 기간 : 1년 (2019.7~2020.6)

○ 일시가정위탁사업의 시범운영으로 사업의 효과성, 만족도 및 일반가정위탁이 활성화 될 경우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사업화 할 필요 있음

3-4 예비 일반위탁부모 인력 풀 구축 및 공무원과 정보공유

□ 추진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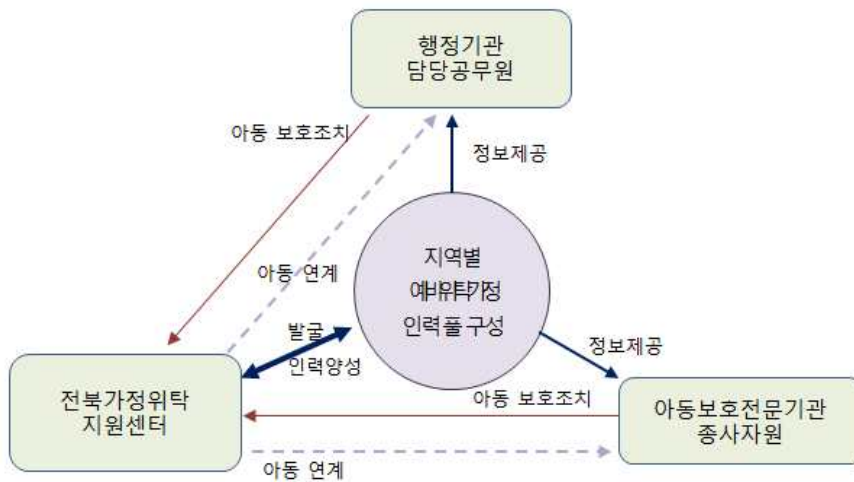
- 본 연구결과 가정위탁보호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이 일반가정위탁의 대기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함에 있어서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음. 이에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과 지역별 일반가정위탁의 대기자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함
- 그리고 예비 일반위탁가정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위탁부모의 특성들을 고려해야 함. 즉, 일반위탁가정은 대부분이 종교적인 신념 실천과 사회적 봉사 개념으로 위탁아동을 돌보고 있기에 일반가정위탁 발굴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특정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홍보와 캠페인이 이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반위탁부모는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자녀를 어느 정도 키워놓은 빈둥지 부모가 대부분이기에 일반위탁부모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홍보와 캠페인 강화가 필요함

- 지역별 홍보와 캠페인 확대로 예비일반위탁부모의 인력풀을 구축하게 되면 요보호아동 발생 시 가정위탁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요보호아동을 일반위탁부모에게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음. 이는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효과성이 극대화되고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짐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 사업주체 : 전북지역 시·군 가정위탁보호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 사업 진행 절차
 - 일반위탁부모 발굴을 위해 매월(혹은 격주) 전북지역을 순회하며 홍보와 캠페인 실시. 대상은 특정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40~50대 부모(빈둥지 증후군)의 왕래가 많은 지역 중심
 - 지역별 예비일반위탁부모 희망자가 5명 이내로 신청·접수되었을 시 곧 바로 예비부모교육 실시 후 위탁가정 방문조사, 서류심사와 적격여부를 심사 후 적정한 예비일반위탁가정 선정
 - 예비위탁가정으로 대기자 등록, 참고로 빠른 아동배치를 위해 예비 위탁가정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아동 리스트 구축
 - 지역별 구성된 예비위탁가정의 인력 풀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보공유
 - 전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요보호아동 중 일반위탁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신속 배치 가능



〈그림 5-2〉 예비일반위탁부모 인력풀 구축 및 연계방안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가장 적합한 보호조치를 내리고자 하며, 원가정복귀의 가능성 제고와 더불어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연계·활용하여 아동에게 가장 질 높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찾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됨. 무엇보다 특정 개인의 감정과 판단으로 보호조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함
- 무엇보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요보호아동의 보호 및 종결 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상실 등 요보호아동의 현재와 미래의 생활 형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권한을 가진 만큼 보다 신중하게 아동중심의 관점에서 아동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논의와 협의가 필요함
- 한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2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만 했을 뿐 그 중요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실제 구성 및 운영되어 그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북도 및 시·군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 사업내용
 -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 및 평가

〈 아동복지법 〉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심의사항)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종결조치에 관한 사항,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자원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산실 2017. 9. 19)

〈표 5-6〉 전북 14개 시·군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제정 / 일부개정
전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5. 1. 1
전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4. 8. 14
군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5. 11. 2
익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8. 11. 23
정읍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 5. 4
남원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 6. 10
김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5. 12. 11
완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 7. 28
진안	영유아·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7. 6. 30
무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 10. 5
장수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5. 10. 27
임실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5. 10. 30
순창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 2. 16
고창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9. 1. 2
부안	아동복지 증진 조례	2015. 9. 25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1. 기준)

4) 가정위탁지원센터 역량 강화 및 역할 제고

- 현재 전라북도에는 단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14개 시·군의 위탁부모 575명과 위탁아동 750명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상담원 1명당 담당해야 할 사례가 200 사례 이상이며, 자립지원 담당자 1명은 자립준비 아동에서부터 5년 이내의 종결아동까지 약 1,000사례나 관리해야 할 상황으로 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움
- 이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개소 수 확충과 종사자 인력 증원으로 가정위탁 보호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상담원 1인당 적정 사례수를 담당으로 질 높은 사례관리와 적극적인 지원 개입이 가능해 지도록 해야 함. 또한, 자립지원 사업과 친가정 복귀 사업 및 일반위탁가정 발굴 등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중요 업무들에 내부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추진해야 함

4-1

홍보·자립지원 담당 인력 증원으로 홍보 및 자립지원 업무 강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량 분석 및 종사자 대상 FGI 조사결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 중 홍보 및 자립지원 담당 종사자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지역에서 가정위탁보호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가정위탁보호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하였으며, 위탁아동 종결사유의 대부분이 만 18세에 도래하여 자연스럽게 위탁종결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만 15세 이상의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에 대한 체계적 준비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추진내용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홍보담당자 인력 증원

- 현 홍보업무 담당자 2명, 향후 최소 3명에서 최대 5명까지 증원 필요
- 2017년 기준 지역센터별 홍보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홍보실적을 보인 곳이 대전 121,777건인 반면,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인 곳이 전북 (4,044건)으로 대전과 약 3배 이상의 홍보실적 차이가 나타남

〈표 5-7〉 지역센터별 홍보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기북부
20,633	22,599	9,504	7,597	12,326	121,777	6,906	41,184	10,57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앙
4,076	19,842	8,499	4,044	43,765	19,583	14,016	39,975	20,633

자료 : 2017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 2017년 기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1인당 홍보업무량을 살펴 보면 전국 평균(3,937건)의 17.1%(674건)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 관리 해야 할 위탁 아동 및 가정의 사례수와 지원서비스, 교육 지원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다 할지라도,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

〈표 5-8〉 전국과 전북의 상담원 1인당 업무량 비교

구분	상담원 수	상담원 1인당 업무량						홍보
		사례수		지원서비스		교육		
		아동수	가정수	인원	건수	횟수	인원	
전국 평균	6	106	85	424	3,811	16	94	3,937 (100%)
전북	6	132	101	436	4,740	13	103	674 (17.12%)

자료 : 2017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담당자 인력 증원**

- 현 자립지원 담당 종사자 1명, 향후 최소 4명까지 증원 필요
-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시행령을 살펴보면, 향후 가정위탁보호 자립준비 아동(15세 이상 아동) 및 보호 종결 아동(종결 후 5년 이내 아동) 대상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운영과 자립지원계획수립·시행 등부터 자립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자립 관련 지원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자립지원 대상 아동이 양육시설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만큼이나 많은 수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의 인원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상황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함

〈 아동복지법 〉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9. 7. 16]

제40조(자립지원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시행일: 2019. 7. 16]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38조(자립지원) ① 법 제38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제5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3. 자립에 필요한 자립장학금의 지원

② 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
3. 법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 2014년 12월 기준 15세 이상 양육시설 내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14,928명, 아동양육시설 아동 5,474명, 공동생활가정 아동 923명, 가정

위탁 아동 8,531명으로 가정위탁 보호가 가장 많았고, 보호종결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다음으로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많았음

〈표 5-9〉 자립지원 대상 아동 수

	계	15~17세	18세 이상	연장아동
계	14,928	9,406	3,591	1,931
양육시설	5,474	3,593	1,046	835
공동생활가정	923	602	219	102
가정위탁	8,531	5,211	2,326	994

출처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산시스템(2014년 말 기준)

〈표 5-10〉 보호종결 아동 현황

연 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계
2013년	1,065	85	1,057	2,207
2014년	1,008	80	1,082	2,170
계	2,073	165	2,139	

출처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10~'14년 퇴소아동 현황. 가정위탁현황보고서 각 년도

〈표 5-11〉 2019년 1월 기준 시도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배치 현황

연번	구분	아동수	자립 아동수	상담원수	자립전담요원수	총인원
1	서울	961명	623명	7명	1명	11명
2	부산	590명	394명	7명	3명	13명
3	대구	260명	146명	6명	1명	10명
4	인천	521명	339명	6명	1명	10명
5	광주	354명	208명	7명	1명	10명
6	대전	211명	127명	6명	1명	8명
7	울산	248명	140명	5명	1명	7명
8	경기	1,364명	862명	7명	3명	12명
9	경기북부	684명	413명	7명	1명	9명
10	강원	1,022명	679명	8명	4명	13명
11	충북	478명	298명	6명	2명	11명
12	충남	643명	360명	7명	1명	11명
13	전북	752명	481명	7명	1명	11명
14	전남	1,079명	685명	9명	2명	14명
15	경북	888명	515명	11명	2명	15명
16	경남	841명	544명	8명	2명	13명
17	제주	244명	151명	6명	2명	11명

• 도내 가정위탁지원센터(전주) 이외 추가 개소 확충

- 전북지역 14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을 사례관리 하기에는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가 큼
- 또한, 현재 1곳인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 인력, 특히 상담원 인력 6명으로 700사례가 넘는 사례를 관리하기에는 사례관리의 집중성과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종사자 연력 증원과 더불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추가 개소 확충이 필요한 상황
- 아동복지법 제48조의 내용과 더불어 전북지역에 전주시 이외 정읍시에 한 곳 추가 확충한다면 담당 사례수가 현재의 반절수준으로 떨어져 보다 질적으로 높은 사례관리가 가능해질 것임

〈 아동복지법 〉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도 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장은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1. 15.>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시행일 : 2019. 7. 16.]



〈그림 5-3〉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 확대 운영(안)

4-2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소진 예방 교육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들의 현 기관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3년 이상 업무 경험을 가진 종사자는 7명 중 1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약 2년 정도의 업무 경험을 지닌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가정위탁보호사업 추진 시 업무의 경험 부족과 함께 내부의 동력 등이 다소 약하다는 것을 나타냄. 이에 가정위탁사업 진행 경험을 지속 축적할 수 있도록 종사자의 장기근속 유도도 업무경험 축적과 전문성 제고 등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FGI조사 결과에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들은 사례관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현재의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심화 전문교육 등을 필요로 했음. 이에 위탁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 핵심적 정서 욕구파악, 사례관리 시 위탁부모와 아동과의 대화법, 심리치료의

기본적인 지식과 상담기법 습득 등을 요구함. 또한, 업무역량 강화와 더불어 심리·정서적 소진에 대한 예방프로그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 사업대상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
- 실행방법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에서 분기별 1회 실시
- 지원내용
 - 업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 타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선임급으로부터 듣는 가정위탁보호 사례관리 방법, 자립지원 및 홍보업무, 지역자원 연계, 공무원과의 관계 등에 대한 경험담, 노하우 관련 전문성 강화 교육 추진
 -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에 의한 사례관리 시 필요한 위탁부모와 아동의 기본적 심리 파악할 수 있는 상담기법, 질문 및 대화기법, 발달단계별 아동과 청소년의 핵심적 정서 등에 대한 교육
 - 사례 슈퍼비전
 - 심리 정서적 소진 예방 교육
 - 지역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하루 혹은 1박 2일간 종사자들의 심리·정서적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의뢰·실시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위탁아동들의 위탁보호 사유와 위탁종결 사유를 살펴보면, 보호기간의 장기화 문제, 친가정 복귀의 어려움, 만 18세 연령에 의한 보호 종결 등이 주요 현안으로 나타남. 이러한 추세는 향후 위탁아동들이 현 위탁가정에서 자립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면서, 위탁아동이 자립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자립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냄
- 이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관점에서 자립준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자립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위탁아동들의 관점에서 위탁아동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자립지원 사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이로써 자립준비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위탁아동의 자립 준비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 사업대상 : 전북지역 내 만 15세 이상 위탁아동
- 주요내용
 - 위탁아동 자립준비지원사업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북도내 권역별 4개 기구, 1개 기구당 5명씩 총 20명 정도로 구성)
 - 위탁아동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자립준비에 대한 의견 청취, 자립프로그램 개발, 자립준비 사업 제안 등에 대한 논의 및 조사활동 실시 등
 - 자립준비사업 참여위원회 구성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활동 도모
 - 자립준비사업으로 위탁아동들이 제안한 사업을 선정하여 실질적 실행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에는 단 한 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14개 시군에 있는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리적 접근성의 제한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위치해 있는 전주까지 왕래하기가 어렵고 시간적·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가 저조함
- 이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위치해 있는 전주에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는 전북도를 4개 정도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4개의 거점기관에서 위탁부모와 아동 대상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 시킬 필요 있음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 사업대상 : 전북도내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
- 사업내용 : 지리적 접근성의 제한 극복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전북도를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4개의 거점기관에 센터 종사자가 직접 찾아가 교육과 프로그램 실시
 - 4개의 권역과 거점지역
 - 권역 1 : 진안(진안, 무주, 장수)
 - 권역 2 : 남원(임실, 순창, 남원)
 - 권역 3 : 정읍(부안, 고창, 정읍)
 - 권역 4 : 전주(군산, 익산, 완주, 김제)
 - 거점지역에서의 교육과 프로그램 실시 공간은 그 지역 행정기관 담당공무원의 도움으로 공간마련 필요

참고문헌

- 강현아, 정익중, 양경해(2015). 가정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장기적 발달성과: 일반위탁과 친족위탁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0호, 1-26.
- 김성자(2013). 충남 일반가정위탁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김진숙(2008). 일반 위탁가정 부모의 역할 경험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135-164.
- 김희연, 박은미, 이주현(2006). 보호필요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확대방안 연구 :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 박금식, 김현지, 허두진(2013). 부산지역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위탁보호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민혜선(2015).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세종시: 보건복지부
- 신건철(2010). 일반위탁부모의 위탁해지 결정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연구. 아동과 권리, 14(1), 59-84.
- 양심영(2003). 가정위탁서비스의 보호형태별 특성과 위탁아동의 적응에 관한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1(5), 131-148.
- 임동호(2008).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방안 고찰. 아동복지연구, 6(2), 99-119.
- 정익중, 강현아, 김주현, 박나래, 오세현(2017). 2017 가정위탁아동 패널연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정혜선(2008). 일반위탁부모 사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아동복지연구6(4), 41-63.
- 최은희, 윤혜미. (2014). 학대피해경험과 위탁부모와의 유대관계가 가정위탁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6), 143-170.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7). 2016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서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허남순(2004). 한국복지재단, 한국아동복지학회 공동연구 프로젝트 : 위탁가정유형에 따른 실태 및 서비스 개입 방향.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허남순(2004). 친인척가정위탁과 일반가정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위탁가정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8호, 243-270.
- 황옥경(2004). 아동권리 보호와 위탁가정 지원정책 활성화 방안. 아동복지연구, 2(1), 131-147.

정책연구 2019-02

전라북도 요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 현황 및 지원방안

발행인 | 김 선 기

발행일 | 2019년 2월 28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봉위팔쑈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52-3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